

월간  
**재정포럼** 6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6월호 제168호

- 현안분석** •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홍범교  
•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 주요국 국가채무관리 형태 및 DMO 도입 · 운영의 효과 / 송호신

**정책토론투리포트** •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외

**정책흐름** • 201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02 국민 稅主義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 · 조용근
<b>현안분석</b>	08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 홍범교 34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 김승래 63 주요국 국가채무관리 형태 및 DMO 도입 · 운영의 효과 · 송호신
<b>정책토론포트</b>	81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8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b>공공정책포럼</b>	10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b>주요국 조세동향</b>	109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중간보고서 외
<b>정책흐름</b>	122 201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125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개정안 수정 사항 128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 · 시행 130 공공기관 임원 보수 추이 132 '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133 기업구조개편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135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b>이슈 &amp; 포커스</b>	140 “기부확대 위해 美 모델 적극 도입하자” 외

## 국민 皆稅主義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한 이후 미처 안정도 되찾기 전에 또다시 유럽의 재정 불량국인 소위 ‘피그(PIIGS, 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경제위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제마저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의 특수한 긴장관계와 부동산 거품논란 등의 잠재적 불씨를 안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향후 3~5년 이후에나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경제전망이 재계와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조세학자들과 정부의 세제·세정 관계자들은 이러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율은 대폭 낮추고 대기업, 중·소사업자 등 국민 누구나가 세금을 납부하는, 소위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에 입각한 조세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 조세국가에 있어서 조세는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수단이 되고,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 개세주의를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 첫째, 국가의 과표양성화 의무를 납세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세무행정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가결하다.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 편의제도가 일반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록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

편의 비용(또는 징세비)이 세수입을 초과하더라도 국민 개세주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납세편의 비용은 과표양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데, 과표양성화 수준이 낮을수록 납세편의 비용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별도의 세무 행정력이 동원되거나 징세비용이 증가하면 사회적 후생도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현재의 세정인프라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징세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과표양성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과표양성화의 부담은 납세자에 대한 납세이행비용으로 자연스럽게 전가된다. 최근 몇 년간 과표양성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신고,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제도에서도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재 세정인프라의 한계를 단숨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과표양성화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지운다면 세무행정편의주의에 경도(傾倒)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과표양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세형평성(조세정의)을 확립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개세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납세편의의 입법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이과세제도는 본래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영세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과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투명성의 사각지역은 다시 일반과세자에 대한 거래내역의 누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별다른 정책적 배경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과세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거래투명성은 제고되고, 이로 인해 다른 세목의 세원도 넓게 확보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거래의 투명성을 통해 확대된 세원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또는 적어도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적

.....  
 과표양성화 수준이 낮을수록 납세편의 비용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별도의 세무행정력이 동원되거나 징세비용이 증가하면 사회적 후생도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이다.  
 .....

.....

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신에  
조세전문가를 통해  
스스로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어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근로사업자와 자영업자 간의 조세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세무행정은 세무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왔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민에게는 ‘국가권력’으로 인식되어 왔고, 국민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리감을 조성해 왔다. 특히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들의 자발적 납세순응이 세무행정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세무조사 선정과 그 절차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의 문제는 곧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은 전체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세무조사 범위가 2% 미만이라는 국세행정력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2%의 조사대상에 선정된 납세자는 “하필 나만”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선정되지 않은 납세자는 “과세회피”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어 결국 과세형평성의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세관청도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과정에서 청탁과 금품제공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직적·권력적 “세무조사제도”를 수평적·민주적 제도로 전환시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回)가 요망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신에 조세전문가를 통해 스스로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납세자는 스스로 성실납세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불안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탈루 및 탈세가 사라지는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도 말끔히 청산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개선방안이 실현되면 과표양성화와 함께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모든 세목의 세원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는 만큼 소위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리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는 국민 개세주의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국가재정의 안정성 여부에 논란이 일면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실적주의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제도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세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제에 있어서도 인기영합에 치우친 무분별한 감면제도와 땀질식 세법개정을 지양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KIPF

•••••  
 세제에 있어서도  
 인기 영합에 치우친  
 무분별한 감면제도와  
 땀질식 세법개정을  
 지양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국 국가채무관리 형태 및 DMO 도입 ·  
운영의 효과  
송호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hong@kipf.re.kr)

위기 국면이 수습되어  
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론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 I. 서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때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으로 인하여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금융위기도 극복하여 가는 양상이다. 전 미국 연방 준비위원회 의장이었던 그린스펀(Greenspan)이 100년 만에 찾아온 세계적인 경제위기라고 미국 의회에서 증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들은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경기의 더블 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등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위기 국면이 수습되어 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론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하면서 이번 위기의 책임을 금융권에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하고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하여 작년 12월 하원에서의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이어 금년 5월에는 상원에서도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양원의 법안을 절충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개혁법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으나, 상하 양원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그간의 과정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투

기적 행위로 인한 피해는 재정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이 부담하는 반면, 그러한 행위에서 얻는 수익은 금융권에서 독식하는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투입된 재정자금의 환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된 우리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금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회의 의제를 설정하고, 국가 간의 이견을 조율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우리에게 이 문제는 국제적인 의제로서 매우 중요하며,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주제이다. 지금까지의 국제논의 결과 금융시스템 위협 방지를 위한 분담금과 금융과 세문제가 논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금융거래세의 도입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금융권의 과도한 투기적 행위로 인한 피해는 재정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이 부담하는 반면, 그러한 행위에서 얻는 수익은 금융권에서 독식하는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II. 금융위기와 정책 대응

### 1. 재정자금의 환수와 재발 방지 논의 경위

막대한 정부 재정의 투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와 규제금융비용의 회수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를 순차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7월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강력한 감독기능을 부여하고 규제·감독체계를 단순·투명화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2009년 8월에는 영국의 터너(Turner) 금융감독위 의장이 토빈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수반은 찬성한 반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2009년 9월에는 브뤼셀 EU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슈타인브뤽(Steinbrueck) 독일 재무장관이 금융권의 과열 투기를 막기 위한 국제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9월 24~25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사르코지(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토빈세 도입을 재차 적극 주장하였다. G20는 독일 메르켈(Merkel) 총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IMF에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권 분담방안을

정부 재정의 투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와  
구제금융비용의 회수 방안  
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2009년 10월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12개국은 IMF와 별도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0.5%의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2009년 11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St. Andrews)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영국의 브라운(Brown) 총리가 토빈세 도입 재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반대 입장을 천명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미국의 디파지오(DeFazio)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미국 하원은 금융개혁 법안을 가결하였다.

2010년 1월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책임분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의 부과를 천명하였다. 같은 달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은행 또는 은행 소유 금융기관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제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금융개혁안(일명 볼커 룰)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EU는 2010년 2월 재무장관 회의에서 대형 은행의 규모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지는 볼커 룰은 EU 정책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IMF는 G20의 요청에 따라 2010년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 자금 환수 및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6월에 IMF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의 논의는 IMF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마다 금융위기로부터의 영향과 처방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고, 재정상황 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IMF 최종 보고서 이후 어느 정도로 실질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주요국의 정책 대응

### 가. 미국

#### 1) 금융거래세

미국 의회에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월스트리트세’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부상하여 2009년 12월 미국 디파지오(DeFazio)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금융거래세 법안을 발의하였

다. 그 내용은 주식에 대하여 0.25%, 선물, 스왑, CDS에 대하여 0.02%의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주식거래의 경우 첫 10만달러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250달러의 세금을 감면하고 뮤추얼펀드 주식 매수·매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CBO는 금융거래세가 신설되면 연간 1,500억달러 규모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여 금융거래세는 세율이 낮고 감면이 많아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금융거래세가 신설되면 금융산업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거래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가이트너(Geithner) 재무장관의 발언에서 보듯이 의회와는 달리 부정적이다. 재정손실의 상대적 책임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데 반하여 금융거래세는 소비자 전가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sup>1)</sup>.

## 2) 시스템 정리기금

시스템 정리기금(Systemic Dissolution Fund) 설치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였다<sup>2)</sup>. 대강의 내용을 보면 동 기금을 미국 재무부 내에 설치하되, 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하고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구조이다.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금융기관이나, 100억달러 이상 자산 규모의 헤지펀드에 부과될 예정이며, 동 기금은 이들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정리에 사용할 목적이다. 기금의 최저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도는 1,500억달러로 정해졌는데, 이 규모는 2008년 당시 'too big to fail' 로 정리하지 못했던 SIFI를 정리했다면 소요되었을 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이 정도 크기의 기금을 조성하면 SIFI를 정리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시장과 정책담당자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다.

시스템 정리기금 설치 법안에는 브리지 회사(bridge company)를 설립하여 정리해체 과정을 순조롭게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브리지 회사는 정리된 회사의 자산과 계약을 이양받아 자산의 급매를 방지하고, 지급, 증권대여, 국채 등의 결제 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요 금융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을 회피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부담률이나 부담률 결정 요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①기금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위험 ②예금보험료 등 금융회사들이 이미 부담하

미국 의회에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월스트리트세'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부상하여 2009년 12월 일부 의원들이 금융거래세 법안을 발의하였다.

1) 그러나 대형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거래(proprietary trading)의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문제시되지 않음. 이차적인 전가의 경우 법인세 등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있다.  
2) 상원 안은 2010년 5월에 통과되어 현재 양원의 안을 절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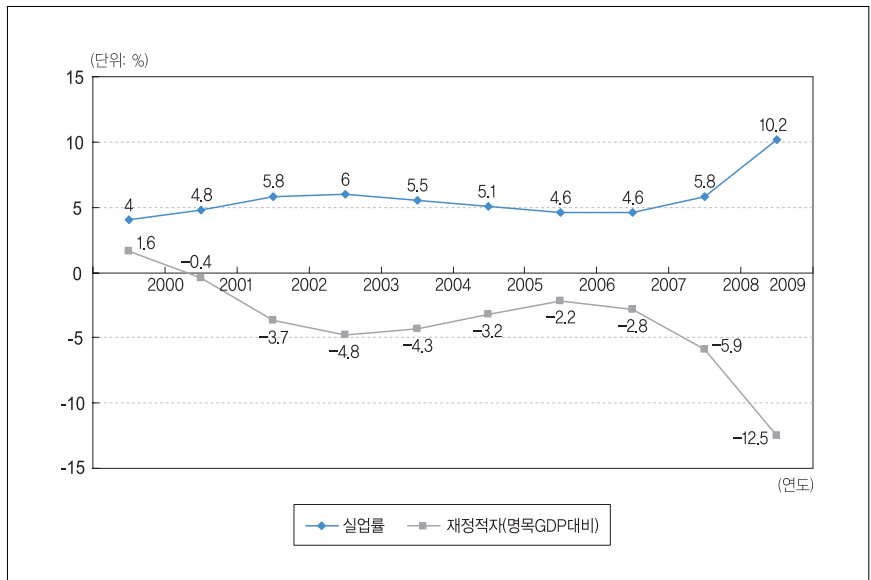
금융위기책임분담금은 2008년 금융위기사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공적자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 목적의 자산 보유를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고 있는 분담금 ③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요소들<sup>3)</sup> ④부담률 산정에 있어서 경기역행적인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회사에 미치는 일반적 경제상황 등.

### 3) 책임분담금

2010년 1월 14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책임분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의 부과를 천명하였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 특히 대형 투자은행이 초래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인 반면(그림 II-1 참조), 월가는 정부, 중앙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막대한 지원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이윤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위기책임분담금은 2008년 금융위기사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공적자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 목적의 자산 보유를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림 II-1] 미국의 재정적자(명목 GDP 대비)와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09, 11 기준)

3) 예를 들면,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외자산의 크기, 종류, 집중도; 금융회사 및 자회사의 활동, 시장점유율, 레버리지; 재무제표상 부채 및 부외부채의 크기, 종류, 집중도, 부보 여부 등

구체적으로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은행에 0.15%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향후 10년간 구제금융 손실분 900억달러를 보전할 계획인데,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sup>4)</su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또는 기타의 긴급안정화조치를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며, 금융위기책임분담금 부과로 조달된 재원은 TARP로부터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표 II-1〉 참조).

미국 하원의 금융개혁법안은 2009년 12월에 통과되었고, 상원에서의 개혁법안도 한번의 부결 끝에 2010년 5월에 통과되어 양원 합동법안을 조율중이다.

〈표 II-1〉 금융위기책임분담금 부과 내용

		주요 내용	비 고
목 적		구제금융 손실분 보전	1,170억달러
실 행 계 획		2010. 6. 30	의회 통과 이후
근 거		긴급경제안정법안 (Emergency Economic Stability Act)	2008. 10. 3 통과
징수 대상기관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50여개 대형 금융회사로 대부분의 지방 중 소규모 은행은 제외
징수 대상자산		총자산 - Tier1 자본금 - 예금	
부 과 율		0.15%	

#### 4) 금융개혁법안

미국 하원의 금융개혁법안은 2009년 12월에 통과되었고, 상원에서의 개혁법안도 한번의 부결 끝에 2010년 5월에 통과되어 현재 양원 합동법안을 조율중이다. 이들 개혁법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체계적 위험 방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지원 차단, 은행감독체계 개선,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확보, 헤지펀드 규제, 보험감독체계 정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1월 21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개혁안(일명 Volcker Rule)도 동 법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볼커 룰은 상업은행들이 헤지펀드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기자본을 활용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과거 Glass-Steagall법과 유사하게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를 어느 정도 격리시키고, 은행 또는 은행 소유 금융기관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며, 납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4) TARP의 근거법인 긴급경제안정법안에서는 TARP 집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까지 TARP 손실분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권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작된 TARP는 2009년 말 종료. 그러나 재무장관이 미 의회에 2010년 10월 3일까지 연장을 공식통보함.

유럽은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된 것과 관련하여 일반재정으로 수입되는 세금의 신설을 선호하였다.

## 나. 유럽

유럽은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된 것과 관련하여 일반재정으로 수입되는 세금의 신설을 선호하였다. 우선 영국의 브라운(Brown) 총리는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한 바 있다. 새로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 당수인 카메론(Cameron)은 금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토빈세보다는 금융보험금에 대한 지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영국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일시적으로 은행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에 대하여 은행보너스세(Bank Payroll Tax)를 부과하였는데, 은행보너스세는 은행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도록 기여한 급여체계를 바로잡고, 은행으로 하여금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은행 등<sup>5)</sup>에서 지급하는 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모든 보너스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과세하며, 주식이나 주식옵션 형태의 보너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당초 5억 5천만파운드(GDP의 0.04%)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었으나, 현재 20억파운드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지지의사를 거듭 강조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동 문제가 조속히 G20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되도록 촉구한 바 있다.

프랑스도 2009회계연도에 지급되는 보너스에 한하여 임시로 보너스세를 부과하였다. 프랑스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금융기관의 위험포지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가 그 대상이며, 27,500유로를 초과하는 보너스에 대하여 세율 50%로 과세하였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금융거래세를 지지해 왔으며, 금융거래세에 대한 초기 EU 및 G20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0년 3월 독일은 은행에 대하여 시스템 위험에 기반한 분담금 부과 및 정리절차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계획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시스템 위험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총부채에서 자기자본과 예금을 제외한 부채의 규모와 타 금융기관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 위험의 부정적 영향을 내재화시켜서 과도한 위험을 취할 유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의 정리에 사용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SIFT의 주요 자산과 부채를 제3의 민간기관 또는 정부

5)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포함

소유 브리지 은행으로 이양하여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설립된 금융시장안정기구(Federal Agency for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를 상설기관으로 전환하여 동 기구가 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벨기에는 2004년 7월에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 도입법을 승인한 바 있다. 연간 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외환거래 등에 대해서는 토빈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토빈세 도입법안은 유럽경제통화연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모든 국가들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사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안정기금(Financial Stability Fund)을 설립하고, 이를 국가부채관리청(National Debt Office)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금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스웨덴에서 설립된 은행들이다. 기금은 15년 후 GDP의 2.5% 수준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하며, 설립 초기에 정부가 GDP의 0.5% 수준인 150억크로네를 출연하였다. 기금의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부채관리청은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 동 기금에 의하여 보장받는 금융기관들은 총부채에서 자기자본, 예금보험금 등을 제외한 부채에 대하여 연간 0.036%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의 50%만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부채관리청은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2008년 1월 예금보장위원회를 흡수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부채의 효율적 관리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와 안정기금 수수료를 각각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2011년에 두 기금을 통합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납부하는 것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외화유입 급증에 따른 브라질 헤알화의 평가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자금의 헤알화 표시 주식과 채권투자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IOF Tax)를 부과하였다. 연방세인 금융거래세는 금융대출, 보험, 단기 유가증권거래, 투자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부과되며 세율은 0~25%까지 금융거래의 종류 및 기간에 따라 다르다.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와 같은 생산분야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

스웨덴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안정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국가부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외화유입 급증에 따른 브라질 헤알화의 평가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자금의 헤알화 표시 주식과 채권투자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IOF Tax)를 부과하였다.

치는 만료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브라질 주식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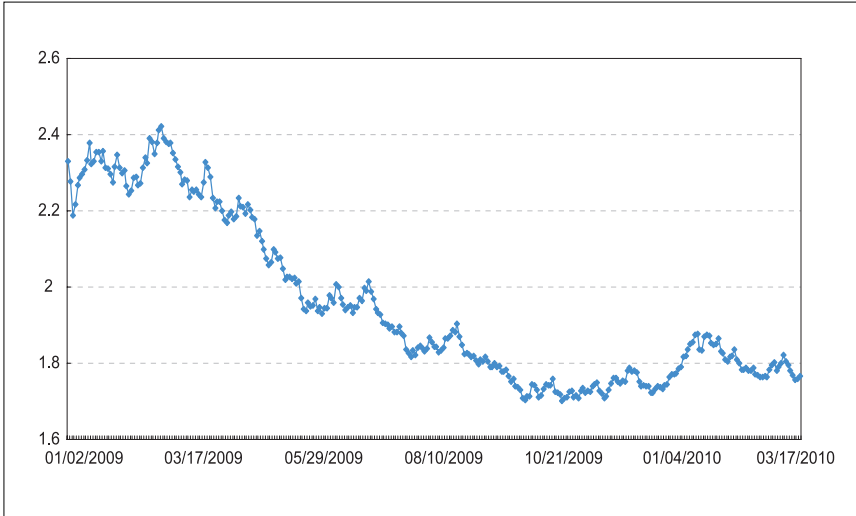
이보다 앞서 2008년 3월에 국공채와 같은 확정상품에 대해 1.5%, 외환대출에 0.38%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이 가중되자 2008년 10월에 중단한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동 조치의 목적이 국제 경제위기로 줄어든 세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화자본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초 전문가들은 단기투기자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브라질 정부는 투자자본의 최소 투자기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거래세에 대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2009년 11월 19일부터 ADR (American Depository Receipt)의 국내 주식 전환시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9년도에 35% 정도 평가절상되었던 브라질 헤알화는 동 조치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I-2) 참조). 헤알화는 2009년 초에 미국 달러당 약 2.4헤알 수준에서 2009년 10월 20일까지 1.71헤알로 평가절상되었으나, 금융거래세 부과 직후 약 1.2% 정도 평가절하된 후 현재까지 1.7~1.9헤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 증시도 거래세 부과 직후 약 3% 정도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하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II-3) 참조).

Levy-Yeyati & Kiguel(2009)은 브라질의 외환거래세는 일시적인 충격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브라질 경제의 기초요인(fundamentals)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 세금은 자금 유출입의 장애요소가 아니며,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II-2] 브라질 환율 추이(2009. 1~201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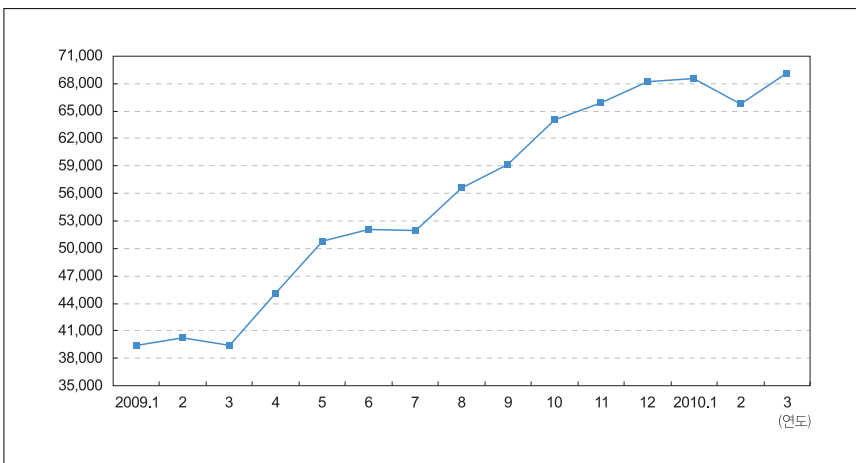
(US 달러 기준)



자료: <http://www.bmfbovespa.com.br>

Levy-Yeyati & Kiguel(2009)은 브라질의 외환거래세는 일시적인 충격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브라질 경제의 기초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 세금은 자금 유출입의 장애요소가 아니며,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II-3] 브라질 주가지수(BOVESPA) 추이(2009. 1~2010. 3)



자료: <http://www.bmfbovespa.com.br>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재정자금을 환수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안정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III. 금융보험금과 금융과세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재정자금을 환수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안정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① 금융보험금(insurance levy):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여 금융위기 발생시의 비용을 충당<sup>6)</sup>
- ② 정리기금(resolution fund):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정리기금에 납입하여, 위기 발생시 정리금융기관 해체에 사용
- ③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

앞서 논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 발생 후 초기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금융거래세의 부과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였고, IMF에서도 금융거래세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위험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보험금 또는 분담금의 형태로 징수하여 위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금 또는 정리기금을 적립하고, 투입재정자금의 환수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논의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지난 4월에 발표된 IMF 중간보고서는 금융안정기여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자원 조성의 주된 수단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라는 다소 새로운 제안을 보조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제안하고 있다. 금융안정기여금은 미국의 금융위기책임분담금과 유사한 것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처음에는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 궁극적으로 각 금융기관의 위험도와 시스템 위험에 대한 책임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 및 재정자금 환수의 주요한 수단으로 동 방식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라고 하겠다<sup>7)</sup>.

IMF는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 또는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금융안정기여금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이윤(profits)과 보수(remuneration)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금융안정기여금의 추가적인 보조 정책수단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세

6) 보험금 또는 분담금(levy)을 은행에 대하여 부과할 때, 광의의 의미로 '은행세'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즉 부채를 베이스로 한다는 점에서 세금(tax)보다는 분담금(levy)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봄.

7) 그러나 금년 6월 초에 부산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수만이 목적이라면 금융활동세가 우월하지만, 금융거래세는 세수 이외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있어서 이윤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금융·보험업자 수익(revenue)의 0.5%가 교육세로 과세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보험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교육세와 같은 형식으로 금융기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법인세와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활동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면 이중과세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만일 목적세인 교육세가 폐지된다면 금융활동세의 도입을 보다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활동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면 이중과세 논란의 소지가 있다.

## IV.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 1. 금융시스템 위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 설립과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설치된 제도를 통하여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표 IV-1>에 이러한 제도들이 요약·정리되어 있는데, 그 밖에 모든 부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보예금의 0.1%를 부과하는 특별기여금 제도가 있다. 동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권에서 부담하는 사후적인 원인자 부담 제도로써 2027년까지 20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IV-1]은 이들 기금이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사전적·사후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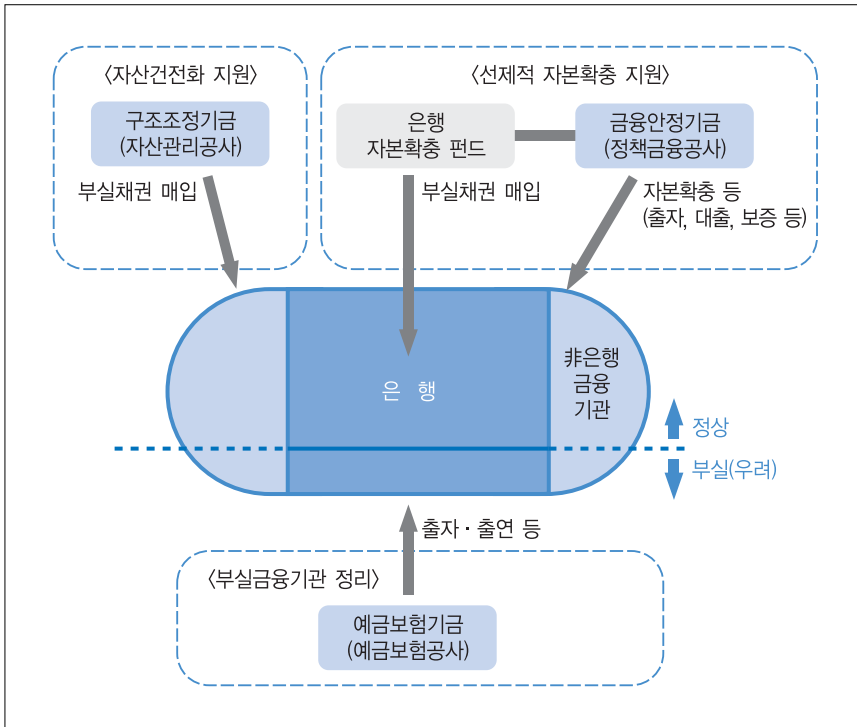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  
설립과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설치된 제도를 통하여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표 IV-1〉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관련 대응제도 개요

	예금보험제도	구조조정기금	은행자본확충 펀드	금융안정기금
도입 목적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안정 도모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등 처리 및 금융위기 확산 조기 차단	실물경제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은행자본확충 지원	금융중개 기능 제고 및 금융시장안정 도모
자원 조달	보험료(부보예금평균잔 × (0.08~0.35%)), 회수자금 및 운용수익 등	채권발행(정부보증)(40조원 한도)	한국은행(10조원) 및 산업은행(2조원) 대출금, 기관 및 일반투자자(8조원)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 등 차입금, 채권발행(정부보증), 회수자금 및 운용수익 등
지원대상 금융기관	부보대상 금융회사(신탁 제외)	금융회사, 부실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은행	금융기관
지원 요건	부실(우려)금융기관 지정시	공사법상 부실자산 요건 성립시	은행 신청시 한도를 부여하고 은행별 필요에 따라 지원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도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신청
지원 방식	예금 대지급, 출자·출연, 대출, 채무보증 등 부실금융기관 자금 지원	금융회사의 기업부실채권, 부실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 자산, 구조개선기업의 자산매입	신종자본증권 인수, 후순위채 인수 등	대출·예치, 자산매입, 채무보증·인수, 출자·출연
지원 시점	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정 이전에도 가능	상시	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정 이전에도 가능	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정 이전에도 가능
지원 후 사후관리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 체결	해당 없음	매월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차기 매입대상 및 금리 등 지원조건 차등화	금융기관 신청시 금융기능 강화 계획 제출(경영책임이행 여부 등에 따라 MOU 내용 차등화)
규모(실적)	20조원(목표기금 상한)(10. 3월 현재 5.4조원 적립)	40조원(채권발행 한도)(총 1.1조원 지원)	20조원(한도)(신종자본증권: 3.5조원, 후순위채권: 0.5조원 매입)	해당 없음(미가동)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 IV-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체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구축은 향후 국제적인 논의의 전개를 따르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구축은 향후 국제적인 논의의 전개를 따르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기금 손실은 거의 없는 편이며, 기존의 기금들도 아직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2. 금융거래세

### 가. 현황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거래세는 주식거래금액의 0.3%를 기본세율로 하는 증권거래세가 유일하다. 거래세는 징수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거래세 도입에 따른  
시장수요의 탄력성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하여  
도입 단계의 세율은 우선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IV-2〉 증권거래세 세수 추이(2003~2008)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권거래세수	16,065	13,016	23,705	25,257	34,688	27,875
국세 대비 비중	1.40	1.10	1.86	1.83	2.15	1.67
GDP 대비 비중	0.21	0.16	0.27	0.28	0.36	0.2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론과 재정자금의 환수 등 국제적 논의의 전개를 볼 때,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sup>8)</sup>. 거래세 도입에 따른 시장수요의 탄력성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하여 도입 단계의 세율은 우선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세수 목적보다는 특정 정책 목표, 예를 들면 투기거래의 억제 또는 급격한 외환유출입 완화 등의 목적으로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단 세제가 정착되면 거래량의 증가에 따라 세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주요국의 금융거래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주요국의 금융거래세 현황

(단위: %)

국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은행 출금	은행 입금	비고
그 리 스	0.15						
대 만	0.30	0.10	0.0000125-0.6				국채는 면제
말레이시아	0.30						
멕시코					2		
벨기에	0.17	0.07					
브라질				2		0.0165	
스위스	0.15/0.3	0.15/0.3					
아르헨티나	1	1			0.60	0.60	
아일랜드	1						
에콰도르						1	
영국	0.50	0.50					
인도	0.025		0.017/0.125		0.1	0.1	
인도네시아	0.10						
중국	0.10						

8) Krugman(2009)은 New York Times 기고를 통하여 지금이 금융거래세 도입의 절호의 기회를 설 파하였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에서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 교수들의 연대서명과 함께 발표함. (<http://www.cepr.net/index.php/publications/reports/economists-support-ftt>).

〈표 IV-3〉의 계속

(단위: %)

국 가	주 식	채 권	파생상품	외 환	은행 출금	은행 입금	비 고
캐 나 다			0/5				
콜 롬 비 아					0.40		
태 국	0.10	0.10					국채는 면제
파 키 스 탄	1.50						
페 루					0.05	0.05	
프 랑 스	0.3/0.15	0.3/0.15					
필 리 핀	0.50						
한 국	0.30						
홍 콩	0.10		0.10				

자료: 이인형 외(2010)

토빈세는 단기국제투기자금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 국가의 일방적 과세가 자본유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세금이다.

### 나.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금융거래세를 도입한다고 할 때,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주식, 파생 금융상품, 채권, 외환, 은행 입출금 거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주식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도한 투기적 거래 억제목적 등을 위하여 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과세는 가능하다고 본다. 더욱이 이인형 외(2010), 서병호(2010) 등에 따르면 금융거래세 또는 분담금의 부과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채권시장은 장외거래의 비중이 크고, 세수목적 이외에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채권거래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유인은 적다고 본다.

원/달러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토빈세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 토빈세는 단기 국제투기자금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 국가의 일방적 과세가 자본유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세금이다. 그러나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 외환시장으로의 거래 유출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최근 브라질의 예를 보면, 2009년 외환거래세의 도입으로 평가절상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증시의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인형 외

우선적으로 금융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라고 할 수 있다.

(2010), 서병호(2010)에서 토빈세 또는 분담금의 부과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토빈세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입출금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직·간접으로 금융기관에서 이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세 과세에 따른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수목적 이외의 정책적인 목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심리적인 조세저항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적으로 금융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라고 할 수 있다.

#### 다. 거래세 관련 기존 연구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세 부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금융거래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 경제학에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거래세의 부과를 처음 주장한 것은 John M. Keynes 이다. Keynes(1936)는 그의 '일반이론'에서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투기는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행위이며 경제의 효율적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통하여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James Tobin(1974, 1978)은 단기적 투기자금의 국제적 이동을 제어하고, 환율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합의하에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국내증권 및 외환시장의 모든 현물환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실물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무역거래나 실질자본투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토빈세에서 제안하였다.

Stiglitz(1989)는 거래세가 단기적인 투기거래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며,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켜 시장 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Summers and Summers(1989)도 거래세는 단기투기 억제를 통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부문으로의 자원투입을 적절히 통제하며, 기업경영자의 시각을 장기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Frankel(1996)은 외환시장에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환율변동성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자본의 직접규제에 비하여 거래세는 실질적으로 장기거래보다 단기거래에 훨씬 무겁게 부과되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설문조사와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단기투기거래가 실제 시장불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국제공조를 통한 토빈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심도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Pollin et al.(2001)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추정하여 미국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투기거래를 감소시킴으로써 금융·재정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투기억제 효과뿐 아니라 세수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다.

Stephan et al.(2008)은 금융거래세 부과의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첫째, 과도한 거래로 인하여 장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둘째, 세금의 부과가 효율적 시장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심하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투기거래를 줄이는가? 셋째, 금융거래세의 세수가 그 부과 비용을 감안할 때 충분한가?

그들은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금융거래의 수준이 실물거래 수준의 70배에 이르며, 이자율 증권의 거래량은 실제 투자의 수백 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실물거래와 금융거래 간의 격차는 1990년대 말부터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보였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의 성장은 현물시장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2006년에 유럽에서 현물거래는 명목 GDP의 12배 수준인데 비하여 파생상품거래는 명목 GDP의 84배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우리나라의 선물·옵션 거래는 1996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비과세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연간 거래금액은 '경' 단위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현재 그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KOSPI 200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다.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해서만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선물·옵션 거래는 1996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비과세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연간 거래금액은 '경' 단위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세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이 차선책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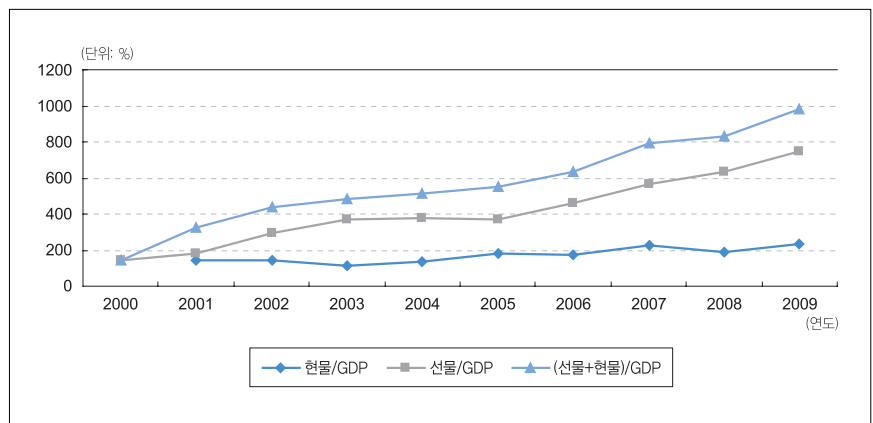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현물시장에서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세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이 차선책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실물거래 대비 거래규모를 보면 투기적인 거래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참조). 김서경·홍정훈(2004)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옵션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투기를 위한 초과수요 때문에 나타나는 프리미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인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 보면, 그 모기지를 이용한 파생상품의 연쇄적 발행 및 유통으로 위험의 규모조차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거래가 실물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유통화·증권화를 통하여 파생상품은 새로운 파생상품을 창조하는 등 실물경제 대비 과도한 금융거래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이용한 과도한 투기거래를 억제할 정책적인 목표는 그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2] GDP 대비 금융거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거래소

거래세 부과에 따른 수요탄력성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세와 유사한 성격인 수수료의 예를 통하여 거래세 부과가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 당시 선물 거래감독기관인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CFTC가 감독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이나 옵션에 대하여 건당 7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한 바 있다.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는 하루에 수백~수만달러의 손익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이 이 정도의 추가비용 때문에 거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sup>9)</sup>.

또 다른 예로서 증권위원회(SEC)의 예산을 구성하는 증권시장 수수료는 거래액에 대한 일정률로서 선물수수료의 경우보다 많은 투자자들, 회사, 시장 중사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증권위원회의 예산이 엔론(Enron) 파문과 2002년의 사베인-악슬리법(Sarbanes-Oxley Act) 이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 수수료 인상도 동일한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거래량이나 유동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위관기관이 KOSPI 200 선물·옵션 거래와 관련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난 십수년간 계속 인하되어 왔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산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비용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수수료 수준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거래세 부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세의 부과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0)</sup>.

## 마. 토빈세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대책으로는 크게 보아 자본유출입에 대한 직접 규제와 외환거래세와 같은 가격기능에 의한 규제가 있다. 과거에 직접 자본규제는 그 부작용과 우회거래로 인한 실효성 저하로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사 말레이시아의 직접 자본 통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환(2010)은 싱가포르의 자본규제를 최근의 성공적인 자본규제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계 은행이 많이 사용하는 외화계정에 대해 2010년 말까지 외화예금 잔액에 대해 40%까지 적격자산 적립 의무를 도입하였다. 그 적격자산에는 싱가포르 국채 등 수익률이 매우 낮은 안전자산만 포함

급격한 외화유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대책으로는 크게 보아 자본유출입에 대한 직접 규제와 외환거래세와 같은 가격기능에 의한 규제가 있다.

9) Jickling(2006)

10)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홍범교(2008)를 참조하기 바람.

외은 지점은 국내 국제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큰손 역할을 하는 만큼, 외화자본 유출입의 창구 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단기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되어 있어 높은 금리로 외화자금을 예치한 은행들은 적격자산 매입으로 역마진을 보게 되어,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축소시키고 예금자산의 해외 유출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외화조달의 주된 창구 역할을 하는 외국은행 지점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화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이를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최근 자본의 직접규제에 대한 국제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고려한다면 자본거래에 대한 일시적 규제조치는 인정되나<sup>11)</sup>, 상시적인 규제는 어려운 만큼 금융거래세를 통한 간접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본거래의 직접규제가 외은 지점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거래세의 부과는 보다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은 지점은 국내 국제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큰손(major player) 역할을 하는 만큼, 외화자본 유출입의 창구 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단기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IV-4〉와 〈표 IV-5〉는 이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2009년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 가운데 단기 유출입이 가능한 증권투자 자금과 장단기 차입금이 전체 외국인 투자 자금에서 각각 52%와 20%를 차지하고 있다(〈표 IV-4〉 참조). 장단기 차입금의 80%는 은행부문의 차입금으로서 이 가운데 60~70% 정도가 단기 차입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5〉의 대외채무 현황을 보면 외은 지점의 경우 단기채무가 장기채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추이(2005~2009)

(단위: 백만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국인 직접투자	1,048.8	1,157.7	1,219.6	946.8	1,107.7	
증권투자	3,104.6	3,523.9	4,566.5	2,509.6	3,900.2	
파생금융상품	13.2	24.2	49.1	157.5	97.4	
기타 투자	무역신용	332.1	423.5	579.9	700.1	633.7
	차입	756.4	1228.4	1629.1	1426.5	1504.5
	현금/예금	90.3	118.1	158.8	269.0	174.3
	기타	49.2	46.8	60.2	75.4	109.9

11) 우리나라 외환거래법 제6조는 경제적인 비상시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외국환 거래의 정지 등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되고 있음.

〈표 IV-5〉 대외채무 현황(연말 기준)

(단위: 백만달러)

	2006	2007	2008	2009
합 계	260,061	383,152	377,944	401,922
단기채무	113,748	160,249	149,894	149,960
장기채무	146,312	222,903	228,050	251,962
일반정부	10,279	31,749	21,141	27,804
통화당국	9,609	21,869	31,218	39,637
예금취급기관	136,536	192,880	169,420	180,898
국내은행	82,113	108,959	96,982	103,697
단 기	44,259	54,642	42,581	43,239
장 기	37,854	54,317	54,401	60,458
외은지점	54,422	83,921	72,438	77,201
단 기	51,835	79,345	67,799	71,916
장 기	2,588	4,576	4,639	5,285
기타부문	103,637	136,654	156,165	153,582
비은행금융회사	16,127	24,173	27,496	25,978
공기업	8,475	7,712	9,452	12,843
민간기업	79,035	104,769	119,217	114,762

자료 : 한국은행

거래세 부과에 대한 국제금융자본의 거부 반응 등을 예상한다면, 급격한 자금유출입을 억제할 수단으로서 토빈세 부과를 위한 분위기를 G20에서 조성할 수 있다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세 부과에 대한 국제금융자본의 거부 반응 등을 예상한다면, 급격한 자금유출입을 억제할 수단으로서 토빈세 부과를 위한 분위기를 G20에서 조성할 수 있다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토빈세의 도입은 외화자금의 유치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국제공조가 필요한 면이 있으나, 최근 브라질의 예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원/달러 시장에서 외환거래세의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적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단계에서는 Spahn(1996)이 제안하는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가 기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토빈세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Palley(2003), Spratt(2005), Jetin & Denys(2005)

금융거래세의 경우, 세금 부과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다소 낮은 세율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등은 외환거래의 전산화와 결제의 집중화 등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토빈세의 실제 부과에 큰 어려움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V. 결론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의 의제를 설정하고, 국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자금의 환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회의는 외부적으로 화려한 만큼 결실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국제공조를 표방하되 이해충돌이 있을 시에는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표방하였으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몇 차례의 금리 인상을 통하여 ‘출구전략’을 시행중에 있다. 재정적자 상태, 자국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자금의 투입 여부 등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식은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세정책은 금융정책에 비하여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시스템 위험 방지를 위한 분담금 문제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을 베이스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으나, 이번 6월 초 부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대한 의존과 규제완화 추세가 지나치게 진전되어 왔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국가별 상황에 맞게 시장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세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금융거래세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세금 부과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다소 낮은 세율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금융거래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장은 파생금융상품시장과 외환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양 시장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나친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제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여론이 다소 주춤하나, 금융위기의 책임론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여론도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대하여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면 도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KIPF**

최근 국제여론이 다소 주춤하나, 금융위기의 책임론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여론은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대하여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김서경·홍정훈, 「내재주가지수를 이용한 옵션시장과 주식시장의 상호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증권학회지』, 제33집 3호, 2004, pp. 95~122.
- 김정환,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의 효과와 자본통제의 필요성 검토」, 『주간 금융브리프』, 제19권 17호, 2010. 4, 17~4, 23, pp. 3~7.
- 서병호, 「정리기금·책임분담금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한국금융연구원 내부자료, 2010. 3.
- 이인형 외, 「금융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추정과 영향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내부자료, 2010. 3.
- 홍법교,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 7.
- IMF, 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Interim Report for the G-20, 2010. 4.
- Jetin, Bruno & Lieven Denys, *Ready for Implementation: Technical and Legal Aspects of a Currency Transaction Tax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EU*, WEED: Berlin, 2005.
- Jickling, Mark, "Proposed Transaction Fee on Futures Contract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3, 2006.
- Keynes, John,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University Printing House: Cambridge, 1936.
- Krugman, Paul, "Taxing the Speculators," *New York Times*, November 26, 2009.
- Levy-Yeyati, Eduardo & Andrea Kiguel, "Quantifying the Effect of Tobin

- Tax: The Case of the Brazilian IOF,” *Barclays Capital, The Emerging Markets Weekly*, 20 November, 2009, pp. 13~15.
- Palley, Thomas, “The Economic Case for the Tobin Tax,” *Debating the Tobin Tax: New Rules for Global Finance*, New Rules for Global Finance Coalition Conference Paper, Washington D.C., November 2003.
- Pollin, Robert, Dean Baker & Marc Schaberg,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for U.S. Financial Market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20, 2001.
- Spahn, P. Bernd,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and Transactions Taxes: Survey and Options,” IMF Working Papers 95/6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5.
- , “The Tobin Tax and Exchange Rate Stability,” *Finance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Vol. 33(2), 1996, pp. 24~27.
- Spratt, Stephen, *A Sterling Solution: Implementing a Stamp Duty on Sterling to Fin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A Report for Stamp Out Poverty, November 2005.
- Stephan, Schulmeister, Margit Schratzenstaller & Oliver Picek, *A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 Tax: Motives, Revenues, Feasibility and Effects*, WIFO, March 2008.
- Stiglitz, Joseph, “Using Tax Policy to Curb Speculative Short-Term Trading,”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3, pp. 101~115, 1989.
- Summers, Lawrence and Victoria Summers, “When Financial Markets Work Too Well: A Cautious Case For A Securities Transactions Tax,”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3, pp. 261~286, 1989.
- Tobin, James, *The New Economics One Decade Older: The Eliot Janeway Lectures in Honour of Joseph Schumpet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Eastern*

*Economic Journal*, Eastern Economic Association, Vol. 4(3-4),  
pp. 153~159, 1978.

금융감독원 [www.fss.or.kr](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www.fsc.go.kr](http://www.fsc.go.kr)

브라질거래소 [www.bmfbovespa.com.br](http://www.bmfbovespa.com.br)

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한국거래소 [www.krx.co.kr](http://www.krx.co.kr)

한국은행 [www.bok.or.kr](http://www.bok.or.kr)

#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srkim@kijp.re.kr)

선진국들은 배기가스 규제 강화, CO<sub>2</sub> 배출량 삭감 등을 목표로 자동차세제 전반에 환경 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 I. 서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정책 추진이 미진한 수준이었다. 선진국들은 배기가스 규제 강화, CO<sub>2</sub> 배출량 삭감 등을 목표로 자동차세제 전반에 걸쳐 환경 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제를 설정하였고, 특히 일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탄소세(carbon tax)'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물론 국가 경제 및 국제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EU는 지역 내에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CO<sub>2</sub> 배출량에 규제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수출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유럽국가들은 자동차 보유 및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원인자에게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자동차의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하고, 또한 미래의 성장동력인 녹색성장의 주력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조세체계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소비과정

에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부문 지원, 산업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수송부문은 특정 용도에 지출이 집중된 목적세적 성격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수송부문 이외의 산업, 가스·발전부문 등에서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가 부족하며, 산업 지원 측면에서 비과세조치 및 감면이 과도하게 존재한다. 더불어 자동차 관련 세제도 구매, 보유 및 이용단계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계획 발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으로 녹색성장의 전략 및 수단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up>1)</sup>.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및 자동차 부문을 포함하는 각종 정책대안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친환경 경쟁시대의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 세제의 기준을 CO<sub>2</sub> 배출량 등 친환경 세제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을 위하여 주요국의 개편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요 정책과제 및 시사점을 검토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세제의 현황,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사례와 정책효과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은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의 정책과제와 시사점이다.

## II.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현황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 관련 세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단계에서 5개, 보유단계에서 2개, 이용단계에서 4개 등 총 11개 세금이 복잡하게 부과되며, 수입차는 여기에 관세가 추가된다.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 측이 대형차 위주의 수입차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시정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바, 일부 관련 세목에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sup>2)</sup>.

###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친환경 경쟁시대의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세제를 CO<sub>2</sub> 배출량 등 친환경 세제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1) 최근 녹색성장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국가목표는 차량 평균 CO<sub>2</sub> 배출량 140g/km, 연비 17km/l로 '12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30%, '13년 60%, '14년 80%, '15년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보유단계의 현행 자동차세는 800cc 이하(cc당 80원), 1000cc 이하(cc당 10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2000cc 이하(cc당 200원), 2000cc 초과(cc당 220원)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차등과세되고 있는데, 한미 FTA 타결로 향후 3단계인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2000cc 초과(cc당 200원)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 관련 세제는 구매단계에서 5개, 보유단계에서 2개, 이용단계에서 4개 등 총 11개 세금이 복잡하게 부과되며, 수입차는 여기에 관세가 추가된다.

〈표 1〉 우리나라 자동차세제 현황(2009. 6월 기준)

단계	세목	과세 주체	과세대상	세율	관련법규	
취득 단계	개별 소비세 <sup>1)</sup>	국세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제외)	물품가격의 5/100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②항 3호 등 병시행령 제2조의 2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100		
	교육세	국세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30/100	교육세법 제5조 제①항 2호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 판매가격+개별소비세+ 교육세	10/100	부가세법 제14조	
보유 단계	취득세	지방세	차량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20/1,000(경차제외)	지방세법 제112조 제①항 지방세법 제268조의 2 제②항	
	등록세	지방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50/1,000 (경차제외)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①항 지방세법 제268조의 2 제②항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2/1,000	
				이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기타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비영업용: 자동차가액의 30/1,000	매 1건당 7,500원	
				- 영업용: 자동차가액의 20/1,000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2/1,000		
그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자동차세	지방세	승용자동차	-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cc당 80~220원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①항		
	지방교육세	지방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에 대한 자동차세	30/100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제①항 5호	
이용 단계	교통·에너지·환경세 <sup>2)</sup>	국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탄력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①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①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탄력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②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교육세	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100	교육세법 제5조 제①항 2호 및 3호	
	부가가치세	국세	휘발유, 경유, 부탄	10/100	부가세법 제14조	
	주행세	지방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	260/1,000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제①~②항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14)	

주: 1) 2008. 12. 19~2009. 6. 30  
2)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자동차 관련 세제의 정책적 목적은 세수확보, 환경보호, 교통정책, 산업, 지역, 소득분배(사회)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특히 세율구조를 결정할 때 정책목표가 반영된다.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단계별 비중 구성은 환경보전과 교통혼잡에 대한 규제의 상대적 긴급성,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 마련 방법, 지역발전 및 각종 사회적 목적 등 여러 가지 국가별 정책적 목표뿐만 아니라 각 세제의 근본적 성격이나 국세와 지방세 간 역할분담(세목구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자동차 관련 세제의 정책적 목적은 세수확보, 환경보호, 교통정책, 산업, 지역, 소득분배(사회)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특히 세율구조를 결정할 때 정책목표가 반영된다.

〈표 2〉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세 목	2004	2005	2006	2007	2008(추정)
구매단계	개별소비세	5,110	6,811	9,022	8,811	8,627
	교육세	1,533	2,043	2,707	2,643	2,588
	부가가치세	19,892	24,078	26,409	28,079	26,732
	소계	26,535	32,982	38,138	39,533	37,947
	비중	(11.1)	(12.7)	(14.2)	(13.2)	(12.8)
등록단계	등록세	9,942	10,793	12,998	14,576	12,955
	취득세	5,362	5,490	6,190	6,828	6,296
	소계	15,304	16,283	19,188	21,404	19,250
	비중	(6.4)	(6.3)	(7.2)	(7.1)	(6.5)
보유단계	자동차세	17,920	19,021	21,338	23,699	24,766
	교육세	5,274	6,016	6,801	7,499	7,430
	소계	23,194	25,037	28,139	31,198	32,196
	비중	(9.7)	(9.6)	(10.5)	(10.4)	(10.9)
운행단계	유류 개별소비세	110,161	111,997	103,573	121,726	111,641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51)	(102,878)	(95,938)	(114,635)	(100,491)
	교육세	16,524	16,800	15,536	18,258	16,746
	주행세	17,503	22,925	27,095	32,702	28,808
	유류부가세	29,433	33,906	36,145	35,553	49,381
	소계	173,621	185,627	182,349	208,239	206,576
	비중	(72.8)	(71.4)	(68.1)	(69.3)	(69.8)
자동차 관련세 총계 (A)		238,654	259,879	267,814	300,375	295,969
국세·지방세 총계 (B)		1,444,188	1,564,011	1,715,546	1,965,871	2,065,778
총세수 비중 (A/B)		16.5	16.6	15.6	15.3	14.3

자료: 행정안전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이용단계 대비 자동차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수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자동차 관련 조세(이용단계 유류과세 포함) 수입은 2008년 추정액 기준으로 29.6조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세수의 14.3%에 이른다.

### Ⅲ. 주요국의 자동차세제 개편 사례와 효과

#### 1.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사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기존 세제에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거나, 현행 세제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혹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과세표준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경우에는 연비와 CO<sub>2</sub> 배출량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연료효율 향상은 물론 CO<sub>2</sub>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2015년까지는 신규로 제작되는 비업무용차량(passenger cars)에 대해 CO<sub>2</sub> 배출량을 현재의 175.9g/km에서 130g/km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CO<sub>2</sub> 배출량 한도를 1km 주행에 95g으로 낮춘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CO<sub>2</sub> 배출량(또는 연료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도입하는 EU회원국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연비를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는 등 연료효율 향상과 CO<sub>2</sub>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 유럽

##### 1) 영국

영국은 자동차 보유세를 연료형태와 CO<sub>2</sub>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현재 자동차보유세인 Vehicle Excise Duty(VED)는 2001년 3월 이후 신규차량에 대하여 CO<sub>2</sub> 배출량과 연료형태에 따라 부과하고, 그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조장하기 위해, 1998년까지 단일세율로 부과되던 자동차세(VED)를 차등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표 3〉 EU국가의 자동차관련 과세방법(연비 또는 CO<sub>2</sub> 기준)

	세 목	과세횟수 <sup>1)</sup>	CO <sub>2</sub> 또는 연비	비 고
오스트리아	자동차연료소비세	1회	연비, CO <sub>2</sub>	- 구매시 CO <sub>2</sub> 배출량에 따른 Bonus-Malus 체계(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 지급)
벨 기 예	자동차소비세	1회	CO <sub>2</sub>	- Bonus-Malus 체계
사이프러스	자동차등록세	1회	실린더, CO <sub>2</sub>	- 하이브리드차나 대체연료차에 대해 장려금 지원
	자동차세	순환	실린더, CO <sub>2</sub>	- 150g/km 이하인 경우 배기량 기준 세액 외 15% 감면
덴 마 크	자동차연료소비세	순환	연비	- 연료형태(휘발유와 디젤)에 따라 차등·누진과세
핀 란 드	자동차세등록세	1회	CO <sub>2</sub>	-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 12.2%(60g/km), 48.8%(360 g/km)
	자동차세	순환	CO <sub>2</sub>	- 2010년부터 적용(이전에는 차량 무게에 근거하여 과세)
프 랑 스	자동차등록세 (CO <sub>2</sub> 고배출차)	1회	CO <sub>2</sub>	- Bonus-Malus 체계
독 일	자동차세	순환	CO <sub>2</sub>	- 120g/km이상일 경우 CO <sub>2</sub> g/km마다 2유로(2011년까지)
아 일 랜 드	자동차등록세	1회	CO <sub>2</sub>	- 모든 차종에 대해 동일·누진세율
	자동차세	순환	CO <sub>2</sub>	- 모든 차종에 대해 동일·누진세율
이 탈 리 아	자동차소비세	1회	CO <sub>2</sub>	- 대체연료차(CNG, LPG, 전기, 수소 등)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룩셈부르크	자동차세	순환	CO <sub>2</sub>	- 연료형태(휘발유와 디젤)에 따라 차등·누진과세
말 타	자동차등록세	1회	CO <sub>2</sub>	- 차량 등록가와 차량 길이도 동시 고려
	자동차세	순환	CO <sub>2</sub>	- 첫째 5년 동안 CO <sub>2</sub> 만 기준, 그 외 차량 고려 과세
네 델 란 드	자동차등록세	1회	CO <sub>2</sub> <sup>2)</sup>	- CO <sub>2</sub> 배출량에 따라 휘발유와 디젤차, 하이브리드차에 차등
	자동차세	순환	CO <sub>2</sub>	- 휘발유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
포 르 투 갈	자동차소비세	1회	CO <sub>2</sub>	- 휘발유차, 디젤차, LPG,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차등·누진과세
	자동차순환세	순환	CO <sub>2</sub>	- 모든 차종에 대해 동일과세·누진세율 적용
루 마 니 아	자동차등록세	1회	CO <sub>2</sub>	- 하이브리드차 등 면제
스 페 인	자동차등록세	1회	CO <sub>2</sub>	- 모든 차종에 대해 누진세율적용
스 웨 덴	자동차세	순환	CO <sub>2</sub>	-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 고정세율 적용
영 국	자동차세	순환	CO <sub>2</sub>	-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 <sup>3)</sup> ·누진세율 적용

주: 1) '순환'은 보유에 따른 과세로 매년 부과하는 과세 형태를 의미

2) 가격에 근거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나, CO<sub>2</sub> 기준으로 연료형태별로 Bonus-Malus 체계

3) 201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차에 대해 통합

자료: ACEA(2009)와 OECD(2009)에서 재정리

EU는 2015년까지는  
신규로 제작되는  
비업무용차량에 대해 CO<sub>2</sub>  
배출량을 현재의 175.9g/km에서  
130g/km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은 신규 제도 도입시 과세방식을 구간별 정액제와 구간별 비례제 부과방식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998년 Pre-Budget Report에서 엔진크기, CO<sub>2</sub> 배출량 및 연료형태를 고려하여 세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노동당<sup>3)</sup>에 의해 도입된 자동차세제는 2001년 3월 이후 신차에 대해 CO<sub>2</sub> 배출량에 근거하여 4구간 누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였다<sup>4)</sup>. 이후 신차에 대한 과세구간은 2002년 5구간, 2003년 6구간으로 확대 변경하였다. 이 때 CO<sub>2</sub> 배출량에 대한 과세기준으로 2001년 3월부터 Y-registration제도 시행으로 이에 대한 정보가 신차에 대해서만 제공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 크기와 차령을 과세기준으로 부과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신규 제도 도입시 과세방식을 구간별 정액제(banded scale)와 구간별 비례제(continuous sliding scale) 부과방식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구간별 정액제 부과방식은 단순하게 관리·운영된다는 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세율을 설정하는 데 다소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자동차 생산자들은 각 구간 경계점 이하로 자동차의 CO<sub>2</sub> 배출량 수준으로 감소시키려고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동일 구간 내의 자동차는 다른 유인이 없는 한 CO<sub>2</sub>배출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후 신차에 대한 과세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2006년 3월부터 7구간을 적용하고 기존 차량에 대한 배기량 기준세율을 약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최근 2008년 11월 Pre-Budget Report에서 자동차세의 환경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단계의 과세구간을 13구간으로 더욱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표 4〉 영국의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단위: 파운드)

	엔진크기		세 율		
	2001년 3월 이전에 등록	1,549cc 미만		110	
	1,549cc 이상		175		
2001년 3월 이후 등록	구간	CO <sub>2</sub> 배출량(g/km)	휘발유	디젤	대체원료
	A	100 이하	0	0	0
	B	101~120	40	50	30
	C	121~150	100	110	90
	D	151~165	125	135	115
	E	166~185	150	160	140
	F	186~224 <sup>1)</sup>	190	195	180
G	225 이상 <sup>2)</sup>	210	215	200	

3) 1998년 11월 영국 재무부의 Consultation Paper에서 제안되었다.

4) Budget 2000, HM Treasury, UK

주: 1) 2006년 3월 23일 이전 등록 차량에만 해당  
2) 225g/km 이상은 2006년 3월 이후 등록된 차량에만 해당  
자료: <http://www.hm-treasury.gov.uk>

〈표 5〉 개인용 차량의 자동차세(VED)

(단위: 파운드)

		엔진크기	6개월	12개월	
2001년 3월 이전에 등록		1,549cc 미만	68.75	125.00	
		1,549cc 이상	104.50	190.00	
2001년 3월 이후에 등록		디젤·휘발유 자동차		대체연료 <sup>2)</sup> 자동차	
구간	CO <sub>2</sub> 배출량(g/km)	6개월	12개월	6개월	12개월
A	~100	-	0	-	0
B	101~110	-	35	-	15
C	111~120	-	35	-	15
D	121~130	66	120	55	100
E	131~140	66	120	55	100
F	141~150	68.75	125	57.75	105
G	151~165	82.50	150	71.50	130
H	166~175	96.25	175	85.25	155
I	176~185	96.25	175	85.25	155
J	186~200	118.25	215	110	200
K <sup>1)</sup>	201~225	118.25	215	110	200
L	226~255	222.75	405	214.50	390
M	255~	222.75	405	214.50	390

주: 1) 구간 K는 CO<sub>2</sub> 배출량이 225g/km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2001년 3월 1일부터 2006년 3월 23일 사이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됨

2) 대체연료는 전기, 가스, 태양열, 알코올 등을 말함

3) 위의 자동차세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자료: <http://www.hm-treasury.gov.uk>

2001년 3월 이후에 등록된 차량의 최근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CO<sub>2</sub> 배출량이 많을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높고, 디젤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대체연료 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은 디젤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보다 낮다. 또한 2010년 4월 1일부터 친환경 신규차량 구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첫째 신규등록에 한해 255g/km 이상인 CO<sub>2</sub> 고배출차량에 대해 950파운드를 부과하는 반면, CO<sub>2</sub> 배출량 130g/km 미만인 저배출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 2001년 3월 이전차량에 대해서도 2009년 5월 1일부터 1549cc 이상 차량에 대해서 세율을 15 파운드 인상하여 205파운드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2010년 4월부터 자동차세는 CO<sub>2</sub> 배출량이 적은 A~E구간의 자동차세는 낮

2008년 11월

Pre-Budget Report에서

자동차세의 환경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단계의

과세구간을 13구간으로 더욱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2010년 4월부터  
자동차세는 CO<sub>2</sub> 배출량이  
적은 A~E구간의 자동차세는  
낮아지고 CO<sub>2</sub> 배출량이  
많은 F~M구간의 자동차세  
부담은 높아진다.

아지고 CO<sub>2</sub> 배출량이 많은 F~M구간의 자동차세 부담은 높아진다. 2010년 4월  
부터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동차세 납부시 첫째 적용률을 적용받게 된다. 두 번째 자동차세 납부시에는 기준율을 적용한다.

〈표 6〉 개인용 차량의 자동차세(VED)

(단위: 파운드)

구간	CO <sub>2</sub> 배출량 (g/km)	디젤, 휘발유		대체연료	
		(2010 첫 해 세율)	표준세율	(2010 첫 해 세율)	표준세율
A	~100	0	0	0	0
B	101~110	0	20	0	10
C	111~120	0	30	0	20
D	121~130	0	90	0	80
E	131~140	110	110	100	100
F	141~150	125	125	115	115
G	151~165	155	155	145	145
H	166~175	250	180	240	170
I	176~185	300	200	290	190
J	186~200	425	235	415	225
K	201~225	550	245	540	235
L	226~255	750	425	740	415
M	255~	950	435	940	425

주: 위 자동차세는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적용되지 않음  
자료: <http://www.hm-treasury.gov.uk>

〈표 7〉 2010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

(단위: 파운드)

	엔진크기	2009-10	2010-11
2001년 3월 이전에 등록	1,549cc 미만	125	125
	1,549cc 이상	190	205

2) 프랑스

프랑스는 자동차에 대해 총판매가격의 19.6%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전문적인 딜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s)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으며, CO<sub>2</sub> 배출량을 포함하

는 차량의 마력(horsepower)에 부과되며, 세율은 지역에 따라 27~46유로로 과세된다. 그러나 3.5톤 초과 화물차 또는 비농작용 트랙터와 같은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세율을 50% 경감 적용하며 지역별로 CNG, LPG, 전기, 가솔린/디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를 경감 조치한다.

이렇듯, 최근 프랑스는 탄소세 도입을 시도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CO<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를 도입하여 EU 회원국 간에 기존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처음 1회 등록된 승용차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CO<sub>2</sub> 배출량에 근거하여 저배출차 구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고배출차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현 CO<sub>2</sub> 배출량 평균 176g/km을 2012년까지 130g/km를 목표로 하여 신차 구매 시 프리미엄을 제공(최고 60g/km 이하 5,000유로)하고 최소 15년 이상된 차량을 폐차 시 300유로의 'super-bonus'를 지급한다. 또한 160g/km 이상의 차량구매 시 세금을 부과한다(250g/km 이상 배출시 최고 2,600유로). 그리고 매 2년마다 부과 기준은 5g/km씩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의 보유단계에서는 마력, CO<sub>2</sub> 배출량 및 차량 중량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 첫 1회 등록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CO<sub>2</sub>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과세한다.

등록시점	CO <sub>2</sub> 배출량 수준 (g/km)
2009년	250
2010년	245
2011년	245
2012년 이후	240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이 구입한 차량과 2006년 7월 이후 판매 차량의 경우에, CO<sub>2</sub> 배출량에 근거하여 법인승용차(Company Ca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CO<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를 도입하여 EU 회원국 간에 기존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처음 1회 등록된 승용차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EU회원국 중에서 드물게 연비에 근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덴마크는 24여개의 구간으로 세분하여 구간별 정액세를 부과하고 있다.

CO <sub>2</sub> 배출량(g/km)	세액(CO <sub>2</sub> 배출량 g당 유로)
100 이하	2
100~120	4
120~140	5
140~160	10
160~200	15
200~250	17
250 이상	19

### 3) 덴마크

EU회원국 중에서 드물게 연비에 근거하여 자동차세(annual circulation tax)를 부과하는 덴마크는 과세구간을 24여개로 세분하여 구간별 정액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유종별로 구분하여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과세한다. 즉, 동일 연비인 경우 디젤차가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과세되고 있다. 휘발유차는 리터당 최소 20km를 주행하는 차량의 520덴마크크로네에서부터 4.5km를 주행하는 차량의 18,460덴마크크로네를 부과하는 반면, 디젤차는 리터당 최소 32.1km를 주행하는 차량의 160덴마크크로네에서부터 5.1km를 주행하는 차량의 25,060덴마크크로네로 과세한다. 동일 연비의 경우 휘발유차와 비교할 때 디젤차가 세액의 크기나 차등이 매우 크다.

〈표 8〉 덴마크의 자동차세제 세율구조(연비기준): 휘발유 차량

자동차세 A. 휘발유 개인차량 (연비 km/l)	2008년, 2009년		원화환산	
	세금/6개월 (DKK/대)	세금/년 (DKK/대)	세금/6개월 (원/대)	세금/년 (원/대)
20.0~	260	520	61,425	122,850
18.2~20.0	510	1,020	120,488	240,975
16.7~18.2	760	1,520	179,550	359,100
15.4~16.7	1,010	2,020	238,613	477,225
14.3~15.4	1,260	2,520	297,675	595,350
13.3~14.3	1,510	3,020	356,738	713,475
12.5~13.3	1,750	3,500	413,438	826,875
11.8~12.5	2,000	4,000	472,500	945,000
11.1~11.8	2,250	4,500	531,563	1,063,125
10.5~11.1	2,500	5,000	590,625	1,181,250
10.0~10.5	2,750	5,500	649,688	1,299,375

〈표 8〉의 계속

자동차세	2008년, 2009년		원화환산	
	세금/6개월 (DKK/대)	세금/년 (DKK/대)	세금/6개월 (원/대)	세금/년 (원/대)
A. 휘발유 개인차량 (연비 km/ℓ)				
9.1~10.0	3,240	6,480	765,450	1,530,900
8.3~9.1	3,750	7,500	885,938	1,771,875
7.7~8.3	4,250	8,500	1,004,063	2,008,125
7.1~7.7	4,740	9,480	1,119,825	2,239,650
6.7~7.1	5,240	10,480	1,237,950	2,475,900
6.3~6.7	5,740	11,480	1,356,075	2,712,150
5.9~6.3	6,230	12,460	1,471,838	2,943,675
5.6~5.9	6,730	13,460	1,589,963	3,179,925
5.3~5.6	7,240	14,480	1,710,450	3,420,900
5.0~5.3	7,740	15,480	1,828,575	3,657,150
4.8~5.0	8,230	16,460	1,944,338	3,888,675
4.5~4.8	8,730	17,460	2,062,463	4,124,925
~4.5	9,230	18,460	2,180,588	4,361,175

주: 1DKK = 236.25원('09. 06. 19 기준)

동일 연비의 경우  
휘발유차와 비교할 때  
디젤차가 세액의 크기나  
차등이 매우 크다.

〈표 9〉 덴마크 자동차세제 세율구조(연비기준): 디젤 차량

자동차세	2008년, 2009년		원화환산	
	세금/6개월 (DKK/대)	세금/년 (DKK/대)	세금/6개월 (원/대)	세금/년 (원/대)
B. 디젤 개인차량 (연비 km/ℓ)				
32.1~	80	160	18,900	37,800
28.1~32.1	370	740	87,413	174,825
25.0~28.1	660	1,320	155,925	311,850
22.5~25.0	980	1,960	231,525	463,050
20.5~22.5	1,300	2,600	307,125	614,250
18.8~20.5	1,610	3,220	380,363	760,725
17.3~18.8	1,930	3,860	455,963	911,925
16.1~17.3	2,250	4,500	531,563	1,063,125
15.0~16.1	2,570	5,140	607,163	1,214,325
14.1~15.0	2,890	5,780	682,763	1,365,525
13.2~14.1	3,210	6,420	758,363	1,516,725
12.5~13.2	3,540	7,080	836,325	1,672,650
11.9~12.5	3,860	7,720	911,925	1,823,850
11.3~11.9	4,170	8,340	985,163	1,970,325
10.2~11.3	4,810	9,620	1,136,363	2,272,725

오스트리아의  
자동차등록세는  
연료효율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취득단계의 조세이다.

〈표 9〉의 계속

자동차세	2008년, 2009년		원화환산	
	세금/6개월 (DKK/대)	세금/년 (DKK/대)	세금/6개월 (원/대)	세금/년 (원/대)
B. 디젤 개인차량 (연비 km/l)				
9.4~10.2	5,460	10,920	1,289,925	2,579,850
8.7~9.4	6,090	12,180	1,438,763	2,877,525
8.1~ 8.7	6,740	13,480	1,592,325	3,184,650
7.5~ 8.1	7,350	14,700	1,736,438	3,472,875
7.0~7.5	7,990	15,980	1,887,638	3,775,275
6.6~ 7.0	8,640	17,280	2,041,200	4,082,400
6.2~6.6	9,270	18,540	2,190,038	4,380,075
5.9~6.2	9,910	19,820	2,341,238	4,682,475
5.6~5.9	10,570	21,140	2,497,163	4,994,325
5.4~5.6	11,200	22,400	2,646,000	5,292,000
5.1~5.4	11,890	23,780	2,809,013	5,618,025
~5.1	12,530	25,060	2,960,213	5,920,425

주: 1DKK = 236.25원(09. 06. 19 기준)

####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자동차의 구매단계에 연료소비세(fuel consumption tax) 또는 오염세(일명 NoVA)를 부과한다. 오스트리아의 자동차등록세(Registration Tax)는 연료효율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취득단계의 조세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구입가의 2%×(fuel consumption in litres-3리터), 경유 차량은 차량구입가의 2%×(fuel consumption in litres-2리터)를 부과한다. 이는 새로 등록하는 신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표는 총구입가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구입가격(net purchase price)이며 승용차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세율은 일차적으로 연비에 따라 정해지나, 연비가 동일하더라도 휘발유·경유 등 사용하는 유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자동차 연료소비세에 CO<sub>2</sub> 배출량 기준의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신설하여, 120g/km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유로의 장려금을 제공하지만 180g/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g당 25유로의 벌금을 부과(2010년부터는 160g/km)하고 있으며, 대체연료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0유로의 장려금을 제공한다.

**〈표 10〉 오스트리아의 자동차등록세(2009년 12월 기준)**

종류	구분	세율(%)
경유차	연비 10 ℓ/100km 미만	$(\ell/100\text{km}-2)\times 0.02$
	연비 10 ℓ/100km 이상	16
휘발유차	연비 11 ℓ/100km 미만	$(\ell/100\text{km}-3)\times 0.02$
	연비 11 ℓ/100km 이상	16

자료: ACEA(2009)

CO<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보조금-부담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차량의 첫 취득단계에서 Bonus 또는 Malus는 차량의 CO<sub>2</sub> 배출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5) 벨기에

벨기에는 자동차 구매시 21%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첫 등록시점에 31유로의 자동차등록세를 부과한다. CO<sub>2</sub> 배출량을 기준으로 105g/km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가의 15%, 최대 4,540유로까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05~115g/km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가의 3%, 최대 850유로까지 공제한다. 또한 Diesel Particle Filter(DPF)를 부착하고 CO<sub>2</sub> 배출량이 130g/km이하인 경우 신차는 구매가격에서 210유로의 세액을 경감해준다. 또한 CO<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 왈론지역 적용)도 운영하고 있다. 차량의 첫 취득단계에서 Bonus 또는 Malus는 차량의 CO<sub>2</sub> 배출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145g/km 이하 차량에 대해서 장려금을 제공(105g/km 이하의 경우 최대 1,000유로)한다.

반면, 195g/km이상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벌금을 부과(255g/km 이상의 경우 최대 1,000유로)하고 146~195g/km구간은 다음 표와 같이 Bonus-Malus의 중립적 구간(neutral zone)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교체 시(신차 또는 중고차) 다음 표와 같이 보조금과 부담금은 구입차량과 교체차량의 CO<sub>2</sub>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표 11〉 벨기에의 자동차 첫 등록시 보조금-부담금 제도**

CO <sub>2</sub>	← BONUS														MALUS →													
	<105	105-115	116-125	126-135	136-145	146-155	156-165	166-175	176-185	186-195	196-205	206-215	216-225	226-235	236-245	246-255	>255											
Tariffs	1,000€	800€	200€	150€	100€	0€	0€	0€	0€	0€	100€	150€	200€	250€	300€	350€	1,000€											

유류과소비세(Gas Guzzler Tax)는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연비가 낮은 승용차에 대해 연료 절약을 장려할 목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정한 연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이다.

〈표 12〉 벨기에의 차량교체시 보조금-부담금 제도

Replacing vehicle		MALUS															
CO <sub>2</sub>	<105	105-115	116-125	126-135	136-145	146-155	156-165	166-175	176-185	186-195	196-205	206-215	216-225	226-235	236-245	246-255	>255
<105	1000	800	0	0	0	0	0	0	0	0	550	600	650	700	750	800	1000
105-115	1000	800	0	0	0	0	0	0	0	0	500	550	600	650	700	750	1000
116-125	1000	800	0	0	0	0	0	0	0	0	450	500	550	600	650	700	1000
126-135	1000	800	100	0	0	0	0	0	0	0	400	450	500	550	600	650	1000
136-145	1000	800	150	100	0	0	0	0	0	0	350	400	450	500	550	600	1000
146-155	1000	800	200	150	100	0	0	0	0	0	300	350	400	450	500	550	1000
156-165	1000	800	250	200	150	0	0	0	0	0	250	300	350	400	450	500	1000
166-175	1000	800	300	250	200	0	0	0	0	0	200	250	300	350	400	450	1000
176-185	1000	800	350	300	250	0	0	0	0	0	150	200	250	300	350	400	1000
186-195	1000	800	400	350	300	0	0	0	0	0	100	150	200	250	300	350	1000
196-205	1000	800	450	400	350	0	0	0	0	0	0	100	150	200	250	300	1000
206-215	1000	800	500	450	400	0	0	0	0	0	0	0	100	150	200	250	1000
216-225	1000	800	550	500	450	0	0	0	0	0	0	0	0	100	150	200	1000
226-235	1000	800	600	550	500	0	0	0	0	0	0	0	0	0	100	150	1000
236-245	1000	800	650	600	550	0	0	0	0	0	0	0	0	0	0	100	1000
246-255	1000	800	700	650	600	0	0	0	0	0	0	0	0	0	0	0	1000
>255	1000	800	750	700	650	0	0	0	0	0	0	0	0	0	0	0	1000

나. 기타

1) 미국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보유·운행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개별소비세를, 보유단계에서는 도로사용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저연비 자동차의 구입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유류과소비세(Gas Guzzler Tax)를 부과한다. Gas Guzzler Tax는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연비가 낮은 승용차에 대해 연료 절약을 장려할 목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정한 연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이다. 이는 제작사의 최저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연비가 12.5마일/갤런 미만일 경우, 최고 7,700달러의

세금이 부과한다. 또한 주(州) 또는 지방정부의 경우 취득단계에서는 일반판매세를,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 및 일반판매세를 부과한다.

〈표 13〉 유류과소비세(Gas Guzzler Tax) 세율 (2009)

연비(마일/갤런)	세율(달러)	연비(마일/갤런)	세율(달러)
22.5 이상	0	16.5 이상 17.5 미만	3,000
21.5 이상 22.5 미만	1,000	15.5 이상 16.5 미만	3,700
20.5 이상 21.5 미만	1,300	14.5 이상 15.5 미만	4,500
19.5 이상 20.5 미만	1,700	13.5 이상 14.5 미만	5,400
18.5 이상 19.5 미만	2,100	12.5 이상 13.5 미만	6,400
17.5 이상 18.5 미만	2,600	12.5 미만	7,700

일찍이 미국은 ‘에너지정책 및 보전법’에 근거하여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신규 생산되는 승용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방식인 기업평균 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프로그램을 1970년대 중반에 도입했다. 하지만 30년 이상 유지되어온 이 제도는 2007년 12월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의 통과로 인해, 자동차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온 기업평균 연비기준에 차량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35mpg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오바마대통령의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에 강한 의지 표명에 따라 2009년 5월 19일에 ‘연비기준 상향조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새로운 연비기준을 발표하여, 2016년에 35.5mpg(15.1km/ℓ)로 상향 규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0년 4월 1일에 미국 환경청(EPA)과 교통부(DOT)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차와 소형 트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연비를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2년 생산차량부터 자동차 생산업체 차량 모델 전체의 연비를 매년 약 5%씩 향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5%씩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연비기준을 강화하여 2016년 차량모델부터는 34.1mpg(14.5km/ℓ)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비 및 온실가스의 동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과 교통부(DOT)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차와 소형 트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연비를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자동차세제와 국토교통성의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상호 연계하여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거나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표 14〉 미국의 자동차세제 현황

단계	세목		과세주체	과세대상
취득 단계	타이어에 대한 제조업자세 <sup>1)</sup>		연방정부	전부 또는 일부가 고무로 만들어진 도로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중형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소매세 <sup>1)</sup>		연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총중량 33,000파운드 초과 트럭</li> <li>차량총중량 26,000파운드 초과 트레일러</li> <li>차량총중량 19,500파운드 초과 트랙터</li> </ul>
	일반판매세		주 또는 지방정부	소매단계에서 자동차의 구입
	유류과소비세 (Gas Guzzler Tax) <sup>1)</sup>		연방정부	연비가 22.5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도로용 휘발유 또는 경유 사륜차
보유 단계	재산세 <sup>2)</sup>		주 또는 지방정부	자동차의 가치
	도로사용세		연방정부	중량이 55,000파운드 이상인 도로용 자동차
운영 단계	연방 유류세	제조업자세 <sup>3)</sup>	연방정부	등유·경유(혼합물 포함)·휘발유(혼합물 및 휘발유 첨가제 포함)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류
		소매세 <sup>4)</sup>	연방정부	특수연료, 대체연료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류가 아닌 것으로 제조업자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
	지방정부 유류세		주 또는 지방정부	휘발유, 경유, 가솔, 프로판, LNG, CNG, 에탄올, 메탄올, E-85, M-85, A55, 바이오디젤 등5)
	일반판매세		주 또는 지방정부	소매단계에서 유류의 구입

주: 1) 개별소비세  
 2) 20개 주에서는 자동차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며, 16개 주는 재산세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3) 정제공장이나 비축 터미널에서 반출 또는 수입할 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과세  
 4) 물품 구입 시 소비자 또는 판매자에게 과세  
 5) 각 주별로 과세대상 유류의 범위가 다름.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9)

2) 일본

일본에서는 자동차세제와 국토교통성의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상호 연계하여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거나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2004년도에 세제개편에서는 2004~2005년의 2년간 자동차세의 그린화 및 자동차취득세의 특별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1~2005년도에 신차 신규등록 시점으로부터 11년을 초과한 경유차(휘발유차·LPG차는 13년을 초과한 차)는 자동차세를 10% 증과세(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됨)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동차 NOx·PM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질소산화물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기준적합차로 대

체하는 경우에 자동차취득세의 세율을 추가로 경감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표 15〉 일본의 자동차세 그린화 내역 (2004~2005년)

	신☆☆☆차(저배출가스차) (2005년 배출가스기준 50% 달성)	신☆☆☆☆차(저배출가스차) (2005년 배출가스기준 75% 달성)
2010년도 연비기준 달성차	-	자동차세 25% 감면, 자동차취득세 20만엔 공제
2010년도 연비기준 +5% 달성차	자동차세 25% 감면, 자동차취득세 20만엔 공제	자동차세 50% 감면, 자동차취득세 30만엔 공제

주: 1)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는 자동차세 50% 감면.  
 2) 2004년 및 2005년중에 신차 신규등록된 경우에는 각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에 자동차세를 감면  
 3)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메탄올자동차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을 2.7% 경감, 하이브리드자동차(버스, 트럭)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을 2.7% 경감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승용차)는 자동차 취득세 세율을 2.2% 경감.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2008년 세계개정에서는 2년간 (2008~2009년)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한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취득세의 1%를 경감해주는 특례조치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6년 4월부터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혜택을 개정하여, 2006~2007년 2년간 자동차세의 그린화 및 자동차 취득세의 특례조치대상이 되는 저배출가스차 중 연비기준 +20% 달성차 또는 연비기준 10% 달성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하였다. 이때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및 메탄올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50%를 감면하고 자동차취득세도 경감하였다.

그리고 2007년 세계개정에서 저공해차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경감조치를 연장하였다.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버스, 트럭)에 대한 자동차취득세를 연장한 반면, 하이브리드승용차는 기존에 2.2% 경감하던 것을 2008년 이후 1.8%로 축소하였다. 또한 저공해차량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는 2년 더 연장하였다.

2008년 세계개정에서는 2년간 (2008~2009년)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한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취득세의 1%를 경감해주는 자동차취득세의 특례조치를 신설하였다. 다만,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0.5%로 축소하여 경감하고 11년 이상 된 경유차(휘발유, LPG는 13년)는 자동차세를 10% 중과세한다. 버스·트럭에 CNG 도입을 위해 2008년도 예산액 2,233백만 엔을 배정하고 신규 CNG차량 구입시 국가와 지자체가 통상 50%를 보조하며, 운행차량의 개조시에는 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한다.

영국이 CO<sub>2</sub>기준으로 자동차세제 개혁을 단행한 주된 목적은 환경친화적이고 연료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표 16〉 일본의 친환경차 세제혜택(휘발유자동차): 연비+배출가스 기준

	2005년 배출가스기준 75% 저감차 (신☆☆☆☆저배출가스차)
2010년 연비기준 +10% 달성차	자동차세 : 25% 경감 자동차취득세 : 15만엔 공제
2010년 연비기준 +20% 달성차	자동차세 : 50% 경감 자동차취득세 : 30만엔 공제

주: 1) 경자동차는 자동차취득세 경감조치만 있음.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표 17〉 일본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체연료차): 배출가스 기준

	2005년 배출가스기준 75% 저감차 (신☆☆☆☆저배출가스차)
하이브리드차(승용차)	자동차취득세 : 2.2% 경감
하이브리드차(상용차) <sup>1)</sup>	자동차취득세 : 2.7% 경감
전기자동차(연료전지차 포함) CNG차, 메탄올차	자동차세 : 50% 경감 자동차취득세 : 2.7%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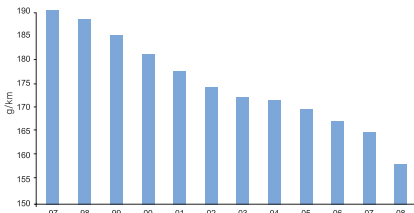
주: 1) 버스, 트럭을 말함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 2. 외국의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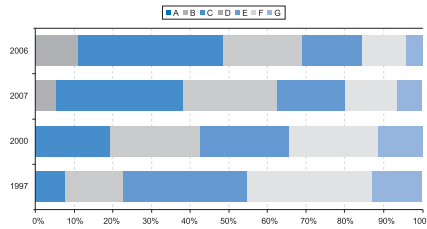
영국이 CO<sub>2</sub>기준으로 자동차세제 개혁을 단행한 주된 목적은 환경친화적이고 연료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세제의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CO<sub>2</sub>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규 차량의 CO<sub>2</sub> 배출량이 점차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도 감소하였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차의 평균 CO<sub>2</sub> 배출량이 2008년에 1997년의 189.8g/km에 비해 16.8%가 감소한 158g/km에 이른다. 영국 에너지연구소(ERC)의 보고서(2008)에 의하면, 1997~2005년 신차의 평균 CO<sub>2</sub> 배출량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영국의 자동차세제 개편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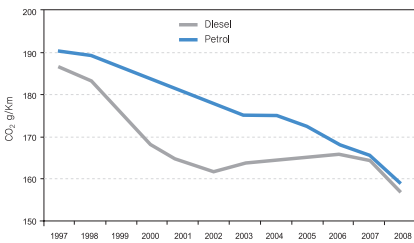
(a) UK 신차 평균 CO<sub>2</sub>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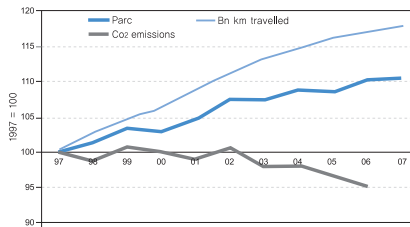
(b) VED 구간별 신차 분포



(c) 신규 휘발유차와 디젤차와 평균 CO<sub>2</sub> 배출량



(d) 수송부문 CO<sub>2</sub> 배출 총량 추이



자료: SMMT; DfT

영국 에너지연구소(ERC)의 보고서(2008)에 의하면, 1997~2005년 신차의 평균 CO<sub>2</sub> 배출량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신차의 95%가 기존 세율하에서 보다 연간 5~70 파운드 절감효과<sup>5)</sup>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 차량보다는 신차 구매가 증대되었고 연료 고효율성과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에 대한 선호가 증진되었다. 또한 대기오염 유발이 적은 연료와 기술차량이 확대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자동차 생산업자와 공업협회(SMMT) 등 관련 기관들이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기술개발 등의 시간적인 요구에 대해, 당시 정부는 시행시기를 2000년 9월에서 2001년 3월로 연기한 것이다. 동시에 신규 세제에 대한 홍보와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따른 환경 및 금융혜택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정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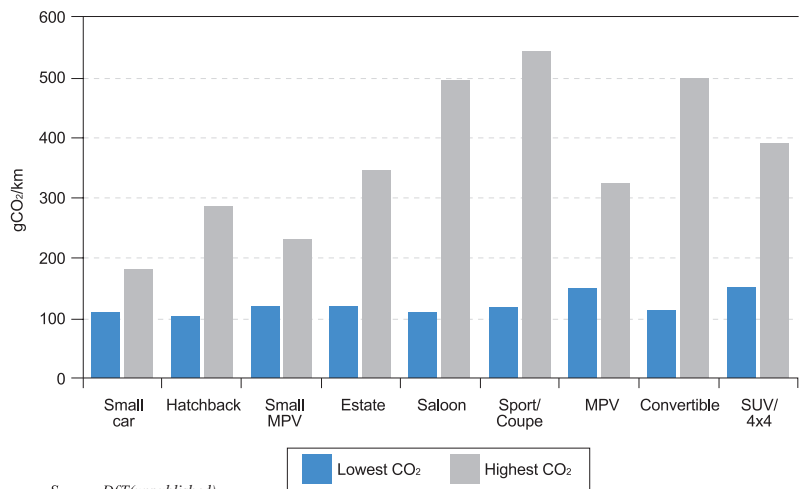
한편 2010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영국의 자동차세는 디젤, 휘발유보다 대체 연료의 자동차세 부담이 더 낮아서, 신차 구입시 환경요소를 더욱 고려한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차 구입예정자는 자동차등록청(Vehicle Certification Agency) 웹사이트에서 신차의 CO<sub>2</sub> 배출량 및

5) Ford Focus · Fiesta모델(40파운드), Vauxhall Astra · Rover 400(20파운드)

한편 2010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영국의 자동차세는 디젤, 휘발유보다 대체연료의 자동차세 부담이 더 낮아서, 신차 구입시 환경요소를 더욱 고려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연료소비량과 해당 차량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또한 King Review(2007)에 의하면, 영국에서 자동차의 동일한 차급별로 최저 CO<sub>2</sub> 배출량 차량을 선택할 경우, 전체 평균 CO<sub>2</sub> 배출량이 25% 정도 감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차급별 평균 CO<sub>2</sub> 배출량 격차의 범위 (영국, 2006년 기준)



Source: DfT(unpublished)

#### IV.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정책과제와 시사점

EU회원국들은 CO<sub>2</sub> 배출량과 연료 효율성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 및 구매단계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친환경차 개발 및 수요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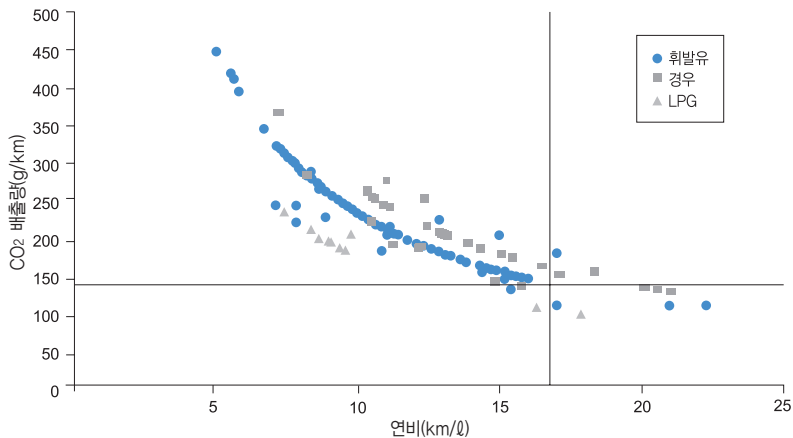
국가별 자동차 관련 세제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연비 기준과 연료형태에 따라 세액을 차등적용중이나, 대부분 EU 국가는 CO<sub>2</sub> 배출량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나,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CO<sub>2</sub> 배출량(연비)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세액(세율)을 차등 설정하는 방식과 둘째, 배기량 기준에 추가하여 CO<sub>2</sub> 배출량(연비)에 따라 자동차 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덴마크, 영국, 프랑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와 네덜란드 등은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자동차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에너지소비 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이 2008년 3월에 개정되어,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비는 1989년 4월부터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측정방법을 변경하여 시행중이다. 그리고 CO<sub>2</sub> 배출량은 2005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여 2008년 8월부터 연비·등급 라벨에 병행하여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연비(km/l)는 정해진 양의 연료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하며, 주로 1리터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km를 단위로 사용한다. 이는 연료소비의 에너지효율성을 논의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로서 숫자가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CO<sub>2</sub> 배출량(g/km)이란 1km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CO<sub>2</sub>의 양(g)으로서 자동차의 환경 효율성을 의미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동차의 CO<sub>2</sub> 배출량이란 1km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CO<sub>2</sub>의 양(g)으로서 자동차의 환경 효율성을 의미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 자동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2009년 신규 등록 차량의 CO<sub>2</sub> 배출량과 연비의 상관관계를 차량연료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 국가 환경목표치로 설정된 CO<sub>2</sub> 배출량 140g/km, 연비 17km/l의 기준 축으로 좌표로 하여, 경유 차량은 휘발유 차량의 분포선보다 상단측에, LPG 차량은 하단측에 분포하여, 동일 연비의 경우 환경 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유종별 연비와 CO<sub>2</sub> 배출량의 상관관계 분포 (2009년)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과세기준으로 연비 또는 CO<sub>2</sub> 배출량을 도입하는 방안<sup>6)</sup>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는 단순히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가지는 도로이용, 교통혼잡, 소음, 대기오염에 대한 외부효과의 효과적 억제라는 정책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sup>6)</sup>.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의 기준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할 경우, 유류 과소비 억제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성 강화를 위해 연료의 환경 및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CO<sub>2</sub> 배출량이나 연비에 따라 차등과세 도입 등을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소득향상과 기술진보로 인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사치억제 과세기능은 점차로 약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비용(외부불경제)을 줄이기 위해 교정적(corrective) 물품세 기능이 점차로 부각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표 18〉 과세기준의 장·단점 비교 (연비와 CO<sub>2</sub> 배출량)

기준	장점	단점
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소비 절약을 주요 정책 목표</li> <li>자동차업체의 규제 순응이 용이</li> <li>CO<sub>2</sub> 배출량에 비해 자료 누적량이 풍부</li> <li>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연비 규제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료별 에너지소비효율만을 고려하여 각종 오염물질 배출의 특성의 감안이 부족</li> <li>근본적으로 연비를 통한 CO<sub>2</sub> 배출량 통제라는 간접 규제 방식으로 환경관리의 부분지표(partial index) 관리에 불과</li> <li>EU중심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확산 추세와는 거리가 있음</li> <li>연료별 오염물질 특성의 감안이 부족</li> <li>보통 에너지소비절약은 주요 목표로 설정하나, 이는 사적이득에 포함되어 소비자로서 하여금 오히려 주행거리를 높여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킬 우려(rebound effect) 존재</li> </ul>
CO <sub>2</sub>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sub>2</sub> 저감을 주요 정책 목표</li> <li>녹색성장 정책 구현 및 외부성 교정세적 개념에 근거한 직접적 수단</li> <li>생활소비재 등에 CO<sub>2</sub> 배출량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로서 향후 국민적 이해와 친환경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li> <li>많은 국가들이 CO<sub>2</sub> 배출량 기준의 세제를 적용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업계는 연비 규제에 보다 익숙</li> <li>도입 초기 연비에 비해 국민의 이해 곤란</li> <li>'08년 8월부터 표시, 기존 차량에 대한 누적 자료가 부족</li> </ul>

6) 가령, 현행의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누진적 성격은 조세의 형평성(소득 재분배) 기능과 에너지 절약 및 경형 및 중소형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과세기준으로 연비 또는 CO<sub>2</sub> 배출량을 도입하는 방안<sup>6)</sup>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CO<sub>2</sub>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비를 향상시켜야 하므로 CO<sub>2</sub> 저감 기술과 연비 향상 기술은 차이가 없으나, 과세 기준으로서 연비는 자동차 업계의

규제 순응이 용이하고, CO<sub>2</sub> 배출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구현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CO<sub>2</sub>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2008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대한 누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연비 기준은 유종별로 세율구간을 달리 설정해야 환경효과적이므로<sup>7)</sup> 세율체계가 복잡해지고, CO<sub>2</sub> 배출량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수단이며, 단기적으로 연비 기준 채택 후 추후 CO<sub>2</sub> 배출량으로의 변경은 잦은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조세행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표준을 연비나 CO<sub>2</sub> 배출량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차종별 과세 형평성 확보, 조세 역진성 최소화, 지방세수의 안정성 등을 위해 적절한 세율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sub>2</sub>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차(낮은 차)는 현재 세액보다 가중(경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비나 CO<sub>2</sub> 배출량 기준을 미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현행 대비 증가하여 교정과세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 목표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연차별 세액 구조의 조정도 필요하다. 즉 2015년까지 140g/km라는 CO<sub>2</sub> 배출량 규제의 국가 목표의 단계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술 향상을 감안하여 가령 2년 단위로 세액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수요측면에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CO<sub>2</sub> 배출량이 낮은 차량 구매자는 지속적인 세액 절감 혜택을 부여하고, CO<sub>2</sub> 배출량이 높은 차량 구매자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가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세제의 개편범위는 우선적으로 현행 배기량 기준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연비나 CO<sub>2</sub> 배출량 등 친환경세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8)</sup>. 화물차, 특수차 등 기타 차량들은 향후 측정 기술여건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세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친환경세제 개편시 환경기준에 따라 과세구간을 세분화할수록 고CO<sub>2</sub>배출(또는 저연비) 차량들의 세부담이 더욱 증가하므로, 세제 개편 초기에는 조세제도 복잡성과 행정비용, 일부 대형차량 세부담 급증, 한미 FTA 등 수입차 통상문제 등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 상한제 등을 적용하고 국가 환경목표의 최대 달성을 위한 과세구간의 세분화 정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KIP**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sub>2</sub>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차(낮은 차)는 현재 세액보다 가중(경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단일연비 기준으로 자동차세제를 설계하면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별 CO<sub>2</sub> 배출량의 차이를 세율체계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연비 기준 채택 시 연료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유종별로 세액을 달리 설정해야 효과적이다. 가령, 덴마크의 자동차세제의 경우, 연비기준 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던 유종별로 구분하여 휘발유와 디젤차량에 대해 차등과세하여 친환경세제적 특성을 보완하고 있다.

8) 전기자동차 등 기타승용차는 초기 시장 형성 지원, 운행 단계에서 CO<sub>2</sub> 배출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세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대체연료차 등 그린차의 보급 초기 단계에는 경차 수준의 세율로 과세하고, 향후 보급 확대 시에 새로운 효율에 따라 별도의 과세기준과 구간을 마련하여 차등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타 친환경자동차로 대체연료 차량(alternative fuel vehicle)은 해외사례와 같이 과세구간별로 기준연료차량 대비 일정액을 경감한 저세율 구조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자동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세제의  
 개편범위는 우선적으로  
 현행 배기량 기준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연비나  
 CO<sub>2</sub> 배출량 등 친환경세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8~2009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09.9.  
 김승래,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방안 :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  
 원, 2010. 3.  
 김승래 · 박상원, 『자동차 분야 세제개편 영향 분석 : 한미 FTA 통상 관련 세제  
 개편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승래 외,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  
 원, 2008.  
 이영희 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세제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수입자동차협회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kaida.co.kr>).  
 외교통상부, 『한미 자동차 통상현안』, 통상교섭본부, 2006.3.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kaida.co.kr>).  
 한국조세연구원, 『외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편동향 및 시사점』, 20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1998~2008 및 2009 내부자료

ACEA, Motor Vehicle Taxation in Europe, 2009.  
 Berno, S., “Program Design Features for Feebate Initiative: Survey of  
 Existing Feebate Program,” Tellus Insititute Memorandum, 2002  
 Fershtman et al., “Estimating the effect of tax reform in differentiated  
 product oligopolistic marke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99.  
 Parry et al., “The Incidence of Pollution Control Policies,” RFF, 2005 Per  
 Kageson, “The Impact of CO<sub>2</sub> Emissions Trading on the  
 European Transport Sector,” Vinnova Report VR 2001:17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www.fhwa.gov>).

〈부록 1〉 EU의 CO<sub>2</sub> 배출량·연료효율성 기준 자동차 세제 (2010. 4. 기준)

국가	자동차세제 내용
오스트리아	1. 연료소비세(A Fuel Consumption Tax: Normverbrauchsabsage): 자동차 등록시 부과 - 휘발유 차량: 구입가의 2% × (fuel consumption in litres - 3리터) - 디젤 차량: 구입가의 2% × (fuel consumption in litres - 2리터) 2. 정부장려금-추가부담금제도(BMS: Bonus-Malus system) - 120g/km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의 장려금 제공, 그러나 180g/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g당 €25 벌금 부과(2010년부터는 160g/km) - 대체연료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0 장려금 제공
벨기에	1. 세금인센티브: CO <sub>2</sub> 배출량 115g/km 이하의 차를 구매하는 고객 - 105g/km 이하 차량 구매: 구매가의 15%와 최대 €4,540 - 105g/km~115g/km 차량 구매: 구매가의 3%와 최대 €850 2.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Company Car Tax 3. 정보부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 월룬지역 적용) - 125g/km 이하 차량에 대해서 장려금 제공(99g/km 이하의 경우 최대 €1,000) - 155g/km 이상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벌금 부과(245g/km 이상의 경우 최대 €1,500)
사이프러스	1. 등록세: 실린더에 기준해 부과되며 CO <sub>2</sub>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 - 120g 미만: 30% 인하 - 250g 초과: 20%까지 인상 2. 자동차세: 실린더에 기준해 부과되며 CO <sub>2</sub> 배출량에 따라 인하 - 150g 미만: 15% 인하
덴마크	1. 연비에 근거한 연간운행세(Annual Circulation Tax) - 휘발유차: 리터당 최소 20km를 주행하는 차량의 520 덴마크크로네에서부터 4.5km를 주행하는 차량의 18,460덴마크크로네 - 디젤차: 리터당 최소 32.1km를 주행하는 차량의 160 덴마크크로네에서부터 5.1km를 주행하는 차량의 25,060덴마크크로네 2. 가격에 근거한 등록세 - 연료 1리터당 휘발유는 16km, 디젤은 18km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경우 초과 km당 4,000덴마크크로네를 공제 - 연료 1리터당 휘발유는 16km, 디젤은 18km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미만 km당 1,000덴마크크로네를 추가 부담
핀란드	1.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등록세 - 세율은 60g/km 이하 CO <sub>2</sub> 를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12.2%에서 360g/km 이상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48.8% 2. (차 무게에 따른) 연간운행세(Annual Circulation Tax) - 2011년부터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하여 연 €20에서 €605

〈부록 1〉의 계속

국가	자동차세제 내용
프랑스	1. 정보보조금-부담금(Bonus-Malus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5g/km 이하 신차 구매 시 premium 제공(최고 60g/km 이하 € 5,000)</li> <li>- 최소 10년 이상된 차량 폐차 시와 155g/km이하 신차 구매시 € 700의 'super-bonus' 지급, 단 2010년 7월 1일부터 500유로)</li> <li>- 155g/km 이상의 차량 구매 시 세금 부과(245g/km 이상 배출 시 매년 160유로씩 최고 € 2,600)</li> <li>- 매 2년마다 부과 기준은 5g/km씩 강화</li> </ul> 2.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s)에 부과되는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sub>2</sub> 배출량 포함하는 차량의 마력(horsepower)에 부과</li> <li>- 세율은 지역에 따라 € 27~€ 46</li> </ul> 3.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Company Car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g/km 이하 : € 2/g</li> <li>- 100g/km 이상 120g/km 이하: € 4/g</li> <li>- 120g/km 이상 140g/km 이하: € 5/g</li> <li>- 140g/km 이상 160g/km 이하: € 10/g</li> <li>- 160g/km 이상 200g/km 이하: € 15/g</li> <li>- 200g/km 이상 250g/km 이하: € 17/g</li> <li>- 250g/km 이상 : € 19/g</li> </ul>
독일	연방정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연간 통행세(현재 실린더 기준)를 CO <sub>2</sub>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과세: 휘발유는 100cc당 € 2, 디젤은 100cc당 € 9.5</li> <li>- CO<sub>2</sub> 배출량 기준과세 € 2/ g/km</li> </ul> 단, CO <sub>2</sub> 배출량 120g/km 미만의 경우 면제(2012~13에는 110g/km, 이후 95g/km)
아일랜드	1.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g/km 이하 14%에서 225g/km 이상 36% 세율이 적용</li> <li>- 하이브리드나 대체연료는 추가적으로 € 2,500 세금 면제</li> </ul> 2.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연간운행세(Annual Circulation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g/km까지 € 104에서 225g/km 이상 € 2,100</li> </ul>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sub>2</sub> 배출량이 130g/km 이하 디젤차량 및 140g/km 이하 기타연료 차량의 경우 최대 € 1,500 인센티브 지급</li> <li>- CNG, LPG, 전기, 수소 등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더 높은 인센티브 지급</li> </ul>
룩셈부르크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Annual Circulation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율은 디젤의 경우 g/km CO<sub>2</sub> 배출량×0.9,</li> <li>기타 연료의 경우 g/km CO<sub>2</sub> 배출량×0.6</li> <li>- 단 90g/km 이하인 경우×0.5이며, 10g/km당 0.1씩 증가</li> </ul> 신차 구매시 CO <sub>2</sub> 배출량 120g/km이하 차량 € 2,500, 120g/km~150g/km이하 차량 € 1,500 인센티브 지급
말타	1.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등록세 2. (CO <sub>2</sub> 과 차령에 따른) 연간운행세(Annual Circulation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5년 동안 CO<sub>2</sub> 배출량에만 근거하여 과세(100g/km까지 € 100에서 150~180g/km 이상 € 180)</li> </ul>

## 〈부록 1〉의 계속

국가	자동차세제 내용
네덜란드	1. 가격에 근거한 등록세 -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10년 7월1일까지 € 6,400까지 장려금 지급 - 95g/km까지 CO <sub>2</sub> 배출하는 디젤 차량과 110g/km 이상 배출하는 기타 차량은 등록세 면제
포르투갈	1. 엔진용량과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등록세 - 115g/km 이하 배출하는 휘발유 차량 = [(€3.57×g/km) - 335.58] - 95g/km 이하 배출하는 디젤 차량 = [(€17.18×g/km) - 1364.61] - 195g/km 이하 배출하는 휘발유 차량 = [(€127.03×g/km) - 20,661.74] - 160g/km 이상 배출하는 디젤 차량 = [(€166.53×g/km) - 20761.61] 2. 신차 구매시 CO <sub>2</sub> 배출량 130g/km 이하 €1,000 인센티브 지급
루마니아	1.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등록세
스페인	1.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한 등록세 - 세율은 (120g/km 이하 배출하는 차량) 0%~(200g/km 이상 배출하는 차량) 14.75% 2. 신차 구매시 CO <sub>2</sub> 배출량 149g/km 이하 차량 2,000 유로 인센티브 제공
스웨덴	1. (Euro 4 기준 차량) 연간운행세(Annual Circulation Tax) - 100g/km 이상=360 스웨덴 크로노+15 스웨덴 크로노/추가 배출 g - 2008년 처음으로 등록되는 디젤 차량은 세금이 휘발유차의 3.15배, 기타 디젤 차량은 3.3배 - 기타 연료 차량: 100g/km 이상의 경우 10 스웨덴 크로노/g 2. 친환경차량 구매 시 10,000 스웨덴 크로노 premium - 120g/km 이하의 휘발유/디젤/하이브리드 차량 - 대체 연료 차량/FFV
영국	1. 자동차세 : 연간 자동차세는 CO <sub>2</sub> 배출량에 기초하여 부과됨 100g 이하 : 0%

자료: ACEA, Overview of CO<sub>2</sub> based Motor Vehicle Taxes in the EU, 2010,4,20

〈부록 2〉 EU국가들의 자동차 관련 세제

	취득단계		보유단계	운영단계 <sup>1)</sup>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발유(유로)	경유(유로)
오스트리아	20	연료소비세+CO <sub>2</sub> 에 기초한 Bonus Malus 제도	kilowatt	442	347
벨기에	21	배기량, CO <sub>2</sub>	배기량	592	318
불가리아	20	없음	kilowatt	350	307
사이프러스	15	배기량, CO <sub>2</sub>	배기량, CO <sub>2</sub>	299	245
체코	19	없음	-	483	406
독일	19	없음	배기량, 배기가스, CO <sub>2</sub> (2009. 7~)	655	470
덴마크	25	없음	연료소비, 무게	561	382
에스토니아	18	없음	-	359	330
스페인	16	CO <sub>2</sub> 배출량에 근거하여 120g/km 0%, 200g/km 14.75%	마력	360	302
핀란드	22	가격+CO <sub>2</sub> 배출량 세율= 4.88+(0.122×CO <sub>2</sub> ): 최소 12.2%, 최대 48.8%	Time fuel, 무게	627	364
프랑스	19.6	CO <sub>2</sub> 배출량: 161~165 g/km 200유로, 250g/km 이상 2,600유로	-	607	428
그리스	19	배기량, CO <sub>2</sub> : 5~50%	배기량	359	302
헝가리	25	배출량	무게	448	368
아일랜드	21.5	CO <sub>2</sub> 배출량, 최대 36%	CO <sub>2</sub>	509	368
이탈리아	20	IPT, PRA, MCTC	kilowatt, 배기가스	564	423
라비타	21	373유로	무게	379	330
말타	18	가격+CO <sub>2</sub> 배출량, 차량길이	배기량	459	352
네덜란드	19	가격+CO <sub>2</sub> 배출량	무게, province	701	413
폴란드	22	배기량(3.1~18.6%)	-	488	339
포르투갈	20	배기량, CO <sub>2</sub>	배기량, CO <sub>2</sub>	583	364
루마니아	19	배기량, CO <sub>2</sub>	배기량	336	284
슬로베니아	20	없음	-	403	383
영국	15	없음	CO <sub>2</sub> , 배기량	661	661

주: 1) 연료(10000당)에 부과되는 소비세  
 자료: ACEA(2009)

# 주요국 국가채무관리 형태 및 DMO 도입 · 운영의 효과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hsong@kipf.re.kr)

## I. 서론

일반적으로 저량(stock)변수인 국가채무의 증가는 유량변수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한다. 즉, 세입이 세출보다 적게 되는 경우, 국고채 발행 및 판매, 또는 해외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정부는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정적자의 보전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차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나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전기로부터 물려받은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그리고 정부의 금융활동 등도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채무 증가를 재정적자 보전에 따른 채무 증가와 적자보전의 채무 증가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도입 · 운용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청(DMO)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채무관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채무 총량 수준에 대한 관리와 국채발행 전략 수립 등 미시적인 운용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 II. 국가채무관리 현황

재정정책에 따른 적자규모에 의해 국가채무 총량이 주로 결정되지만, 그와 동시에 적자규모만큼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기발생한 채무의 상환 및 그에 대한 이자지급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와 같은 운용 측면의 미시적인 관리도 국가채무관리에 포함된다. 즉, 국가채무관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채무 총량 수준에 대한 관리와 국채발행 전략 수립 등 미시

영국은 1998년에  
국가채무관리청을  
도입하고 운용함으로써  
국가채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게  
하고 있다.

적인 운용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적인 채무 수준의 총량 관리는 기획재정부 내 재정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적절한 필요자금 확보 및 만기 조정을 통한 위험 관리 등 미시적인 운용은 국고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상, 본고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 현황을 소개한 후에 OECD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가.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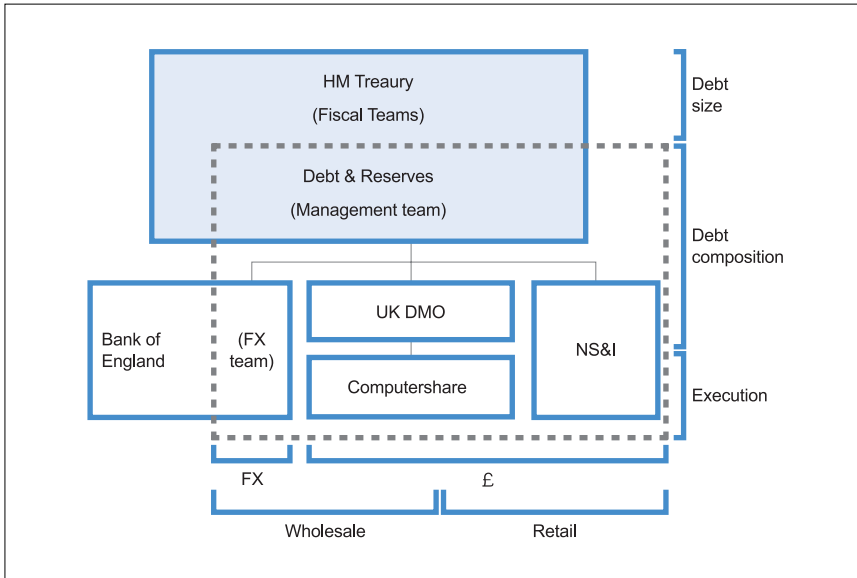
영국 국가채무관리정책의 목표는 통화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험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영국은 1998년에 국가채무관리청(DMO, Debt Management Office)을 도입하고 운용함으로써 국가채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게 하고 있다. 재무부가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인 국가채무관리 운영은 국가채무관리청(DMO)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HM Treasury) 내에서 Fiscal Team들은 국가채무 및 외환보유고의 규모 관리 등 전반적인 총량 수준에 대한 정책적 결정 및 그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 한편, 재무부 내의 Debt and Reserves Management (DRM) Team은 채무와 외환보유고 운용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Debt and Reserves Management (DRM) Team의 실질적인 업무는 각각 영란은행의 외환보유고팀, 국가채무관리청(DMO) 및 국민저축·투자청(NS&I)에 의해 수행된다. 특히, 국가채무관리청은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국채의 발행 및 국채 관련 다양한 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1)</sup>.

DMO는 통화정책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 이전에는 영란은행에 위탁되었던 국채발행 등의 기능을 DMO로 이전한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채무관리와 통화정책 간 이해상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란은행에 통화·금융정책에 관한 독립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O는 재무부의 공모절차에 의해 임명되는 책임자 아래 운영이사회의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DMO는 위험을 관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차환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러한 결과를 채무 포트폴리오에 반영한다.

1) In institutional terms, the DMO is legally and constitutionally part of HM Treasury (HMT), but as an executive agency, it operates at arm's length from Ministers. The Chancellor of the Exchequer determines the policy and financial framework within which the DMO operates, but delegates to the Chief Executive operational decisions on debt and cash management, and day-to-day management of the office.  
(출처: [http://www.dmo.gov.uk/index.aspx?page=About/About\\_DMO](http://www.dmo.gov.uk/index.aspx?page=About/About_DMO))

[그림 1] 영국의 국가채무관리 조직



주: 점선 내부에 속하는 기관이 영국의 채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임  
 자료: 영국 감사원, The UK Debt Management Office – Borrowing on behalf of Government, (2007, 1)

미국의 경우, 재무부 내에서 정책부서와 운영부서로 나누어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 나. 미국

미국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는 장기에 걸쳐 최소비용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재무부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한 패턴으로 채무 발행, 입찰절차 개선방안 모색,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유지 등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 내에서 정책부서와 운영부서로 나누어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국채의 발행 등에 관한 정책 입안은 재무부 내 Office of Domestic Finance의 하위 부서인 OFM(Office of Financial Markets)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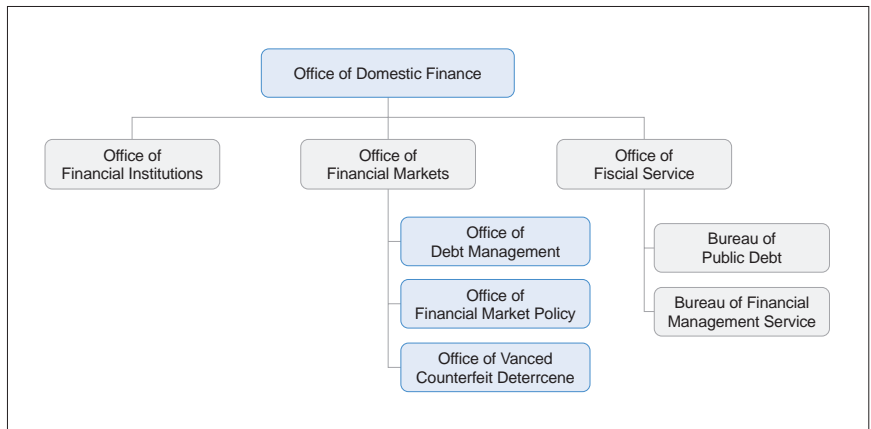
- ① 필요한 자금조달 내역 결정 및 발행규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발행채권의 종류와 판매기법에 관한 분석을 수행
- ②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자금조달 및 국가채무관리정책을 입안
- ③ 정기적으로 현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의 조건과 재무부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프랑스는 2001년에 경제산업고용부의 부서 형태로서 Agence France Trésor(AFT)를 설립하여 국가채무관리 및 국고금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한편, 운용업무라고 볼 수 있는 국채 입찰 및 국고자금 유통 관련 업무는 Office of Fiscal Service 내의 BPD(Bureau of Public Debt)와 FMS(Bureau of Financial Management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BPD는 정부채권의 발행과 상환 및 이자지급 업무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및 공공채무의 회계를 담당
- ② FMS는 국고관리를 담당하며 재무부에 보고의무를 수행

[그림 2] 미국의 국가채무관리 조직체계



자료: 재무부 홈페이지(Office of Domestic Finance 조직도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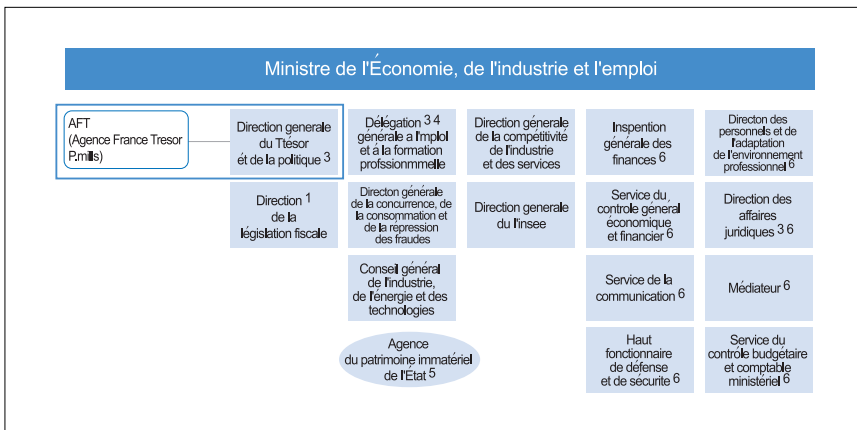
### 다. 프랑스

2) Agence France Trésor (AFT) is tasked with handling public debt and treasury management. It was created by a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today Ministry of the Economy, Industry and Employment) order on 8 February 2001 in the form of a department with national scope, reporting to the Head of the Treasury Directorate (today Head of the Treasury and Economic Policy Directorate) and managed by a Chief Executive(출처: AFT 홈페이지)

프랑스는 2001년에 경제산업고용부의 부서 형태로서 Agence France Trésor(AFT)를 설립하여 국가채무관리 및 국고금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AFT는 국가채무 및 국고관리 근대화를 위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2001년 2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경제산업고용부의 국고 및 경제정책국장이 AFT의 Chairman이고 임명된 Chief Executive가 AFT를 관리 운영한다<sup>2)</sup>. AFT는 전략위원회와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략위원회는 AFT가 채무관리원칙을 지키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AFT의 Chief Executive를 보좌한다. 전략위원회는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함께 국채 발행정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제언을 하며 일년에 두 번 AFT의 Chairman과 회

의를 개최한다. 전략위원회는 프랑스 중앙은행의 총재를 Chairman으로 하고 금융부문의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부처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7개의 부서는 각각 Cash Management, Debt Management, Back Office/Risk Management, Macroeconomics, Operational Research,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3] 프랑스 국가채무관리 조직



자료: 경제산업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참고하여 재구성

프랑스의 국가채무관리의 중기 목표는 가장 안전한 조건하에서 납세자들의 채무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Agence France Trésor(AFT)의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참가자들과 가능한 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되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국가채무관리의 중기 목표는 가장 안전한 조건하에서 납세자들의 채무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Agence France Trésor(AFT)의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참가자들과 가능한 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되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AFT의 현금관리의 목표는 프랑스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예금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일평균 국고계정 잔고를 1억유로로 유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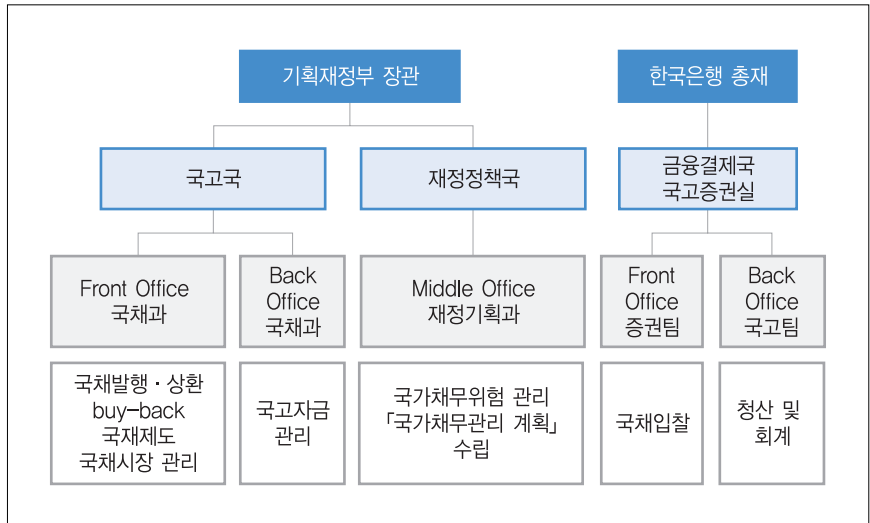
### 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 및 관리한다. 기획재정부의 국고국과 재정정책국에서 국가채무관리를 담당하고 국채사무의 처리 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하고 있다. 국고채의 발행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보

기획재정부의 국고국과 재정정책국에서 국가채무관리를 담당하고 국채사무의 처리 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하고 있다.

되는 발행한도 내에서 세부 발행계획에 따라 발행된다.

[그림 4]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 조직



자료: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2008. 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는 다음 세 가지이다.

-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유지
- ② 정부의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중장기 차입비용 최소화
- ③ 국채시장의 효율적 발전 도모

정부는 재정자금의 조달·상환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채무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구성·조정하는 재무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재무위험에 대한 분석과 재무위험 관리계획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재무위험에 대한 분석은 국가채무 포트폴리오 규모 및 구성과 이자비용, 평균만기 및 만기도래 현황 등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재무위험 관리계획은 국고채 만기 분산, 국고채 투자상품 다양화 및 수요기반 확충, 국고채 시장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

#### 마.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관리 형태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관리를 관리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채무전담조직을 두는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재무부가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DMO와 같은 채무관리전담 조직이 실질적으로 국가채무관리를 담당하는 경우이다. 재무부는 기본적인 차입수요와 정책지침을 시달하기는 하나 세부 운영은 국가채무관리기구(Debt Management Office; DMO)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등이 이에 속한다.

더욱 빈번한 형태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주도적으로 직접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 경우 재무부 내에서 국채발행을 맡는 부서와 국채위험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벨기에,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미국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비교적 상호 긴밀한 공조하에 국가채무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다. 이 경우 재무부는 차입 및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나 실질적인 채무관리는 중앙은행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다.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관리를 관리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OECD 30개 국가의 채무관리 현황

	DMO도입 및 운용	재무부 주도	재무부+중앙은행	비 고
호주*	○			- 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AOFM), 99년 7월 1일 설립
오스트리아	○			- Austrian Federal Financing Agency (AFFA), '92년도에 설립
벨기에		○		- Treasury내에 3개의 부서로 구성된 "Financing of the State and Financial Markets"에서 관리
캐나다*			○	-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국가채무를 관리
체코		○		- 재무부에서 담당
덴마크*			○	- '91년 이후 중앙은행으로 위임되어 국가채무를 관리
핀란드 <sup>1)</sup>	○			- MOF의 administrative branch인 the State Treasury에서 관리
프랑스*		○		- 경제산업고용부의 부서형태인 AFT에서 담당, '01년 2월 출범
독일	○			- German Finance Agency (GmbH), '00년 2월 설립
그리스		○		-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의 직접 감독하에 Public Debt Management Agency에서 관리
헝가리		○		- Government Debt Management Agency Pte. Ltd. is 100% state owned.
아이슬란드 <sup>2)</sup>			○	- '90년에 설립된 National debt management agency를 '07년에 폐지하고 국가채무관리 업무를 중앙은행에 이관
아일랜드 <sup>3)</sup>	○			- the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NTMA)에서 관리하며 1990년 12월에 설립
이탈리아		○		- Ministry of the Economy and Finance에서 관리
일본*		○		- 재무성에서 담당
한국*		○		- 기획재정부에서 담당
룩셈부르크		○		- Minister of the Treasury and Budget의 책임하에 the State Treasury에서 담당
멕시코		○		-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에서 담당
네덜란드		○		- Ministry of Finance 의 한 부서인 The Dutch State Treasury Agency에서 담당
뉴질랜드		○		- 국가채무관리는 재무부의 권한이며 뉴질랜드 Treasury내의 운영단위인 NZDMO에서 관리
노르웨이*			○	- 재무부가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관리
폴란드		○		- MOF 내의 Management of the State Treasury debt에서 관리
포르투갈	○			- Portuguese Debt Management Office (IGCP), '96년 12월 설립

주: 1. \* 이외의 국가는 OECD의 *Central Government Debt Yearbook 200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핀란드 재무부는 국가 차입 및 채무관리서비스를 1998년도에 the State Treasury로 이관(1998 State borrowing and debt servicing are handed over to the State Treasury.)  
 2) 아이슬란드는 2007년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NDMA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중앙은행에 이관  
 3) 1990년 12월 이전에는 아일랜드 국가채무를 재무부에서 원칙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은행의 책임하에 단기증권(short term paper)을 발행

자료: OECD, *Central Government Debt Yearbook 2009*

### III.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해 및 DMO 도입 · 운용의 효과

본장에서는 국가채무의 증가를 재정적자와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로 분해하여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sup>3)</sup>.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채무동학(debt dynamics)은 국가채무스톡에 관하여 가장 단순하게 설명한 등식이다.  $B$ ,  $R$ ,  $G$ ,  $T$  및  $Y$ 를 각각 국가채무, 이자율, 정부지출, 정부수입 및 경상GDP라고 하면 채무동학  $B_t = B_{t-1} + R_t B_{t-1} + (G_t - T_t)$ 라는 등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국가채무가 과거 발생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현재의 적자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경상성장률  $g$  및 경상GDP 대비 채무 비중인  $b$ 와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인  $def \equiv g - t$ 를 이용하면 채무동학은 다음과 같은 표현된다. 참고로 본고에서의 소문자는 대GDP의 비중을 의미한다.

$$\Delta b_t = \frac{(R_t - g_t)}{(1 + g_t)} b_{t-1} + def_t \quad (1)$$

상술하였듯이 채무동학은 적자재정 규모와 과거 발생한 채무스톡에 대한 이자지급만을 현재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성장률을 감안한 이자지급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채무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재정적자 이외에 여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금융활동이 그에 해당된다. 예컨대,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이 채무상환이나 정부지출에 쓰이지 않고 정부계정에 예치되어 있다면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술한 채무동학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기존 채무상환에 쓰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재정적자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채무를 본고에서는 적자보전의 국가채무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금융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국가채무라 할 수 있겠다. 편의상  $t$ 기의 적자보전의 국가채무를  $b_t^{nd}$ 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 기의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분( $\Delta b_t^{nd}$ )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국가채무의 증가는 적자보전의 국가채무의 증가와 재정적자 규모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채무동학은 적자재정 규모와 과거 발생한 채무스톡에 대한 이자지급만을 현재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본고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모두 일 반정부 기준이다.

실제로 국가채무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재정적자 이외에 여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금융활동이 그에 해당된다.

$$\Delta b_t^{nd} = \Delta b_t - \text{def}_t \quad (2)$$

OECD 국가별 국가채무의 증가를 비적자성 국가채무 증가분과 재정적자로 분해하여 추이를 본 결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어떤 요인이 주도하느냐에 관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는 평균 0.52%p이며 이 가운데 재정적자에 의해 증가하는 부분은 평균 0.86%p이며 적자보전의 채무는 평균적으로 0.33%p 감소하여 전체 국가채무 증가를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국가채무가 연평균 1%p 이상 증가하는 국가들로는 체코(연평균 1.27%p), 독일(1.55%p), 그리스(1.53%p), 헝가리(2.87%p), 아이슬란드(4.31%p), 아일랜드(1.37%p), 일본(5.01%p), 한국(1.32%p), 노르웨이(2.94%p), 폴란드(1.11%p), 포르투갈(2.13%p), 영국(2.36%p), 미국(1.07%p)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연평균 2%p를 초과할 정도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른 국가로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을 꼽을 수 있겠다.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연평균 1%p를 초과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1.79%p), 벨기에(1.03%p), 체코(3.84%p), 프랑스(2.82%p), 독일(2.09%p), 그리스(5.92%p), 헝가리(5.98%p), 아이슬란드(1.68%p), 이탈리아(3.15%p), 일본(5.51%p), 폴란드(4.47%p), 포르투갈(3.85%p), 슬로바키아(4.84%p), 스페인(1.15%p), 영국(3.15%p), 미국(3.04%p)이 있다. 이 가운데 연평균 2%p 이상의 채무증가를 유도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적자보전의 국가채무는 OECD국가들 평균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핀란드(2.39%p), 아이슬란드(2.63%p), 한국(5.02%p), 룩셈부르크(2.67%p), 뉴질랜드(2.27%p), 노르웨이(16.56%p)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 2000년 이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 재정적자 및 적자보전외 채무 증가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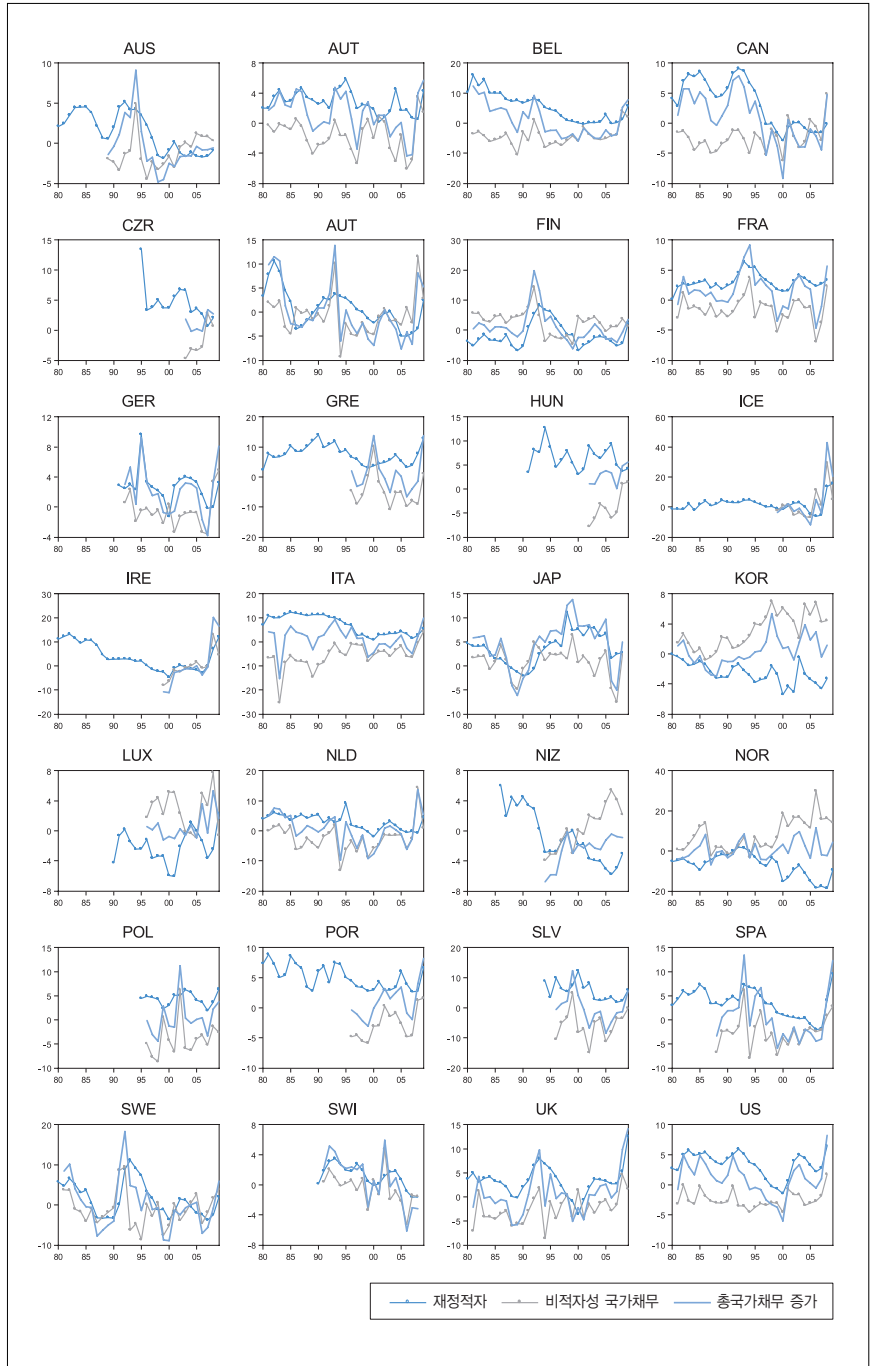
	총 국가채무증가	재정적자	적자보전외 채무증가
Australia*	-1.45	-1.19	-0.26
Austria*	0.07	1.79	-1.72
Belgium	-1.85	1.03	-2.89
Canada	-2.40	-1.01	-1.39
Czech Republic	1.27	3.84	-1.80
Denmark	-1.92	-2.08	0.17
Finland*	-1.06	-3.45	2.39
France	0.98	2.82	-1.83
Germany*	1.55	2.09	-0.54
Greece	1.53	5.92	-4.39
Hungary	2.87	5.98	-3.72
Iceland	4.31	1.68	2.63
Ireland*	1.37	0.70	0.67
Italy	-0.10	3.15	-3.26
Japan	5.01	5.51	-0.50
Korea	1.32	-3.71	5.02
Luxembourg	0.79	-1.87	2.67
Netherlands	-0.03	0.87	-0.90
New Zealand	-1.54	-3.81	2.27
Norway	2.94	-13.61	16.56
Poland	1.11	4.47	-3.36
Portugal*	2.13	3.85	-1.72
Slovak Republic*	-1.69	4.84	-6.54
Spain	-1.00	1.15	-2.15
Sweden*	-2.07	-1.22	-0.85
Switzerland	-0.88	0.15	-1.03
United Kingdom*	2.36	3.15	-0.79
United States	1.07	3.04	-1.98
평균(28개국)	0.52	0.86	-0.33
중간값(28개국)	0.89	1.41	-0.97
DMO운용국가들(9개국)평균	0.13	1.17	-1.04

주: 1. 음영표시는 1%p를 초과하는 경우를 나타냄  
 2. \* 국가는 DMO 도입 · 운용국가를 표시

OECD 국가별 국가채무의 증가를 비적자성 국가채무 증가분과 재정적자로 분해하여 추이를 본 결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어떤 요인이 주도하느냐에 관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평균 2%p 이상의  
채무증가를 유도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재정적자, 비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총국가채무 증가 추이



아래에서는 OECD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DMO가 국가채무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sup>4)</sup>. 재정적자의 규모는 재정정책 당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미시적인 국가채무운용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시적인 국가채무관리와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적자보전의 국가채무의 증가라 볼 수 있겠다. 적자보전의 국가채무가 주로 정부의 금융활동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그것은 금융시장 상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채무관리청(DMO)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의 방법은 OECD 국가들의 적자보전의 국가채무증가를 이전기간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가채무 수준, 환율변동, 금리변동,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로 설명하고자 한다. 전기(前期)의 국가채무수준은 금기(今期)의 비적자성 국가채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데, 이전의 높은 국가채무 수준은 비적자성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비슷한 논리로 금융성채무가 중심을 이루는 적자보전의 국가채무는 주요 금융변수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율변동 및 금리변동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변수로 경제성장률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으며, 국가별 더미변수와 연도별 더미변수를 넣어 국가별, 시기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채무관리청의 도입·운영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추정모형(specification)은  $y_{i,t} = \beta'x_{i,t} + c_i + \eta_t + \epsilon_{i,t}$ , 여기서  $y_{i,t}$ =비적자성 채무 증가, 설명변수는  $x_{i,t}$ =(전기 국가채무수준, 환율 상승, 금리 상승, 경제성장률)이다. 추정기간은 1981~2009년이고,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OECD국가 28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  $i$ 에서 시점  $t$ 에 국가채무관리청을 도입·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활용하였다.

고정효과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전기 국가채무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비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1% 유의 수준에서 의미 있게 추정되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비적자성 국가채무 증가가 줄어드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한편, 환율 상승 및 금리 상승에 대해서 통상적인 유의 수준에서 영(零)과 다르지 않은 추정결과가 나왔으나, 국가채무관리청(DMO)을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및 금리 상승이 확대될 때 적자보전의 국채증가가 완화되는 결과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게

적자보전의 국가채무가 주로 정부의 금융활동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그것은 금융시장 상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 특정 조직의 도입·운영이 국가채무관리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대략적이나마 그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기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적자보전의 국가채무의 증가에 있어서 국가채무관리청의 역할이 있었는가에 대한 간단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국가채무관리청이 도입·운영되는 경우, 금리 및 환율 상승이 확대될 때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는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DMO의 도입·운영이 제한적이거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나왔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가채무관리청(DMO)이 도입·운영되는 경우, 금리 및 환율 상승이 확대될 때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는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가채무관리청(DMO)의 운영이 정부의 금융활동이 주로 개입되어 있는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5)</sup>.

〈표 3〉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표본)

설명변수	추정값	표준오차	t-Statistic
전기국가채무 수준	-0.0676**	0.0158	-4.2902
전기국가채무 수준*DMO	-0.0301	0.0385	-0.7807
환율상승	-0.0068	0.0066	-1.0385
환율상승*DMO	-1.5288*	0.6782	-2.2542
금리증가	0.2826	0.3100	0.9113
금리증가*DMO	-0.9605*	0.4558	-2.1071
성장률	-0.6432**	0.1382	-4.6540
성장률*DMO	0.0002	0.1050	0.0017
DMO	0.5730	1.9255	0.2976
상수	5.0983**	1.0783	4.7280

$R^2=0.578$ , adjusted  $R^2=0.515$

관측치 수=491 (1981~2009)

주: 표준오차는 White의 이분산성을 고려한 분산을 이용

#### I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 형태와 국가채무의 증가 요인을 재정적자와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OECD국가들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는 0.52%p이고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0.86%p인데, 상대적으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헝가리(2.87%p), 아이슬란드(4.31%p), 일본(5.01%p), 노르웨이(2.94%p), 포르투갈(2.13%p), 영국(2.36%p)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재정적자가 심각한 국가로는 포르투갈 및 영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재정적자 자체의 수준이 높은 국가로는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2000년 이후 연평균 재

5) 보다 엄밀한 추정을 위해서는 내생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가장 대표적이고 흥미로운 내생성 문제는 DMO 도입·운영 데미변수가 내생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DMO 도입·운영 데미변수를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적자 규모는 GDP의 2%를 상회한다.

한편, 적자보전의 국가채무는 OECD국가들 평균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핀란드(2.39%p), 아이슬란드(2.63%p), 한국(5.02%p), 룩셈부르크(2.67%p), 뉴질랜드(2.27%p), 노르웨이(16.56%p)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보전의 국가채무는 이자지급 등을 고려한 국가채무의 포트폴리오 구성, 통화 및 저축(currency and deposits), 용자 등 정부의 다양한 금융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고, 국가별로 차별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화 및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자보전의 국가채무의 증가가 노르웨이에 이어 OECD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자보전의 국가채무가 재정적자에 기인한 국가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적자보전의 국가채무의 증가에 있어서 국가채무관리청(DMO)의 역할이 있었는가에 대한 간단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국가채무관리청(DMO)이 도입·운영되는 경우, 금리 및 환율 상승이 확대될 때 적자보전의 국가채무 증가는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DMO의 도입·운영이 제한적이거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의 특성상 내생성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한계점을 해결해 주는 연구들은 추후 과제로 계속 연구되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외청으로서의 전담 국가채무관리 조직의 도입에 대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DMO와 같은 외청 형태의 전담 국가채무관리 조직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재무부, 중앙은행 등 각 조직에 산재해 있던 다양한 국가채무관리 기능을 한 조직으로 이전 통합시킨 것이다<sup>6)</sup>. 어떤 기능까지 통합시키느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논의가 자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점은 전략적인 측면과 실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 조직을 운용하느냐보다는 국가채무관리의 목적과 그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PF**

어떤 형태로 조직을  
운용하느냐보다는  
국가채무관리의 목적과  
그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외청 형태로서의 전담 국가채무관리 조직의 기능은 <참고 외청형태로서의 전담 국가채무관리 조직의 기능> 참조

**참고** 외청 형태로서의 전담 국가채무관리 조직의 기능

국 가	기능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easury Services: Funding &amp; Liquidity Management, Deal Execution, Financial Market Monitoring &amp; Liaison</li> <li>• Financial Risk: Debt Strategy, Portfolio Management, Performance Analytics, Credit Management &amp; Risk Policy</li> <li>• Compliance &amp; Reporting: Audit &amp; Compliance, Operational Risk</li> <li>• Finance, Settlements &amp; Corporate: Finance, Settlements</li> </ul>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sh Management</li> <li>• Long and Short Term Funding, Financial Planning</li> <li>• Risk Management/Operations</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ance division: central government's debt and liquidity management. State guarantee, State inheritances and payment exemptions administration</li> <li>• Insurance division: handles</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rategy: Portfolio Management, Market Analysis</li> <li>• Trading &amp; Issuing Business:</li> <li>• Private Clients</li> <li>• Risk Control</li> </ul>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nding &amp; Debt management</li> <li>• National Development Finance</li> <li>• National Asset Management, Alternative Asset,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li> </ul>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bt and cash management</li> <li>• Operation, Settlements, Accounting</li> <li>• Customer Department, Retail Debt, Treasury Accounts Management</li> </ul>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bt management</li> <li>• Liquidity management and hedging operations</li> <li>• Risk management department/Middle office</li> <li>• Back office</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sh Management</li> <li>• Guarantees and Lending</li> <li>• Debt Management</li> <li>• Bank Support</li> <li>• Retail Market</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bt Management</li> <li>• Cash Management</li> <li>• Fund Management</li> <li>• Hedging and Balance sheet Management</li> <li>• Lending to local Government</li> <li>• Settlements</li> <li>• Risk Management</li> </ul>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주요국의 DMO 운용 현황과 시사점』(mimeo), 2010. 3  
 한국조세연구원, 『경제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2008. 12
- AFT, Annual Report 2008  
 \_\_\_\_\_, “The best of the Euro,” 2007  
 Eurostat, 『Stock-flow adjustment(SFA) for the Member States, the euro area and the EU27 for the period 2006~2009, as reported in the April 2010 EDP notifications』, 2010  
 HM Treasury, *Debt and reserve management report 2009~10*, 2009. 4  
 OECD, *Central Government Debt Statistical Yearbook*, 2009  
 \_\_\_\_\_, *Advances in Risk Management of Government Debt*, 2005  
 UK DMO, *Annual Report & Accounts 2008~09*, 2009. 7  
 \_\_\_\_\_, “Framework Document,” 2005. 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Bulletin*, 2009. 12  
 \_\_\_\_\_, “Overview of U.S. Treasury Debt Management,” 2008. 6

각국 관련 사이트

이용 데이터

OECD Database



## 정책토론회 리포트

-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 일 시            2010년 5월 25일(화) 15:00~17:30
- 장 소            한국조세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 15:00~15:15    개회사 및 인사말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인 사 말      김선웅 한미경제학회 회장
- 15:15~16:15    주제발표
  - ▶ 사 회 자      최흥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발 표 자      김석희 University of Detroit Mercy, 경영대학 교수

『The US Financial Crisis, Tightened Credit Standards, and Rising Personal Bankruptcy Rate』  
 흥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과세 논의와 우리의 정책과제』
- 16:15~16:30    휴식
- 16:30~17:15    종합토론
  - ▶ 토 론 자      김선웅 한미경제학회 회장(U of Wisconsin-Milwaukee 교수)
  -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가나다 순)
- 17:15~17: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7:30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5월 25일 한국조세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 발표 요약**

**미국의 금융위기, 대출기준 및 개인파산율  
(The US Financial Crisis, Tightened  
Credit Standards, and Rising Personal  
Bankruptcy Rate)**

김석희 / 디트로이트대 경영대학 교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7년 12월에 시작된 미국의 경기후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장기, 최악의 경기침체가 되었다. 이번 경기후퇴는 금융기관들이 주택가격의 급속한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지불능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택융자를 제공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30여년 동안 계속되어온 금융산업의 규제완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투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의 모든 수단을 사용했지만 개인들의 파산신청은 급증하였다.

개인의 파산 건수가 2005년까지 급증했다가 2006년에 대폭 감소했지만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9년에는 140만명이 파산신청을 했다. 2005년에 파산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개인파산법의 2006년 효력 발생을 앞두고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파산신청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실직, 질병 및 이혼 등의 개인문제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이다. 둘째는 개인들의 소득에 비해 부채가 너무 증가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개인문제보다는 부채

특히 신용연장(revolving credit)의 증가를 파산신청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0~0.25%로 낮추었지만 금융기관들이 대출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이자율이 높은 사채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채는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담보를 받고 자금을 잠시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채대출업자들은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자금을 빌린 사람들만 모든 회생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경기침체로 개인들의 부채는 더욱 증가했고 수입은 감소하여 파산신청이 급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파산이 정부세수나 지출 및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개인들의 파산 신청이 증가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고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과세 논의와 우리의 정책과제**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때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으로 인하여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금융위기도 극복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세계 경기의 더블 디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등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위기 국면이 수습되어 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책

임론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번 위기의 책임을 금융권에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하고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중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토빈세를 부과하자는 국가 수반들의 주장이 거듭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재정자금을 환수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 안전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① 금융보험금(insurance levy):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여 금융위기 발생시의 비용을 충당
- ② 정리기금(resolution fund):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정리기금에 납입하여, 위기 발생 시 정리금융기관 해체에 사용
- ③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

지금까지의 국제적 논의 결과,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정리기금 마련을 위한 장치로서 금융보험금 또는 분담금을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부채)과 시스템 위험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하자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거래세는 일부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설립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설치된 여러 기금 등을 통하여 금융위기 재발 방지 장치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기금 손실은

거의 없는 편이며, 기존의 기금들도 아직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구축은 향후 국제적인 논의의 전개를 따르되,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증권거래세가 유일한 세제이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를 고려할 때, 지금이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과세대상은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라고 하겠다.

파생금융상품, 특히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는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아직 비과세 대상이다.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나 실물거래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투기적 성향이 높다고 하겠다. 이번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거래세의 부과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다. 최근 국제적으로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자본통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직접자본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환거래세를 부과하여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따른 실현의 어려움이 계속 거론되었으나, 2009년 브라질이 외환거래세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적

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G-20 회의를 통하여 토빈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 정책당국의 입장에 서도 보다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 요약**

**부동산 수익이 더 많은 것도 금융위기 원인**

김선웅 / 한미경제학회 회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잘못된 금융시장의 규제, Wall Street의 빈번한 위기에서 유래되는 금융산업의 문제, 자산버블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많은 참여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금융위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활동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기존 세제하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왜냐하면 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고, 거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주택을 소유할 만한 투자유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를 권장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미국과 정치·경제적 지형(avigation)이 동일하다.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보다 부동산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촉발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금융거래세와 은행위험분담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을 네 가지로 규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확보 차원이다. 정부가 금융거래세 등을 부과하는 적정 방법으로 세수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둘째,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다. 공공재로서의 은행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한 상황이고 오히려 정부는 금융위기 때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금융활동 등의 거래량이 많아짐에 따라 시장의 불완전성이 커지는 등 시장변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넷째,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거래세와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위와 같은 네 가지 목적에 정확하게 수단(instrument)이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세보다는 금융제도 개혁으로 해결해야**

염명배 / 충남대 경제학과교수

첫 번째 논문(The US Financial Crisis,..... Personal Bankruptcy Rate)이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다 micro한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논문(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과세 논의와 우리의 정책과제)은 금융위기의 가해자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보다 macro하게 접근한 것 같다.

현재 국제적 관심이 부각되는 은행세(bank levy)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자산·부채연계은행세(Balance Sheet Tax), 초과이익세(Excess Profits Tax), 금융거래세(Financial Trading Tax) 및 보험수수료(Insurance Levy) 등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나라마다의 해석은 다르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국가마다 금융위기의 영향과 해결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세에 대해서 주요국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주로 Tobin tax의 도입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IMF나 미국은 분담금(기금) 부과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1월 개최될 G-20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주도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은행세 부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두 가지 판단기준이 있다. 첫째, 조세원칙(정책취지)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은행세 부과 명분이 합당한지 밝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책시행에 따른 실제 운영효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즉, 실리적인 측면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세는 페널티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자칫 기금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또한 금융산업에만 부과하는 일종의 ‘차별과세’라는 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한 특별과세 부과가 과연 조세원칙에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 산업별 기금 조성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은행업이 잘못했다고 해서 은행업에서 부담금을 만든다면 차후에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반도체 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야별로 분담금을 조성할 것인가? 이

보다는 보다 큰 범위에서 (예를 들면 IMF의 기능을 확충해서) 산업 내의 해결이 아닌 산업간 cross-subsidy 등 보다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거래세 부과는 금융활동을 침해하고, 이중과세, 조세전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세를 시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 측면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조세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조세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은행·금융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은행분담금이나 금융거래세 모두 선불리 도입해서는 곤란하다.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이전되는 조세전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세를 신설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더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세 부과는 영업활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한다.

셋째, “누가 일을 저질렀나?”,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의결을 하는 것과 같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내는 어렵다. ‘결자해지(PPP rule)’ 차원에서 금융위기 유발국가 또는 금융위기 해결이 시급한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위기의 진원이 된 미국은 미국의 국내 피해(재정지출)만을 복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로 인해 유발된 다른 나라에 대한 금전적 외부불경제(pecuniary external diseconomies) 고통까지 보상해 주려는 노력이 요구

된다.

넷째,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세나 은행분담금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에 20조원 가량의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분담금보다는 오히려 금융거래세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요인이 무분별한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럽에서 주장하는 토빈세 도입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급하게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조세의 전가 문제와 탄력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외화의 공급은 매우 탄력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외화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조세부담은 거의 국내 수요자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세 부과는 미국과 IMF의 관심과도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는 기조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 편더멘탈 개선 작업으로 근본해결 모색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금융규제가 정부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실패의 부문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외환규제들은 선물환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선물환 규제를 포지션 규제로 도입하면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자본

규모가 적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같은 경우에는 선물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즉, 선물환 규제가 도입되어 외화조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국내 금융회사뿐 아니라 관련 수출업체로 이어져 관련 산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경제에 레버리지되어 있는 부문, 즉 가계부채, 은행의 예대율 문제 등을 디레버징 과정을 통해 편더멘탈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만 외환관련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융거래세 도입 신중해야

이인형/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금융거래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세수확보나 금융시장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수확보를 고민할 만큼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지, 금융시장 과잉이 심각한지 등을 우선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토빈세는 금융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나 과연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및 논의의 결과는 실증분석상 명확한 답이 없다. 따라서 금융변동성 축소라는 추상적인 명분만을 갖고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거래세 도입의 목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시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을 지원하는 측면의 기금 확충이라 할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거래세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위축되도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세금부담의 귀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거래세 실시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감안한 다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필요한 자본이동을 크게 방해하거나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대마불사형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안지 못하도록 하는 부담금은 미국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은행들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은행으로 대형화할 전략적 필요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형태로 부담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KIPF**

## 금융거래세, 부담금 두 가지 모두 필요

장경덕/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가지 형태의 은행세(금융거래세와 위험투자에 대한 부담금) 모두 필요성이 인정된다. 우리의 경우 은행부담금보다는 금융거래세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가 자율적인 통화정책, 안정된 환율, 자유로운 자본이동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 세 마리를 함께 쫓다 보면 자칫 다 놓칠 위험이 있다.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환율 안정과 자유로운 자본이동 두 가지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우리는 두 차례 위기를 겪고도 자본이동의 속도를 늦추는 걸 금기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널뛰기하는 환율과 급격한 자본 유출입 문제를 보더라도 금융거래세가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가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2008년 말 이후 1,500억달러나 늘어난 외국인 주식투자가 언제 얼마나 유출될지 알 수 없다. 낮은 세율의 거래세는 극단적인 투기자본의 유출입은 줄이면서도 꼭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주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한국조세연구원  
후원: 사회통합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시: 2010. 6. 10(목) 14:00~17:15 장소: COEX 컨퍼런스룸 402호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정책토론회 개요

- 주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일시 2010년 6월 10일(목) 14:00~17:15
- 장소 COEX 컨퍼런스룸 402호
- 진행순서
  -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 ▶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인사말 고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 ▶ 축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14:20~15:50 **주제발표**
    - ▶ 사회자 이원덕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고문)
    - ▶ 발표자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
  - 15:50~16:00 **중간휴식**
  - 16:00~17:00 **종합토론**
    - ▶ 토론자 김낙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영민 숙명여대 여성HRD대학원 교수
    -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 정필모 KBS 해설위원
    - 최정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7:00~17:15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7:15 **폐회**

(가나다 순)

\* 본 원고는 2010년 6월 10일 COEX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사회통합위원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주제발표 요약

### 한국의 나눔문화 실태 및 정책과제

손원익/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배경

-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적 활동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만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민간 비영리분야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민간 비영리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민간기부는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민간기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민간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제공하고 있음.

#### II.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 1. 나눔교육 강화 및 개인기부 활성화

- 나눔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바르게 정립되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나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2. 기부 인프라 확충

- 가. 기부단체 연계 및 안내 상담 인프라 구축
- 나. 전문성 있는 모금기관의 양성 및 활성화
- 다. 기부관련 통계의 체계적 구축 및 공개 확대
  - 통합적 기부 통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부처의 협조를 통해 통계를 생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비영리 분야의 통계를 구축하는 국가기관이 있어, 실태파악은 물론 여러 가지 비영리 분야 관련 통계서비스를 제공.

##### 3. 기부 수혜단체의 투명성 제고

-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부 확산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며 기부 수혜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 4. 다양한 기부모델의 개발 및 지원 확대

-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부유층의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로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가.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 기부의 의사를 가지고 설립된 번복할 수 없는 신탁을 말하며, 공익신탁은 부유층의 기부를 촉

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기부수단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 재단을 설립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인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민간재단 설립시 발생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간재단의 설립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님

### 5. 기부금 관련제도의 단순화

- 기부금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특례기부금 제도가 우선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단체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지원의 수준이 결정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됨.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이순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역할의 변화와 민간참가에 대한 기대
  - 전통적으로 국가 내지는 행정주체가 공익의 결정과 실현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행정작용 일부가 민간 위탁뿐만 아니라, 협치(거버넌스), 파트너십(PPP) 등으로 공동 집행되는 경향 존재
  - 신자유주의 등에서 민간부문의 활력을 강조하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은 축소해야 한

다고 주장

-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가족, 기업, 지역공동체, 그리고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어 가는 “보충성의 원칙”,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이 강하게 주장
-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한 민간의 나눔
  - 종래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 내지 생존권 보장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또는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지역공동체의 “나눔”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가 공동체의 이익증진에 필요
  - 공익수행의 주체에 관한 문제보다는 가장 적합한 공동체의 자원배분 방식 내지 절차를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필요
  -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만큼 정비되어 있지 못함
  - 공익활동을 수행하려는 민간단체에 대한 “법적 승인”이 용이하지 않음
  - 공익활동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이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감독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피규제자인 민간단체에 있어서는 규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함
  - 기부금품 등의 “기부 및 모금·접수”에 관한 법제도를 알기 어렵고, 기부 등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는 자신의 공익활동에 대해, 정부나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하는 행정활동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정도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시민에게 다해야 함. 즉,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활

동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익단체의 직접적 고객인 시민에 대한 공익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등을 설명해야 함

■ 기부의 모집 등에 관한 법제와 문제점

- 기부금품 모집 그 자체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영위하는 데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민과 단체 간의 상호작용인 기부금품 모집의 절차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방법에 대한 법제 검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 기부금품의 적정사용 확보를 입법목적으로 함.
  - 기부금품모집금지 → 모집규제 → 모집절차법으로 법의 내용이 변경되어 왔지만, 여전히 모집에 대한 규제법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
  - 재해구호법
    -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그 실질적 내용 및 구조가 기부금품법과 유사. 의연금품은 기부금품의 일종이나 그 목적이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 밖에도 기부와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수 법률 존재
    -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 : ①정치자금법, ②결핵예방법, ③보훈기금법, ④문화예술진흥법, ⑤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⑥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⑦재해구호법, ⑧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⑨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 ①재외동포재단법, ②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③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④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 기부의 모집 등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 기부금품의 개념적 불확정성 : 나눔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정부나 정부출연 법인 등에 대한 국민의 기부금품도 기부금 개념에 포함시켜서 이해하게 된다면, 결국 종래의 공익담당자에 의한 공익활동을 넘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수행, 나눔문화 확산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임
  - 법제도 설계 및 법 해석에서 “기부금” 개념 사용에 유의할 필요
  - 법체계적 문제 :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일반법을 설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분야 내지는 특수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

■ 민간공익활동의 주체에 관한 법제

- 민간공익활동의 주체에 관한 법제 개관

〈표 1〉 현행법상 민간공익활동 주체

법적 성격	비영리단체			영리+공익법인
유형	법인		법인+법인적 없는 단체	사회적 기업
	비공익	공익단체		
법적 근거	일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일반공익법인	개별법상 공익법인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인(의료법) 등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주의 :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민법(민법 제32조),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법(민법 제39조)
-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
- 주무관청의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 :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감사하고 감독,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 주무관청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가능
- 행정지원이나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민간공익활동주체에 대한 법제의 개선방향

- 민간공익활동주체에 대한 통합적 법률의 마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민간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으나, 공익활동에 대한 규율밀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
- 공익 인정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익인정등위원회 설치
- 공익단체 인정을 위한 객관적·통일적 기준 설정

■ 나눔문화 확산

- 공익활동의 활성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의 종업원 수가 60만명에 이르고, 영국의 경우 19만개의 자선단체에 종업원의 수는 66만명
- 분산되어 있는 법제를 정비하여 통합적 관리·감독 기구 창설

-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유인책을 다양화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

박세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자원봉사 활동은 적극적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서,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건 강한 시민사회의 초석을 다지며,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복지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첩경 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발 생하는 제반의 사회문제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예방·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체계를 구축 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실현하는 핵심 기 제로서 자원봉사 활동은 매우 중요한 민간 복지 자원임.
-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공적 복지체계가 대 응하는 데 있어서의 경직성과 투입 가능한 복지 자원 수준이 임계상황에 도달하면서, 구성원들 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형태로서 자원봉사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자발적 시민참여는 공적 복지자원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보완하면서, 사 회적 신뢰와 나눔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주요 기제로 간주됨.
- 자원봉사활동이 복지공급에 있어 정부의존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복지 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용한 복지자원 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 결과 가 확인하고 있음.
- 자원봉사는 참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타성의 구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활 동임.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 기실현의 기회를 갖게 되고, 공동체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여 실천적 시민의식을 갖춘 구성 원으로서 생활하게 됨.
-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나눔의 실천은 사회구 성원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를 확장하여 성숙한 공동체를 이 끌어 가는 원천이 됨.
- 지난 20여년 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 의 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지원·관 리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된 실정임.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유 및 자원봉사 활동의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음. 단순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 동의 질적 성숙의 문제에 대한 통찰과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본 발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 자원 봉사 관리·운영조직인 AmeriCorps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적 적용방안의 가능성에 대해 타 진하였음.
- 나눔문화 확산의 일환으로서 자원봉사 활동 체 계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자원봉사 활동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주요 발표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요약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방안 및 이에 따른 한국형 국가봉사조직의 설립(안)을 정리하였음.
  - 1)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 2) 미국 AmeriCorps를 통해 살펴본 국가봉사조직의 성과와 한계
  - 3)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 4) 국가 자원봉사조직(가칭 한국자원봉사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제안
- 나눔문화 확산의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접근전략은 크게 2가지: ①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원봉사 문화의 사회적 지지 확산과 ②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존중과 일상화는 신규 참여자를 유인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연령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잠재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집단별 특성화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 국민의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함.
-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언론매체 등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지속성 있는 자원봉사 사업의 발굴 및 체계적 추진, 자원봉사 인력의 활동지원 및 네트워킹과 전문적 관리, 자원봉사 활동과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의 연계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관리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고도화, 전문화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이들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계·네트워킹할 수 있는 전문관리자를 양성하도록 함.
- 개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조정하고 지역사회 필요와 욕구에 조응하는 봉사활동의 전개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

 **토론 요약**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 노력 경주**

김낙희/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국가 품격과 사회통합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감한다. 지난 10년간 기부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고, GDP 대비 개인기부금의 비중은 0.54%로 다른 나라의 평균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기부 확산과 관련하여 세제도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세제당국 차원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재부의 노력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하겠다. 첫째는 법인기부보다 개인기부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두 번째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는 점이다.

개인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왔으며, 2007년에는 10%를 공제했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15%, 2010년에는 20%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2008

년과 2009년 통계를 통해 추정해 보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99.8%가 소득공제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기부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0.2%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벗어나는 고액기부자를 위해서는 이월공제제도를 두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내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특례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이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기부금 단체에 대한 공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수행했다. 기부금 모집 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결산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2년마다 감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었는데, 기부금 제도의 복잡성 등 일정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며,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정기기부자 확대와 나눔에 대한 교육 절실

박태규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나눔문화는 개인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참여율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나눔에 참여한 금액은 2조 9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되었지만, 개인기부의 경우 참여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금액은 증가했지만 기부 참여가 확대된 것이 아

니라 참가한 분들의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참여자의 2/3 이상이 정기기부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부의 저변 확대에 있어서는 소액일지라도 참여율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기기부자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기기부자의 확대 및 나눔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기부의 참여율, 기부액 및 정기기부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경우 미국 통계청 자료가 공식적인 자원봉사 참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giving USA 자료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볼 때, 40% 후반에서 60%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이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참여 확대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 세대의 기부문화 육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기부자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고액기부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기부자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고액기부자, planned giving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 둘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존재한다. 고액기부를 위해서는 공익신탁의 활용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기부에 있어서 사익과 공익이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사회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민간 기부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의 효과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신장시키

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NPO들은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NPO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NPO의 설립이 매우 어려운 반면, 일본은 NPO법의 제정으로 NPO의 설립이 용이하여 수많은 NPO가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은 규제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위해서 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모니터링과 전문성의 신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 필요

**배병준**/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좁게는 복지예산, 넓게는 social expenditure라고 표현하는 사회지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지출 비용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1/3~1/2에 불과하며, 동일한 GDP를 가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도 사회지출 부분의 비중이 월등하게 낮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민간부분이 보충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 총액이 8조원에 이르며, 대기업 집단의 기부금 대부분이 복지분야에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감소된다.

미국의 경우 기부금 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원에 이르고, 복지나 건강 측면에 배분되는 금액이 50조원 정도 추산되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물론 국력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기부금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인센티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부포털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번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나눔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다.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유형이나 대상, 기부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기부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부단체의 배분 사업, 기부관련 정보 등을 얻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축 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의 1단계로는 기존의 사이트를 연계하는 수준이 되겠지만, 이것이 진전되면 종합적인 포털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성 있는 모금기관의 양성과 활성화를 제안하였는데,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수 기관화를 통한 공동모금 활성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방향이 복지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의료 전문 모금기관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좀 더 모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 사용내역을 연 1회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낸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개인의 후원 내역이나 기부금 내역 등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많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하기보다 국세청에서 공익성 테스트를 통해 공공부문에 기부금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단체에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에 대해 공감하며, 현재 자원봉사 총량의 65%가 복지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형 자원봉사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봉사 조직들 간의 역할분담 문제에 대해 선별하면서 한꺼번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어릴 때부터 기부 습관을 갖도록 가정·학교·사회가 가르치자

신예리/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웃효과(neighbors effect)’란 말이 있다. 주변 친구 및 이웃과 자신의 소득수준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간 본성을 일컫는 말로서 절대적 가난보다 상대적 가난이 사람들에게 더 큰 불행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국가들이 좋은 예이다. 이들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복지예산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도 큰 불만이 없다. 그 같은 재분배 정책으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모두가 혜택을 본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빈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8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에 따른 박탈감과 소외감의 증가가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정부가 갖가지 복지정책으로 이런 추세를 완화하려 애쓰지만 역부족이다. 앞서 예로 든 북구와는 여러 가지 여건이 판이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복지예산을 마냥 늘릴 수도 없다. 재정의 힘만으로는 소득불평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기부의 활성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송송 뚫린 사회안전망의 구멍들을 기부로라도 채워 넣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겪는 분열과 갈등은 위험수위에 다다를 수 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기부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이 이런 현실 즉,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부문화 정착이란 게 일부 ‘기부천사’들만 나서선 될 일이 아니기에 하는 소리다. 자기 가족의 안전과 평안을 우선순위에 놓는 평범한 국민 모두가 기부에 참여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타주의 정신은 접어두고 아주 이기적인 셈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기부는 필연적인 선택인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활성화 방침을 밝힌 이른바 ‘휴먼네트워크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다. 이는 소외계층 청소년과 이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어른을 골라 멘티-멘토로 결연시켜 주는 사업이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새로운 개념의 기부다.

이 같은 멘토링 봉사는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04년 설립된 ‘빅브라더스 빅시스터스(BBBS)’가 대표적인데 지금까지 수백만명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멘토를 선물했다고 한다. 멘토로 나선 이들은 대학생, 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 주로 인근에 사는 중산층 주민들이다. 이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비행과 범죄가 늘어나고 결국 자기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밑바탕으로 이웃집 아이가 잘 자라

야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쁜 아이들과 절대 어울리지 마라”며 백안시하는 우리와는 접근방식이 다르다. 각종 통계를 보면 BBBS를 통해 멘토를 만난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술, 마약, 폭력에 가담하는 빈도가 뚝 떨어지고 고등학교 졸업률도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이타주의로 뚝뚝 뭉친 기부천사들 외에 평범한 대다수 국민들이 기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공제의 확대 등 세제 측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가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기부가 세금으로 정부가 해야 할 몫을 대신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린 세대에 대한 교육이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기부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나라 기부 현황을 보면 기부를 하던 사람들만 계속 기부를 한다고 한다. 한번 하면 기부의 마력에 사로잡혀 또 하기 마련인데 첫 시도 자체를 하기 힘든 것이다. 바빠서, 쑥스러워서,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등등 갖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기부를 자연스런 습관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서 그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 될 것이다.

예컨대, 가정에선 용돈의 10%를 따로 떼어 기부저금통에 넣도록 한 뒤 연말에 아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부할 곳을 의논하는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학교에선 선행이나 학업 우수 학생들에 대한 부상으로 상장과 함께 그 학생의 이름으로 기부한 확인증을 주는 방법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이들 덕에 먹고 사는 온라인게임업체들도 게임 머니 얼마당 일정액을 회사 차원에서 좋은 곳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펼쳐 기부문화 교육에 힘을 보탬 수 있다. 연예인들 역시 ‘기부

=cool(멋지다)’라는 인식을 청소년층에게 심어주는데 효과적인 도우미다. 최근 아이돌 그룹 팬클럽 사이에 돈을 모아서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으로 기부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 문화로서의 나눔 인식이 필요

이영민 / 숙명여대 여성 HRD대학원 교수

왜 나눔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눔은 하나의 문화이다. 따라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나 제도 개선보다도 의식의 확산이나 교육과 같은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법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로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기부를 받는 단체가 투명하게 재원을 잘 활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부보다는 민간단체나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나 지역사회 등이 어떤 형태로 네트워킹을 할지 즉, 새로운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법제가 소극적인 형태의 지원이라면, 자원봉사는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이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원봉사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이 다양하므로 이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및 나눔문화에 동참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며,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이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적 영역 즉,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언론의 홍보 등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 기부금관련 법제, 사후통제 등 새로운 각도에서 개정 필요

임병수/법제처 기획조정관

많은 발표자들이 기부금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 이에 동의한다. 기부금관련 법제를 만들게 된 계기는 1951년도에 멸공·구국운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이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고 기부금품을 계획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법제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기부금을 좌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 우리 법제의 문제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전진입규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기부금품에 대한 법률이 복잡하므로 앞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사전규제 부분은 완전히 개혁을 하고, 사후통제 모니터링 등 새로운 각도에서의 전면 개정이 있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자금이라는 공익에 대한 기여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은 공익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치자금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의 경우 두 제도 사이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또한 고액기부자들의 경우, 국세청 등에서 기부 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마일리지 많은 기부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 사실이 신문에 조그맣게 이름이라도 실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감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두 가지 논의는 지금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 기부·나눔문화, 공공논리 허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정필모/KBS 해설위원

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제는 장려 내지는 축진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공개 의무화 및 공시제도의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책무성 측면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기부금을 낸 사람이 알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부금을 계속 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 있다.

기부금 사용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민간결사체에 대한 국가개입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부금 사용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GDP 대비 개인기부금의 비중을 보면 미국 및 영국 등 시장논리가 강한 국가들은 비중이 높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공공영역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칫 기부금이 공공부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부 문화나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되, 이것이 시장논리를 강화시키고 공공논리를 허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해야 할 것이다.

## 법제적 측면에서 검토사항 많아

최정일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제적인 측면에서 이순태 박사의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주의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비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법제 개선 방향으로 참고할 사례로 일본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일본이 공익법인제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익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 보인다. 일본 법제상 공익법인의 인증제도와 우리 법상의 허가제도와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공익위원회의 공익성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공익위원회의 특성이 현재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선방향으로 공익단체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를 행정청이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취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익성 인정에 대한 재량 부분에서 공익성의 인정·불인정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불복제도의 경우 현행법상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복제도라 함은 어떤 취지의 것인지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익활동의 주체에 대한 논의 중 나눔의 영역에서 종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의 법제화 문제 중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 KIP

# 공공정책포럼



## ■ 제5회 공공정책포럼

###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제5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일 시            2010년 5월 19일 18:30~21:00
- 장 소            서울 엘타워 메리골드B홀
- 진행순서
  - 18:30~19:30    만찬
  - 19:30~19:35    인사 말씀  
                  송대희 KDI 초빙연구위원
  - 19:35~20:10    주제 발표  
                  정민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 20:10~20:55    자유 토론
  - 20:55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5월 19일 서울 엘타워 메리골드B홀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5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 인사 말씀

송대희 / 공공정책포럼 위원장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도입은 우리 공기업의 글로벌화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을 통해 공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해외 진출 및 외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주제발표 요약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공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정민근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 1. 공기업의 IFRS 도입 핵심이슈 및 정책시사점

IFRS의 특징 및 현행 기준과의 차이, 도입에 앞서 지원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IFRS는 유럽식 정찬코스와 같은 복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업 스스로 많은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우리 공기업이 IFRS를 도입하는 데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IFRS의 선택적 회계처리에 따라 개별 공기업이 선택한 방식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된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적 재무제표와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공시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기존

K-GAAP와의 주요 회계처리 차이가 공기업의 경영평가·예산·공기업 내부 성과관리(KPI)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

#### 2.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는 회계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해외 사채발행을 통해 많은 외자를 조달할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이 아닌 표준화된 회계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IFRS를 통해 해외 공기업과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경영목표의 설정 및 벤치마킹이 용이해진다. 2011년까지 우리를 포함한 150여개 국가가 IFRS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2015년 도입 예정인 일본보다 앞선 것이다. IFRS를 도입하면 초기 회계비용과 재무제표 변동성의 증가, 비교가능성의 일부 훼손 가능성, 재무보고 위험증대로부터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기준 투명성 개선에 따른 신뢰도 제고의 효익이 그보다 훨씬 클 것이며, 궁극적으로 각 공기업의 자금 조달 등에 실질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 등의 공시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외환·부채 등에 대한 위험 관리가 용이해져, 공기업의 선진 경영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다.

IFRS의 특징은 자회사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정보 취합이 가능한 연결기준 회계, 규칙중심(Rule-based)인 미국 회계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적 판단이 중요한 원칙중심(Principle-based) 회계,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라는 것이다. IFRS는 기존의 K-GAAP와도 여러 차이를 가진다. 첫째,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짐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도 달라지게 되므로, 시장과 기업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안정성이 높은 취득원가 대신 현

재가치를 중시하는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여 재무제표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현재처럼 퇴직급여를 미인식하지 않고, 보험수리적 추정 및 발생주의로 처리하게 된다. 연월차 등 복리후생 항목도 미리 계상하여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유형자산 상각방법 적용 및 내용연수의 후속적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경우 세금의 대폭 증가가 우려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부동산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4월말 현재 세무 업무내용에 따라 IFRS 적용대상 21개 공기업 중 절반 이상이 도입하기 적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한 과제

IFRS 도입으로 발생할 선택적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감가상각방법을 전환할 것인지, 내용연수에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것인지, 공정가치 평가를 할 것인지 등 유/무형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얼마나 기관의 성격에 맞게 선택을 하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특히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현재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통일성과 다양성 간에 정책적 선택의 과제가 있다. 재무상태표를 유동/비유동배열 또는 유동성배열로 작성할 것인지, 손익계산서를 기능별 또는 성격별 표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을 표시할 경우 그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현금흐름표도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작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부문별 정보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과제

이다. 그동안 영리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등 여러 속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부문별 공시는 명확하지 않았다. 때문에 적절한 정부의 지원,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이러한 정보공시가 필요해졌다. 이에 비상장 공기업에 대한 부문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등까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4.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주요 영향

IFRS 도입은 1차적으로 기업의 회계정책, 재무정보의 변동성 증가, 연결재무제표 및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 내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차적으로는 회계기준 및 정책, 재무보고 Process, IT시스템 및 전문적인 인적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예산정책 및 관리·공기업 내부 성과관리·공공요금 변화 등에 대한 3차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경영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량지표에 연결재무제표의 자회사 실적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IFRS 도입 이후의 회계변경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관간 비교가능성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통계량지표의 경우 이미 목표부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도입 이후 2010년 자료와 비교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도입 이후 평가 항목의 재정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정부 예산편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기준에 의한 비용 등에 대한 보전 요구가 생길 것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IFRS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사용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채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모기업 측면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IFRS 도입에 따른 항목별 변화로 공정가치에 따른 간주원가, 재평가모형 항목에서는 자산과 자본의 상승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이며, 보험수리적 퇴직급여가 적용될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개선 혹은 악화될 수 있어 중립적이다. IFRS 하에서는 기존의 80%가 아닌 50%의 발생가능성 수준에서 충당부채 적립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차입금·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현재가치평가, 이연법인세의 경우 개선 혹은 악화될 수 있다.

공기업 내부 성과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IFRS 도입에 따라 경영관리 차원에서 성과의 개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의 개념 및 KPI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결 관점의 경영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개별기업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 위험 관리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제도하에서 자회사까지 포함된 방대한 경영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위험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FRS 도입에 따라 민간부문의 경우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이미 이루어졌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회계처리기준의 개정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산편성시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현행 2개월 이내인 공기업 결산서 제출기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FRS 도입은 법인세법의 개선 등과 연동이 되어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에서 IFRS가 순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겠다.

## ■ 자유토론

송대희/좌장(KDI 초빙연구위원)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감가상각평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자산에 장부상 가격이 아닌 실질 가격을 반영하게 되는 여러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회계처리가 복잡해지겠지만,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권홍삼/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유공사의 경우 매출의 95%, 투자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개발과 관련한 부문은 미국회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가 직면한 어려움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다. 첫째, 석유공사는 해외 법인을 다수 갖고 있는데 이들의 결산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내의 2월말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 둘째, 해외 법인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회계시스템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사이 차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 기능통화를 미국 달러로 할 경우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를 질문 드린다.

아울러 2월말 결산제출이 강행될 경우 우리 공사와 같이 해외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애로가 많은 기업에 대해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통일성과 다양성 문제 간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가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정책 당국에 질문 드린다.

**정민근**/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해외 자회사를 가진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큰 화두이며, 실제로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이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우리 기업들도 다국적으로 해외 기업을 관리한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해외 매출이 95%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95%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회계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해외 자회사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해외 다국적기업도 자율권과 함께 경영 방침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도 이러한 방침하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결산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기능통화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임해중**/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공공정책국장으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 금일의 주제와 관련하여, 직접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을 모셨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내형**/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

석유공사의 경우 결산의 연장을 제안하셨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법률에 의해 결산을 8월 20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전에 감사원의 검수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러한 사항에 대해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통일성과 다양성 간 결정은 작년 말부터 4대 회계법인을 중심의 한 자문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중이다. 금년 말 경에 양식을 드리되, 통일된 양식이 어려울 경우 조서를 통해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찬기**/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발표와 같이 IFRS 도입에 따른 1, 2차 영향은 기업 내부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3차 영향의 경우 정책 결정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차 영향에는 세무 문제도 있다. 공정가치 적용과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변화에 따라 자산가액과 비용 및 수익구조가 바뀌는데, 한국전력의 경우 3,200억원 여의 법인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금유입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조세부담이 커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고민이다.

또한 평가기준 설정시 재무제표의 통일성과 다양성 간 정책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추세치를 가지고 목표값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IFRS 도입 시점에서 목표값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궁급하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선 결정되어야 기업 내부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민근**/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발표중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세상 결산조정을 신고조정으로 바꾸더라도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현재 사용하는 정률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수에 문제가 없다면 새로 도입되는 IFRS와

관련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평가지표 중 주요 사업지표에는 아직도 추세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IFRS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추세치 활용은 사실상 어렵다. 기존에 활용하던 회계정보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전환, 검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일이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과제가 될 것이다. 각 기관의 회계정책 방향이 드러나면,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여 비용을 감안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송대희 / 좌장(KDI 초빙연구위원)

IFRS 도입에 따라 평가지표가 바뀌는 데 대해, 불변가격 설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회계제도에 따라 평가 대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과거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배용수 /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공항공사는 부채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IFRS를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다. 회계처리에 따라 당장 득과 실을 보는 기업이 나날 것이므로 하루빨리 공기업 재무제표 양식 및 회계지침 등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에 공감한다. 우리 공사의 경우 회계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해야 하는데, 영입 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등의 지침 및 지원을 정부에서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 임해중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IFRS 도입과 관련한 사항은 국고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공공정책국도 제도 도입이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 세금 부담, 부채 변동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향후에도 국고국의 지침개정 및 각 공기업의 의견을 참고하여 고민하도록 하겠다.

#### 안내형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

정책적으로 IFRS 도입이 경영평가, 부채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회계전문가 양성 및 교육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공기업 실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실제 제도 적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장지인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2007년 1,800여개 상장기업에 대한 도입이 결정된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IFRS 제도를 갑작스럽게 도입을 하게 되었다. 이에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여러 사항을 검토해 왔다. 결론적으로 2011년 21개 공기업의 IFRS 도입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석유공사와 같이 특수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자문단의 입장에서 IFRS 도입은 경영평가·예산·공공요금·세금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현재 출자관리과와 자문단은 공통 애로사항을 조사함과 동시에 공통 재무제표 양식, 공공요금 문제 등을 기획재정부 내 각 담당 부서와 함께 해결하고 있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업에 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IFRS의

경우 회계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공공기관 관련자들은 임기 중에 큰 관심을 갖고 인력 확보 등에 노력해 주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공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투명하고 경제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제도를 통해 장기적 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각 공공기관 임원은 IFR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의하여, IFRS 도입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중임.

**박정수**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해 준 정민근 부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IFRS는 공기업 선진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정책 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국고국 및 공공정책국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포럼이 참석자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6월 포럼에서는 신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의 공기업 해외 진출 방향에 대해 조환익 코트라 사장과 논의하고자 한다. 7월에는 안중범 성균관대 교수를 초청, 보수체계 선진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정착 추진을 다룰 예정이다. **KIPF**

한국가스공사의 의견<sup>1)</sup>  
IFRS 도입에 따라 내용연수 증가 및 자산재평가로 가스공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내용연수 증가로 인한 요금인하는 공사에 매우 큰 비용 부담임. 때문에 세법상 내용연수(12~20년) · 목표자본(5:5)제도 ·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재평가 차익의 요금 반영을 정부에 건

1) 서면으로 공사의 의견을 밝힘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동향 10-10

### 요약

- 본 동향은 지난 4월 IMF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시 발표된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음
- IMF 보고서는 2009년 G20 정상회의(피츠버그)의 요청에 따른 중간보고이며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까지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보고서의 목적은 금융체계 재건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금융부문에 분담시키면서 미래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IMF가 제시한 방안은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안정분담금(FSC)을 부과하고 추가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금융활동세(FAT)를 부과하는 방안임
- IMF는 동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금융

기관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세계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중간보고서<sup>1)</sup>

#### 가. 개요

- 지난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고된 IMF 중간 보고서는 금융권(financial sector)의 부담금(contribution)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형태(form)를 순차적으로 제안함\*
  - ① 금융안정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FSC)
  - ②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
- \* IMF는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안정분담금(FSC)을 부과하고 추가적인 재정의 필요시 금융활동세(FAT)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금융안정분담금은 향후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따른 재정비용을 금융권에 부담시키는 일종의 부담금임

1) IMF, 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Interim Report for the G20, 2010.4.



- 동 분담금을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이유는 재정비용 충당 목적 이외에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감수 (risk-taking) 행태를 줄이려는 목적도 존재함
  - 동 분담금은 초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단일비율로 부과되나, 분담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성 및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에 대한 기여와 전반적인 위험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동 분담금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기금(resolution fund)으로 축적되거나 일반세입에 귀속시킬 수 있음
-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이윤(profits)과 보수(remuneration)의 합계액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임
- IMF에서는 금융권으로부터 금융안정분담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금이 요구된다면 금융활동세로 거둘 것을 제안함
  - 또한 IMF에서는 금융활동세로 징수한 원금은 일반세입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함
  - 금융활동세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모든 보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면 금융활동세는 일종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며, 현행 부가가치세가 금융서비스에 대해 면세됨에 따라 금융권이 과도하게 커지는 위험을 동 세금을 통해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금융활동세의 과세대상으로 일정 수익률 이상의 이윤만을 포함시킨다면 금융활동세는 금융권의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될 것이며, 이는 과도한 위험감수 행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1. 도입

- 본 보고서는 2009년 G20 정상회의(피츠버그)의 요청에 따른 중간보고이며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까지 중간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임
- 보고서의 목적은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재건을 위해 개입하면서 발생한 부담을 금융부문에 부담시키면서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I 장은 도입, 제 II 장은 현재의 방안에 대한 평가, 제 III 장은 미래에 가능한 대안 제시, 제 IV 장은 향후 방향을 제시함
  - 특히, 제 II 장에서는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을 추정하고, 각국의 방안을 평가함
  - 제 III 장에서는 미래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위기의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제한하기 위한 방안들을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발전시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 2. 최근의 경제위기: 공공부문의 지원과 위기극복을 위한 조치

### 가. 제공된 공적 지원

- 금융위기로 인하여 G20 정부는 금융부문에 확장적인 지원을 했음
  - 지원방안에는 자본지원, 자산구매 및 보호책, 보증, 유동성 규정, 중앙은행에 의한 지원, 예금보험범위의 확장 등이 포함됨

- G20 정부가 약속한 공적 지원은 큰 규모였으나, 이 중 일부만이 실제 사용되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사용되지 않았음
  - 2009년 말 현재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직접지원에 따른 순재정비용은 평균적으로 GDP의 2.7%로 추정됨
  - 정부 보증금액(G20 GDP의 약 11%)을 제외하고, 정부의 직접지원을 위해 마련한 재정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6.2% 정도였고, 이 중 GDP의 3.5% 정도가 사용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 금융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하면 GDP의 2.7% 정도가 사용됨
  - 과거의 위기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순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위기 동안 경험한 재정위험(fiscal exposures)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것임
  - 금융위기와 관련한 재정비용, 경제비용, 사회비용을 폭넓게 보면 매우 상당한 수준임
  - 선진 G20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는 2008~2015년에 걸쳐서 GDP의 40%p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상당부분은 금융위기와 관련됨

#### 나. 채택되었거나 고려중인 조치들

- 금융위기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국이 채택하거나 고려중인 조치들은 금융부문에 대한 분담금(levies)과 보너스에 대한 과세 등 2가지 형태임
  - 미국 정부는 지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위기 책임분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CR)을 계획하고 있음
  -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에 보장할 부채의 0.15%를 매년 부과하며, FCR fee는 10~12년에 걸쳐 900억~1,17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됨

- FCR은 TARP(Trouble Asset Relief Program)의 비용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될 것임
- 현재 입법부에서 도입을 검토중임
- 영국과 프랑스는 한시적인 보너스 과세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책임분담금처럼 특정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한 것은 아님
- 2010년 4월 5일 종료된 영국의 은행급여과세(Bank Payroll Tax)는 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보너스지급액의 50%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20억파운드의 재정수입이 예상됨
- 프랑스는 2009년 회계기간 동안 지불된 보너스에 대하여 영국과 유사한 범위를 대상으로 50%를 과세하며 이를 통하여 3.6억유로의 재정수입이 예상됨

- 재정지출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로는 첫째, 금융위기로 인하여 발생했던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한 과세상 공제를 제한하거나 둘째,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부과하는 주장도 있었음

#### 다. 평가

-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된 재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 중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backward-looking' tax에 의한 것임
  - backward-looking tax는 사후적인 관점의 과세로, 세금 부과 발표 이전에 이미 결정된 몇 가지 속성(예를 들면, 대차대조표 변수 중에서 논리적으로 선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
  - 이 방법은 세금을 피하기 어렵고 세금부담의 변화로 인하여 행동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금융부문의 소유주나 경영자에게 집중함으로써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 금융시스템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음

- 각국의 관심은 금융위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재정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에서 미래의 금융시장 실패와 위험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옮겨가고 있음

### 3. 미래 위기 비용을 제한하거나 분담하기 위한 조치들

#### 가. 목적과 조치

- 국제기준 결정권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실패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강화된 금융규제 및 감독하에서도 금융실패의 위험은 존재할 것임

- 미래 금융실패와 관련된 재정비용을 방지하거나 분담하도록 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주된 목적과 3가지의 부수적인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지만 하나의 조치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 2가지 주된 목적

- ① 금융부문이 직접 지원에 따른 순재정비용의 기대 가치를 책임져야 함
- ②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비용을 감소시켜야 함

#### • 3가지 추가적인 목적

- ① 실행하기 쉬워야 하며, 핵심 체계(core framework)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적당한 수준으로 요구하여야 함
- ② 금융위기에 따른 큰 의미의 재정적·경제적 비용을 반영하여 금융부문의 부담을 결정하여야 함

③ 기존에 존재하는 조세왜곡을 완화하거나 추가적인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규제와 과세로 인한 전체적인 부담을 고려하여야 함

- 고려중인 조치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분담금 부과와 기타 과세조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조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짐

- 금융기관에 대한 분담금 부과 조치는 직접적인 공공 지원에 대한 순재정지출을 회수하고, 과도한 위험감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다른 과세조치는 금융기관에 폭넓게 조세부담을 지우고, 금융기관들의 행태에 따른 잠재적인 부작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 금융기관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및 금융활동에 대한 과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를 결합하는 정책은 금융실패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부합할 수 있음

#### 나. 금융기관에 대한 분담금(Levies on Financial Institutions)

-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은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하여 분담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고,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분담금을 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일반재정에 충당함

- 분담금은 기금이나 일반세입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며 미국, 스웨덴, 독일은 기금에 사용함

-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해결 능력을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위한 정리기금(resolution fund)을 만들기 위해서 분담금을 설정할 계획임

- 스웨덴은 금융기관의 분담금에 의해 조성된 금융안

정화기금을 만들었음

- 독일은 상업은행에 분담금을 부과해서 정리기금을 조성하는 등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능력을 제고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정리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은 정리기구(resolution agency)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일반적인 예산과정과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 정리기구의 주된 기능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관리하고, 분담금의 기준, 범위, 관련 상위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임
- 기금으로 조성된 재정규모가 위기로 인한 당면 재정수요(up-front financial needs)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건부 신용 한도액(contingent credit line)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분담금을 설계할 때 결정적인 요소는 부과의 범위(perimeter)와 부과의 기준(base), 부과율(rate), 부과율의 조정임
  - 부과의 범위(perimeter)는 은행과 같이 대상을 좁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금융기관과 같이 대상을 넓게 할 수도 있는데, 금융 안정을 강화하는 공공재는 모든 기관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과의 기준(base)은 위험의 감소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분담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넓은 대차대조표의 기준(broad balance sheet base)을 추천함
  - 넓은 대차대조표기준은 대차대조표 외의 항목 중 몇 가지를 반영하고 자본과 보증된 부채를 제외하는 방식임

- 부과율(rate)은 위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자본기반(capital base)을 저해할 정도의 높은 부담을 부과하지 말아야 함
- 부과율은 과거 금융위기의 경험과 직접적인 순재정 비용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위험특성(risk profile)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함
- 도입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부과율을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여 적용하고, 향후 시간이 경과하면 금융기관별 체계적 위험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 분담금 및 기금은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는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정리를 용이하게 할 것임
- 일련의 원칙은 기금의 목표규모, 연간 분담금의 수준, 부과의 기준, 외국 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처리 방안, 채권자 유형별 처리방안 등을 포괄하여야 함
-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부과하는 복구분담금(Recovery charge)은 사전적인 분담금에 대한 보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사후적인 비용분담금을 유일한 조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후적인 비용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①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살아남은 금융기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 ② 금융기관들이 비용분담을 가장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경기순응적(pro-cyclical)일 수 있다는 점



다. 추가적으로 가능한 과세조치(Possible Additional Tax Instruments)

- 앞서 논의한 분담금 외에도 직접적인 재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들이 고려되고 있음
  -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시킨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직접지원의 재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일반세입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함임
  - 또한 금융부분의 의사결정 및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바로 잡기 위함임
- 가능성 있는 과세조치로 금융거래세(taxing financial transaction, FTT)와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가 있음
- 금융거래세 방안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외화교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tobin tax”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는 분담금 및 기타 과세조치를 취하는 목적들에 부합하지 않아서 추천되지 않음
  - 거래량은 특정 금융기관에 전달되는 혜택이나 특정 금융기관에 부과되어야 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함
  - 또한 금융거래세는 금융불안의 원천이 되는 핵심요소, 즉 체계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기관의 규모, 상호결합, 대체능력 등과 같은 주요 특성을 목표(target)로 하는 과세가 아님
  - 이와 더불어서 세부담의 대부분을 금융부분에서의 소득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음
-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임금과 이익의 합에 부과되

는 것이고 목적의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규모가 확대된 금융기관의 규모 축소나 과도한 위험감당 완화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음

- 금융기관의 보수와 이윤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세는 충분한 세입을 거둘 수 있고, 과세대상의 기준을 적절하게 선정하면 다양한 목적들을 충족시킬 수 있음
- 금융활동세는 금융부분의 지대(rents)에 대한 과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과도한 보수 및 이윤을 과세기준으로 적절하게 선정하고 자본에 대한 정상이윤을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금융부분의 지대에 과세하는 것과 유사할 것임
- 통상 부가가치세 면세인 금융기관은 면세로 인해 금융기관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활동세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부가가치(예를 들면, 임금 등에 과세)에 직접 과세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다만, 과세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율로 과세되어야 함
- 금융활동세는 금융부분에서의 과도한 수익률(excess return)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설계한다면 과도한 위험감수(excessive risk-taking)를 완화할 수 있음

4. 향후의 방향

가. 개혁의 요소

- 금융부분의 실패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비용은 신뢰할 만하고 효과적인 정리 메커니즘과 연계된 ‘금융안정 분담금(FSC)’를 통하여 충당되어야 함

- 금융부문의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한 경우 이는 금융 활동세(FAT)를 통하여 징수하여야 함
-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향후 있을 수 있는 금융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금융부문에 부과한 조세 및 규제부담의 누적적인 수량 효과를 검토할 것임

나. 기타 고려요인 및 최종보고서 준비를 위한 조치들

- 새로운 조치들의 도입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안정화하려는 목적과는 반대로 작동하는 기존 조세의 왜곡을 줄이는 것도 필요함
  - 부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유리하게 하는 세계 왜곡은 자본수익률에 대한 조세감면 또는 이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와 같은 법인세 개정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음
- 새로운 부담금 및 과세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은 금융규제 개혁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과세조치들과 규제조치들이 과거에는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실행되었지만 이제는 금융부문에 대한 적절한 부담 및 유인체계 형성 등을 위해 서로 적절하게 조합되는 전체론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함
- 새로운 부담금 및 과세조치들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며 최초의 제안을 발전시켜서 최종보고서를 완성시킬 것임
  -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될 최종보고서에 서는 제안된 조치들을 더욱 발전시켜 평가할 예정임
  - 특히 2010년 4월의 장관회의 논의를 지침으로 더 많은 자문을 반영할 예정임
  - 또한 IMF, FSB, BCBS 간의 공동작업을 진행하여



동향 10-11

요약

- 뉴질랜드 의회는 2010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GST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하는 세법개정법안(Taxation Bill)을 2010년 5월 20일 승인함
- 대만 입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고용보조금(Employment Subsidy),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는 산업혁신촉진법(SPII: Statute for Promoting Industrial Innovation)을 2010년 4월 16일 승인함
- OECD의 연차간행물 "Taxing Wages"에 의하면,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OECD 30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 의회는 2010년 5월 20일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을 연간 SEK10,000을 한도로 5% 인하하는 법안에 승인함

1. 뉴질랜드

- 뉴질랜드 의회는 2010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세법개정법안(Taxation Bill)을 2010년 5월 20일 승인하였음
  - 동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GST 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가.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행 12.5~38%의 세율을 10.5~33%로 인하하며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함
  - 개인소득세는 2010-11 과세연도(2010. 4. 1~2011. 3. 31)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는데 세율 변경시점이 2010년 10월 1일이므로 개정 전·후의 평균세율이 적용될 것임

〈표 1〉 개정 전·후의 소득세율 비교

(단위: NZD, %)

과세표준	개정 전 세율 (2010. 4. 1.~ 2010. 9. 30)	2010-11 과세 연도 세율	개정 후 세율 (2010. 10. 1~)
~ 14,000	12.5	11.5	10.5
14,001~48,000	21.0	19.25	17.5
48,001~70,000	33.0	31.5	30.0
70,001~	38.0	35.5	33.0

-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가급여세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인하하였음
  - 부가급여세율도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2010-11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후의 평균세율을 적용함
  - 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됨

〈표 2〉 부가급여세율 개정 전·후 비교

(단위: NZD, %)

개정 전		2010-11 과세연도		2011-12년 이후 과세연도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0~12,250	14.29	0~12,390	12.99	0~12,530	11.71
12,251~39,110	26.58	12,391~39,845	23.84	12,531~40,580	21.21
39,111~53,850	49.25	39,846~54,915	45.99	40,581~55,980	42.86
53,851~	61.29	54,915~	55.04	55,981~	49.25

나. 법인세

- 법인세의 적용세율은 현행 30%인 세율을 28%로 인하하고 2011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2011-12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단위신탁(unit trusts), 생명보험 및 기타 저축상품에 대한 적용세율도 현행 30%에서 28%로 인하함
  - 포트폴리오투자기구(Portfolio Investment Entities)에 대한 세율도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현행 30% 세율에서 28%로 인하하되 적용시점은 2010년 10월 1일부터임
- 본 세법개정안은 보다 중립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세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상 적용하는 새로운 감가상각률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내용연수가 50년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세제상 감가상각이 허용되고 있지만 1993~2009년 기간 동안의 건물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2%의 상각률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내용연수가 50년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목적상 연간 0%의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함
    - 이는 내용연수 50년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

각을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물의 구입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할 계획임

- 내용연수 50년 미만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감가상각함
- 신규로 구입하는 기계장치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0%의 가속상각은 2010년 5월 20일 이후 취득분부터 폐지함

다. GST(Goods and Service Tax)

- 소득세에서 소비세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12.5%인 GST 세율을 15%로 인상하고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GST 세율은 1989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
  - 뉴질랜드는 소득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소비세로의 전환은 저축과 경제성장 부양을 위한 것임

라. 가족수당(WFF: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 가족수당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기준금액의 물가연동 방식을 폐지함
  - 현재 가족수당 금액과 소득기준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누적증가율이 5%이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형태이며 가장 최근의 조정은 2008년 10월에 있었음
  - 개정세법에서는 가족수당 금액은 현재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을 하되 수당금액이 경감되는 소득기준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였음



## 2. 대만

- 대만 입법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산업혁신촉진법(SPII: Statute for Promoting Industrial Innovation)을 승인하였음
  - 산업혁신촉진법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고용보조금(Employment Subsidy),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최초 35%의 투자세액공제가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5%를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총 납부할 법인세액의 30%를 한도로 함
  - 중소기업(SMEs)에 종업원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원(Executive Yuan)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부는 새로운 종업원 고용 1인에 대해 1년간 월 CNY10,000(약 \$1,460)의 보조금 지급을 논의한 바 있음
    - 보조금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실업률 하락을 기대하고 있음
  - 산업혁신촉진법 승인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법인세율은 최종적으로 현행 20%에서 17%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3. OECD의 Taxing Wages: 2009년 근로소득세 감소 동향

- OECD의 연차간행물 “Taxing Wages”에 의하면,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OECD 30개국 중 24개 국가

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가.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 통계

- OECD 국가에서 인건비(labor costs) 중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대비 2009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합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뉴질랜드, 터키, 스웨덴으로 2008년 대비 2009년에 각각 2.66%p, 2.29%p, 1.65%p만큼 감소하였음

〈표 3〉 OECD 국가의 근로소득 관련 조세<sup>1)</sup>

국가	2009년 인건비 대비 근로소득 관련 조세 (%) <sup>2)</sup>	2008년 대비 변화율(%p)			
		총변화율 ((1)+(2)+(3))	소득세(1)	근로자부담 사회보장 기여금(2)	사용자부담 사회보장 기여금(3)
벨기에	55.2	-0.54	-0.50	0.00	-0.04
헝가리	53.4	-0.72	0.11	0.17	-1.00
독일	50.9	-0.57	-0.52	-0.03	-0.03
프랑스	49.2	-0.05	-0.05	0.00	0.00
오스트리아	47.9	-0.91	-1.05	-0.02	0.10
이탈리아	46.5	-0.03	-0.03	0.00	0.00
스웨덴	43.2	-1.65	-1.11	0.04	-0.57
핀란드	42.4	-1.39	-0.88	0.14	-0.66
체코공화국	41.9	-1.55	0.05	-1.05	-0.55
그리스	41.5	-0.06	-0.06	0.00	0.00
덴마크	39.4	-1.28	-1.25	-0.03	0.00
스페인	38.2	0.19	0.33	0.01	-0.15
네덜란드	38.0	-0.96	1.18	-1.86	-0.29
슬로바키아	37.6	-1.17	-1.17	0.00	0.00
터키	37.5	-2.29	-0.01	0.40	-2.68
노르웨이	37.4	-0.12	-0.12	0.00	0.00

〈표 3〉의 계속

국가	2009년 인건비 대비 근로소득 관련 조세 (%) <sup>2)</sup>	2008년 대비 변화율(%p)			
		총변화율 ((1)+(2)+(3))	소득세(1)	근로자부담 사회보장 기여금(2)	사용자부담 사회보장 기여금(3)
포르투갈	37.2	-0.07	-0.07	0.00	0.00
폴란드	34.0	-0.52	-0.52	0.00	0.00
룩셈부르크	34.0	-1.16	-1.59	0.08	0.35
영국	32.5	-0.34	-0.21	-0.06	-0.07
캐나다	30.8	-0.50	-0.55	0.01	0.04
미국	29.4	0.22	-1.15	0.00	0.02
스위스	29.3	0.09	0.09	0.00	0.00
일본	29.2	-0.26	-0.12	0.00	-0.14
아일랜드	28.6	1.54	0.35	1.18	0.00
아이슬란드	28.3	0.03	-0.72	0.00	0.74
호주	26.7	-0.21	-0.57	0.00	0.36
한국	19.7	-0.27	-0.30	0.02	0.01
뉴질랜드	18.4	-2.66	-2.66	0.00	0.00
멕시코	15.3	0.21	0.17	0.00	0.04

주 1) 근로소득 관련 조세(Tax Wedge)에는 소득세(income tax) 및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이 포함됨  
 2) 평균임금(average wage)을 획득한 독신자인 개인(single individual)을 기준으로 함. 이 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 근로자(average worker)의 연간 총 근로소득을 의미함.

나. 감소요인

- 2009년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감소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정책 및 고용촉진정책으로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세율을 인하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음
-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특히 저소득 계층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음

• 또한 핀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등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 중 고용주 부담분을 인하여 회사가 고용을 유지 및 확대하도록 하였음

- 이 외에도 경제위기에 따라 평균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음
- 독일, 일본,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금융 및 경제 위기 결과 평균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소득세가 누진과세체제이기 때문에 소득세 징수액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 스웨덴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 의회는 2010년 5월 20일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인하하는 법안에 승인함
- 동 법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후 수취하는 소득부터 적용됨

가.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

-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 및 파트너십의 파트너로서 해당 파트너십 지분에 대해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을 수취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함
- 단, 다음의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6세 이상이고 6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 과세 사업소득은 SEK40,000을 초과해야 함

나. 인하 금액

- 연간 SEK10,000을 한도로 사회보장기여금 총액 중



5%를 인하함

- 사회보장기여금 세율은 2010년 기준 29.71%로, 그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음
- 사회보장기여금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므로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그 구성요소 중 퇴직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SEK 383,25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음

〈표 4〉 스웨덴의 사회보장기여금

구 분		세율(%) <sup>1)</sup>
(1)	퇴직연금보험(sjukförsärvavgift)	10.21
(2)	건강보험(sjukförsärvavgift)	6.78
(3)	실업보험(arbetsmarknadsavgift)	2.11
(4)	생존자 연금보험(efterlevandepensionsavgift)	1.70
(5)	부모보험(föradraförsärvavgift)	2.20
(6)	산재보험(arbetskadeavgift)	0.68
(7)	일반급여보험(allmän löneavgift)	6.03
합 계		29.71

주: 1) 자영업자(self-employed)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

# 정책흐름



- 201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개정안 수정 사항
-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시행
- 공공기관 임원 보수 추이
- '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 기업구조개편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 201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 본 자료는 2010년 6월 9일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에서 발표한 「201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 5월 취업자 수는 '02.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58.6만명)

- 민간부문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증가 규모도 크게 확대(+51.7만명)
-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02. 7월 이후 최대 폭 증가(+67.3만명)

◇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크게 하락

-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 대비 0.7%p 상승, 계절조정 고용률은 4개월 연속 상승('10. 1월 : 58.2% → 5월 : 59.1%)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 대비 0.6%p 하락,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월 대비 0.5%p 하락한 3.2%로 '08년 수준(3.2%)을 회복

### 1. 고용 동향

① **(취업자 증감)** '10. 5월 취업자(2,430.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58.6만명 증가하여 '02.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2) 12.5 → (3) 26.7 → (4) 40.1 → (5) 58.6

- **(민간부문)**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 수가 '02. 7

월 이후 최대 규모인 51.7만명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

\* 민간부문(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제외)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 14.2 → (3) 19.2 → (4) 30.3 → (5) 51.7

- **(산업별)**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비농림어업 취업자가 '02. 7월 이후 최대인 67.3만명 증가

\* 비농림어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 26.8 → (3) 45.5 → (4) 52.9 → (5) 67.3

- 수출 호조에 따른 광공업 생산 증가로 '90년대 초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가 '04. 12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취업자가 '00. 8월(+21.8만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19.0만명)하여 취업자 수 400만명을 회복(403.6만명)

\* 광공업생산 증가율(전년동월비, %) : (10. 2) 18.8 → (3p) 22.1 → (4p) 19.9

\* 제조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 4.5 → (3) 11.0 → (4) 14.5 → (5) 19.0

- 보건·복지(+14.6만명), 사업지원(+6.0만명) 전문과학기술(+5.2만명) 등 유망 업종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 31.0 → (3) 36.2 → (4) 36.7 → (5) 43.8

- 5월 들어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이상

저은 현상이 완화되면서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든 것도 취업자 증가폭 확대에 영향

\* 건설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8.7 → (3) △1.6 → (4)1.9 → (5) 4.6

\*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14.3 → (3)△18.8 → (4)△12.8 → (5)△8.7

• (성별/연령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청년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고용회복세가 취약계층에까지 확산되는 모습

-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청년층의 인구 감소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고용률이 상승하여 고용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여성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 0.9 → (3) 12.3 → (4) 21.3 → (5) 31.8

\* 청년층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1.5 → (3)△3.3 → (4)△7.2 → (5)△1.5

\* 청년고용률 증감(%p, 전년동월비, 원계열) : (10. 2) 0.1 → (3) △0.1 → (4) △0.4 → (5) 0.1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용직이 3개월 연속 75만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크게 상승

\* 상용직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10. 2) 59.3 → (3) 75.2 → (4) 78.4 → (5) 76.3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 (00) 47.9 → (05) 52.1 → (09) 57.1 → (10. 5) 58.4

**②(고용률·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도 크게 개선

•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 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계절조정 고용률은 '10. 1월을 저점으로 4개월 연속 상승

\* 고용률(%, 원계열) : (10. 1) 56.6 → (2) 56.6 → (3) 57.8 → (4) 59.1 → (5) 60.0

\* 고용률(%, 계절조정) : (10. 1) 58.2 → (2) 58.3 → (3) 58.5

→ (4) 58.8 → (5) 59.1

• 실업률도 3.2%로 전년동월 대비 0.6%p 하락, 계절조정 실업률(3.2%)도 전월 대비 0.5%p 하락

- 1월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발생했던 실업지표의 異常 현상이 해소

\* 실업률(%, 원계열) : (10. 1) 5.0 → (2) 4.9 → (3) 4.1 → (4) 3.8 → (5) 3.2

\* 실업률(%, 계절조정) : (10. 1) 4.8 → (2) 4.4 → (3) 3.8 → (4) 3.7 → (5) 3.2

- 청년층 실업률도 6.4%로 전년동월 대비 1.2%p 감소

\* 청년실업률(%, 원계열) : (10. 1) 9.3 → (2) 10.0 → (3) 9.0 → (4) 8.6 → (5)6.4

\* 청년실업률(%, 계절조정) : (10. 1) 8.8 → (2) 9.2 → (3) 8.4 → (4) 8.4 → (5) 6.8

**2. 평가**

**①**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여건도 개선

• 고용률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08년 수준(3.2%)을 회복

•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의 양과 함께 질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고 고용률도 증가

**②** 최근의 고용 회복세는 내수·수출 호조 등 경기 개선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구인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

• 수출 증가로 제조업 가동률이 상승하고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 회복 기반이 강화

\* 수출증가율(%, 전년동월비) : (10. 1) 45.8 → (2) 30.3 → (3) 34.3 → (4) 31.5

\* 제조업 평균가동률(%) : (10. 1) 78.9 → (2) 80.3 → (3p) 82.4 → (4p) 82.2

\* 설비투자 증가율(%, 전년동월비) : (10. 1) 19.1 → (2) 18.5

→ (3p) 34.0 → (4p) 25.7

\* 소매판매 증가율(% , 전년 동월비) : (10. 1) 6.9 → (2) 13.1 → (3p) 9.9 → (4p) 7.1

- 이에 따라 최근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구직 비율이 증가 추세

\* 신규 구인 인원(만명) : (10. 1)13.3 → (2)16.5 → (3)22.0 → (4)18.7 → (5)17.1

\* 구인/구직자 비율(%) : (10. 1)44.7 → (2)71.2 → (3)61.5 → (4)62.2 → (5)69.2

### ③ 각종 정부 일자리 대책의 성과도 고용 회복세 확대에 기여

- 재정 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취약계층 고용 개선에 기여
- 취업장려수당·고용증대세액공제 등 '2010 고용 회복프로젝트'를 통해 근로·구인 유인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

## 3. 향후 전망 및 대응

### ①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

- 다만, 지난해 6월 희망근로 등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기저 효과로 공공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②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어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재정 일자리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효율화 등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개정안 수정 사항

\* 본 자료는 2010년 6월 8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서 발표한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개정안 수정 사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 5. 14(화) 입법예고한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각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에 관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 6. 3(목) 차관회의를 통과하였고, 6. 8(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 15(화)일경 공포되어 7.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주세법 시행령」 개정은 주류의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작년 말 「주세법」 개정('10. 7. 1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부처협의(5. 14~5. 24) 및 입법예고(5. 14~5. 24)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되었음

**수정이유** 종전 용기 또는 상표를 일정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

## 2.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주류에서 살균약주를 제외

개 정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기준</li> <li>• 표시대상 주류 : 탁주, 약주, 맥주에 한함. 단, 살균탁주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대상 주류 : 탁주, 약주, 맥주에 한함. 단,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외</li> </ul>

**수정이유** 살균처리를 하는 경우 살균약주도 살균탁주와 같이 장기 보관이 가능한 점을 감안

###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 1.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용기 또는 상표의 계속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사용하던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li> <li>•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 여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li> </ul>

### 3.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종전 상표의 사용 기한 변경

개정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된 원료가 둘 이상의 원산지에서 생산된 경우(동일원료)의 표시 기준</li> <li>주된 원료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의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li> <li>주된 원료의 동일원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 가능</li> <li>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li> <li>동일 원료 중 변경의 폭이 10%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 또는 용기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등)</li> <li>동일 원료 중 변경의 폭이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 또는 용기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li> </ul>

**수정이유** 혼합비율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 상표 또는 용기를 새로이 제작함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하여 혼합비율 변경의 폭 및 사용기간을 확대

###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의 명칭 및 함량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의 명칭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의 정의: 물과 첨가재료를 제외한 주류 제조에 사용된 재료로, 주정과 원료용 주류도 원료로 봄</li> </ul> </li> <li>원료의 명칭 표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복분자주: 원료-복분자</li> </ul> </li> <li>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임페리얼: 원료-(스카치)위스키원액</li> </ul> </li> <li>위의 두 경우를 포함하여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3가지 이상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막걸리: 쌀, 소맥분, 보리</li> </ul> </li> </ul> </li> <li>원료의 함량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복분자주: 복분자(100%), 복분자(50%)</li> </ul> </li> <li>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임페리얼: 스카치위스키원액(100%), 매취순: 과실주 원액(20%)</li> </ul> </li> </ul> </li> <li>수입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용</li> </ul> </li> </ul>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8월 4일까지는 「주세법 시행령」에 표시기준을 마련·적용하고, 2010년 8월 5일 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li> <li>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에 대하여만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맥주: 보리(미국), 엿기름(국산)</li> </ul> </li> <li>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원료가 가장 높은 배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된 원료와 그 특정원료의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li> <li>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외의 원료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li> <li>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산 원료: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 표시</li> <li>수입 원료: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li> </ul> </li> <li>주된 원료가 둘 이상의 원산지에서 생산된 경우(동일원료)의 표시기준[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된 원료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의 원산지 국가명과 혼합비율을 2개 이상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소주: 주정(국산 52%, 베트남 48%), △△탁주: 밀가루(미국 40%, 중국 30%)</li> </ul> </li> <li>주된 원료의 동일원료가 모두 국내인 경우: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혼합비율은 생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탁주: 쌀(국산), 쌀(여주 60%, 음성 40%), 쌀(여주, 음성)</li> </ul> </li> </ul> </li> </ul> </li> </ul>

현 행	개 정 안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
	<p>예) △△탁주 : 쌀(국산), 쌀(여주 60%, 음성 40%), 쌀(여주, 음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원료 중 변경의 폭이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 또는 용기를 혼합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li> </ul> </li> <li>•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탁주 : 쌀(수입산)</li> </ul> </li> <li>- 원산지가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li> <li>-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li> <li>-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li> <li>• 원료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변경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원산지 국가를 2개 이상 표시[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li> <li>-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상표 또는 용기의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li> </ul> </li> <li>• 수입주류는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li> <li>-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검증 방법 없고, 가공식품 등의 수입물품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중</li> </ul> </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일자 및 면세 여부의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일자의 표시기준 : 연 · 월 · (일) 순서로 표시</li> <li>- 제조번호(lot number) 또는 병입 연 · 월 · 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li> <li>-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자 표시를 제외할 수 있음</li> <li>• 면세 여부의 표시기준 :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에 면세사실을 표시</li> </ul> </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대상 : 탁주(살균 탁 · 약주 제외), 약주, 맥주에 한함</li> <li>-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선택</li> <li>• 표시기준 : “연 · 월 · 일까지” 또는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개월, 년)”로 표시</li> <li>-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의 설정은 「식품위생법」 준용</li> </ul> </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의 표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 제조장 소재지</li> <li>- 예외 : 본사의 소재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청장에게 신고한 제조장기호를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li> <li>- 수입주류는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자명</li> </ul> </li> <li>■ 첨가재료 명칭의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li> <li>예) 아스파탐(합성감미료),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li> </ul> </li> </ul>

#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시행

\* 본 자료는 2010년 6월 7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발표한 「수도권 밖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하위법령 공포·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5. 14(금) 공포·시행됨에 따라
  -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세법시행령\*이 6. 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 8(화)일자로 공포·시행됨
    - \*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아울러, 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미분양주택 확인에 필요한 서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8(화)일자로 공포·시행됨
- 법 공포일(5. 14) 이후 하위법령의 개정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없었던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 6. 8(화)일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미분양주택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 규정

#### 법 개정내용

- ◇ '10. 2. 11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법 공포일('10. 5. 14)부터 '11. 4. 30일까지 최초로 취득(매매계약 체결 기준)하는 경우
  -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세 감면(조특법 §98의5 신설)

분양가 인하 수준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10% 이하	60%
10% 초과~20% 이하	80%
20% 초과	100%

⇒ 미분양주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10. 2. 11일 현재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left[ \text{양도소득금액} \right] \times \frac{(\text{5년 시점의 기준시가} - \text{취득 당시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 당시 기준시가})}$$

-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 「주택법」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 공시한 분양가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과의 차이로 분양가 인하율을 파악

$$\frac{\text{최초 공시한 분양가} - \text{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text{최초 공시한 분양가}} \times 100$$

-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기초단체장(시군구)에 신고
  - 기초단체장(시군구)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하여 날인
  - 기초단체장(시군구)은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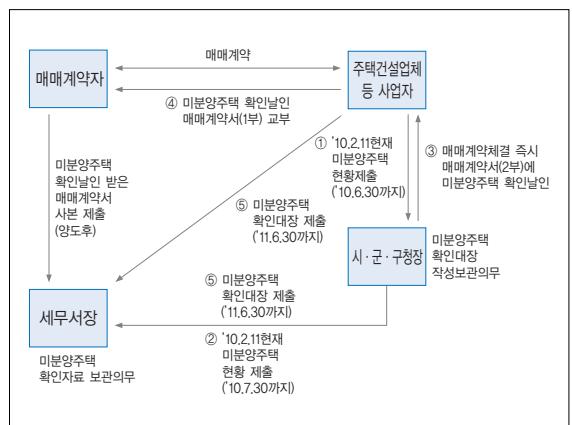
## 3. 법인세법 및 증부세법 시행령

-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보유시 발생하는 증부세 비과세

##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관련서식

-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서식
  - 사업자는 '10. 2. 11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10. 6. 30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분양가격인하율 기재)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매매가격 기재)을 '11.6.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는 양도 후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예정)신고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미분양 주택 현황제출·확인 절차도



## 공공기관 임원 보수 추이

\* 본 자료는 2010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추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년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상근임원(감사, 이사)의 보수는 상임감사의 경우 '08년부터, 상임이사의 경우 '09년부터 감소

- **(상임감사 보수)** 감사의 평균연봉은 '07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08년도부터 감소, '09년도에는 감소폭 증가\*

\* 감사 평균연봉 변동률(% , 전년 대비) : ('07) 2.8%, ('08) △1.2%, ('09) △19.4%

- 이는 '08년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과 '09년 성과급 지급률 감소에 기인

\* 개편된 감사보수체계(감사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설정)는 08. 6월 이후 임명되는 감사부터 적용(08년 6월 이전 임명된 감사는 '09. 1월부터 적용)

- '09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감사 평균연봉은 기타공공기관(1.36억원) > 준정부기관(1.26억원) > 공기업(1.11억원) 순

### 상임감사 평균연봉 수준

(단위: 백만원, %)

	'05	'06	'07	'08 (A)	'09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전체 평균	147	156	160	159	128	△31	△19.4	△3.4
• 공기업	149	160	175	173	111	△62	△35.9	△7.0
• 준정부기관	153	159	165	162	126	△36	△22.0	△4.6
• 기타공공기관	142	152	151	149	136	△13	△9.0	△1.1

\* 평균연봉에는 성과급 포함

\*\* '09년도의 경우 99개 기관이 상임감사 운영

- **(상임이사 보수)**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08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09년도 감소\*

\* 이사 평균연봉 변동률(% , 전년 대비) : ('07) 4.6%, ('08) 2.4%, ('09) △11.4%

- 이와 같이 상임이사 보수가 감소한 것은 '08.6월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 등에 기인

- '09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기타공공기관(1.26억원) > 공기업(1.26억) > 준정부기관(1.20억원) 순

유형별 상임이사 평균연봉 현황

(단위: 백만원, %)

	'05	'06	'07	'08 (A)	'09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전체 평균	122	130	136	139	124	△15	△11.4	0.3
• 공기업	126	136	148	146	126	△20	△14.0	△0.01
• 준정부기관	129	138	143	146	120	△26	△17.9	△1.8
• 기타공공기관	115	123	127	132	126	△6	△4.9	2.1

\* 평균연봉에는 성과급 포함

\*\* '09년도에의 경우 138개 기관이 상임이사 운영

# '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 본 자료는 2010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관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년 IMD 평가에서 정부효율성 부문 중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전년 대비 1단계 상승('09년 14위 → '10년 13위)

\* 세제부문 평가항목 9개 중 3개는 하락, 2개는 전년과 동일, 4개는 상승

\* 종합순위 : 조사대상국가 58개국 중 23위

- '법인세부담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 항목의 향상(5단계 ↑)은 법인세율 인하,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이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 '탈세의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 항목의 비약적인 향상(21단계 ↑)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등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세제부문의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항목		'06	'07	'08	'09	'10 (변화)
세제부문(재정정책)		16	10	18	14	13 (1)
통계	1 GDP 대비 총조세수입	19	15	17	19	24 (Δ5)
	2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14	11	11	12	11 (1)
	3 세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18	17	18	18	21 (Δ3)
	4 소비세율	6	8	8	10	11 (Δ1)
	5 종업원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비율	26	26	25	25	25 (-)
	6 고용주(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비율	16	13	27	28	16 (12)
실면	7 소득세 부담이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지?	45	16	29	30	30 (-)
	8 법인세 부담이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지?	36	27	45	33	28 (5)
	9 탈세가 공공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31	36	46	45	24 (21)

- 특히 법인세부담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33위 → 28위), 탈세의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45위 → 24위)부문이 크게 개선되어 30위권 안으로 진입

# 기업구조개편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 본 자료는 2010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에서 발표한 「기업구조개편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 5. 4(화) 입법예고한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5. 27(목)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동 세법 시행령 개정은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작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 및 조특법 개정('10. 7. 1부터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부처협의(5. 4~5. 13) 및 입법예고(5. 4~5. 24)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 첨부 기업구조개편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 1. 기업구조개편으로 취득한 주식 보유의무 완화

개 정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도 동일</li> </ul> </li> <li>• 원칙 : 피합병법인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합병신주를 3년간 보유해야 함</li> <li>• 예외 : 사망, 파산, 기업구조개편, 회생절차 등에 따른 처분은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범위 내 합병신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li> <li>• 교부받은 주식 중 1/2 미만까지는 처분 허용</li> <li>-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li> </ul>

**개정이유** 대상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합병 등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 및 SPAC 활성화\* 지원

\* SPAC과의 합병은 일반법인간 합병과 달리 그 실질이 '상장을 통한 증자'인 점을 감안

## 2. 주식교부비율 판정시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특례

개 정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도 유사</li> </ul> </li> <li>합병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함</li> <li>-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중 일정 부분*은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병대가에 가산</li> <li>* 피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안 시행 전 취득한 주식에 대한 특례 규정(부칙)</li> <li>- 개정안 시행('10. 7. 1)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주식교부비율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금전 교부액에서 제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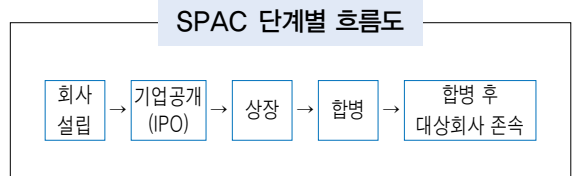
**개정이유** 개정안 시행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

### 참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개요

- 의의 (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 주식회사(Paper Company)
- 법적 근거
  - 작년 말('09. 12. 21)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금융위)
  - SPAC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 \* 금융위 감독규정 및 거래소 상장규정 등도 함께 정비
  - 시행령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SPAC 요건을 규정하고 SPAC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 관련 규제를 배제
    -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 예치 및 예탁자금은 안전 자산에만 운용, IPO 전 합병대상회사 특정 금지, IPO 후 90

일내 상장 및 3년 내 합병 못하면 청산

### ■ 설립·운영



- (1단계) 동 명목상 회사(SPAC)를 공모(IPO)·거래소에 상장하여 M&A 자금을 마련하고
- (2단계) 일정기간\*내 다른 기업(비상장 기업 등)을 M&A하여 해당 기업의 가치증대 이익을 투자 수익으로 향유

\* 투자자금을 예치·신탁한 상태에서 약정 기간내 M&A 실패시 투자자금 반환

##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 본 자료는 2010년 6월 1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운영과에서 발표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6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6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내용(5. 31 지방세법 시행령 공포)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공시지가의 0.07%) 대상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공시지가의 0.2~0.5%)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오르게 된다.
  -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농지·임야)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예를 들면,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농지 2,169㎡를 소유한 K모씨는 지난해 재산세 25

만원에서 올해는 230만원으로 무려 9.2배 급등할 상황이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땅값 상승분 만큼 36만원만 납부하게 되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 : '18년까지 전국 150만호(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

②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헐린 빈 집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려 빈 집터가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도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된다.
- 이 경우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0.2%~0.5%)이 주택(0.1~0.4%)보다 높고, 주택기준에 의한 세부담상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재산세가 일시에 3배 가량 급등하게 된다.

\* (세부담상한제도) 재산세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토지 : 150%, 주택 :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한편, 주택철거시 세부담 증가 우려로 철거를 기피하여 그 결과 재개발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어 '부산 김길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빈 집터는, 철거 후 3년 동안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소폭 인상될 수 있도록

록 개선하였다.

-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 재개발지역 내 주택소유자 H모씨가 지난해 재산세로 5만원을 낸 경우, 집이 헐린 올해는 15만 7천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상황이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기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5만원을 기준으로 2만 5천원만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된다.

③ 건축물 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래 '별도합산' 대상이나, 건축물 가치가 매우 낮아 토지 대비 건물시가표준액의 비율이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고 있다.

\* 과세표준이 1.5억원일때 재산세 세율 : 별도합산 0.2%, 종합합산 0.5%

- 그런데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도시미관지구 등) 등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황은 그대로임에도, 토지 가격 상승으로 기준비율 3%에 미달하게 되어 재산세가 2배 가량 급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 상승률 : 토지 ↑61.3%, 건물 ↑14.5%

-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합산 적용 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건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별도합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예를 들면, 서울 종로의 미관지구 내에 있는 상가 건물(토지 102.5㎡, 건물 56.2㎡)의 경우 기준비율이 3.09%일 때, 재산세 203만원을 냈다면, 기준비율이 2.99%로 낮아지면 재산세가 379만원으로 1.9배 가량 급증할 상황이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225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세부담이 소폭 인상된다.

④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등록세 감면근거 명확

화

- 기존에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배기량이 없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감면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 이에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3.6미터 이하), 너비(1.6미터 이하), 높이(2.0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인 경형자동차로 보도록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7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내용(지방세법 공포안 6. 1 국무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 시행시기 : 시·군통합지역에 대한 주민의 세부담 완화는 7월 1일, 기타 내용은 7월 초(공포 후 30일 경과된 날)

①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면제로 확대

- 현재 다자녀 가구가 '12. 12. 31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던 내용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전액 면제로 하였다.

-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이며

-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 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 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귀향하는 자이며, 감면대상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③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신설
  - 건축사업자가 '12. 12. 31까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시취득할 경우 에너지(CO<sub>2</sub>) 절감률에 따라 취득·등록세 5~15%를 감면한다.
  -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 이상인 주택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 취득·등록세 경감률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 25% 이상 30% 미만, 30% 이상 35% 미만, 35% 이상의 3단계 구간별로 차등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취득·등록세 경감률**

에너지(CO <sub>2</sub> ) 절감률 등	취득·등록세 경감률
25% 이상 ~ 30% 미만	100분의 5
30% 이상 ~ 35% 미만	100분의 10
35% 이상	100분의 15

- 감면은 제1차 보급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 4개 지구(서울 강남, 서초, 고영 원흥, 하남 미사)에 5.5만호('09~'12년) 등 총 150만호 건설계획(~'18년까지)

- ④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 신설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니코틴 용액' 단위의 별도의 세율체계를 마련하였다.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연하며 '09. 10월 현재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인터넷 등으로 판매

- 서울은 니코틴 용액 1ml가 궤련담배 12.5개비에 해당되어 궤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1개비당 32원, 20개비 기준 641원)를 환산하여 1ml당 400원으로 정하였으며, '09년 8월 전자담배 수입규모(24억원)를 기준으로 연 8억 6천만원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시·군의 자율통합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 증가 방지
  - 시·군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하여 시·군 통합 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 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 통합 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이며, 통합 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법인의 등록세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지방세 과세체계**

구분	과세표준	일반시	인구 50만 이상 시
면허세	1종~5종	5,000원~30,000원	12,000원~45,000원
지방교육세	균등할 주민세액	10%	25%
재산세	각 시·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누진적용		
의료법인 등록세	도청 소재지 시 이외의 시·군 소재지 의료법인의 법인 등록세 면제		

- ⑥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주택,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이며
  - '09. 2월 재산세 세율이 인하(△20%~△70%)되었

으나, 재산세와 연동되어 있는 도시계획세와 공동 시설세는 인하되지 않아 이번에 지방재정이 감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0.01%p 인하되었다.

세율 인하 내용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 : 1,000분의 1.5 → 1,000분의 1.4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 1,000분의 0.4
1,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 1,000분의 0.5
2,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 1,000분의 0.6
3,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 1,000분의 0.8
6,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 1,000분의 1.0
6,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 1,000분의 1.2

• 이번에 인화된 세율은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는 차지단체조례로 기 인하(0.01%p) 조치하였다.

⑦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취·등록세 개선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현재는 취·등록세를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1.5%)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0.3%)하게 된다.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이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면적과 위치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구분소유 약정이 없는 일반공유부동산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에는 일반공유부동산에 대한 세율(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일부 제기된 점을 금회에 개선한 것이다.

세율 인하 내용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 지분정리 : 취득세 2%, 등록세 1.5% →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
- ※ 일반공유부동산 지분정리시 세율(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과 동일하게 개선

• 금회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여도 고율의 취·등록세 부담 때문에 지분정리가 되지 못한 부동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역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39. 1월 환지계획자체가 구분소유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1966. 9월 구획정리사업 완료시 국가 외 51인에게 구분소유 공유지로 불하됨
- 지분정리시 비과세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공유자 51인은 종전 지방세법에 의해 높은 지방세(취득세 2%, 등록세 1.5%) 부담으로 지분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0.3%만 납부함으로써 지분 정리가 쉽게 될 수 있음

⑧ 기타 제도개선

- 징수금 우선순위 변경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가 아닌 가산금(통상 본세의 3%)부터 총담합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 발생하여
  -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하여 신속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 징수교부금 지급기준 개선
  -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를 각 시·군·구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보상제도로써 현재는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고 있으나
  - 징수 행정비용은 징수건수별로 발생하므로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개선
  -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과세전 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 행정기관의 면허 부여·취소 사실 등의 과세기관 통보
  -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면허사항 통보, 면허서류의 열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세법에서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 통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이회봉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등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현황

■ 토지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			비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전·답·과수원·목장·임야 공장용지, 공익목적 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업용 토지	나대지 기타 분리과세, 별도합산대 상 아닌 토지	국가, 자치단체 소유재산, 제사·종교·학 술·기예 등 공익 사업목적 부동산 도로·하천·제방 등

- 분리과세 대상토지
  - 국가정책상 특정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울 또는 고

울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토지별로 분리하여 과세 (합산배제, 중부세 없음)

- 대상
  - 0.07% 분리과세 : 농지, 목장, 임야
  - 0.2% 분리과세 : 공장용지, 공익목적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 \* 공익목적 공급용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급용 토지, 발전시설, 송배전시설용 토지, 염전, 간척지, 주택건설용지, 석유비축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 4% 분리과세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과표 및 세율 : 2억원 이하~10억원 초과, 0.2%~0.4%
- 소유자별로 시군구 합산하여 과세하되, 종합합산보다 낮은 세율 적용
- 대상 :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토지\*
  - \* 사업용 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항만법」상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차장' 토지, 「관세법」상 '보세창고용 토지' 등

■ 종합합산 대상토지

- 과표 및 세율 : 5천만원 이하~1억원 초과, 0.2%~0.5%
- 분리과세, 별도합산대상을 제외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별 시군구 합산을 통해 과세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기부확대 위해 美 모델 적극 도입하자”

조세研 · 법제研 · 보건사회研 공동 토론회

부유층의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에 의한 증여, 공익신탁 등 미국식 기부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조세연)의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조세연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부유층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증, 공익신탁, 기부자조연구금 등 다양한 기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민간기부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활용되는 모델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부모델로 변용해 도입하자는 논의다.

손 위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최근 추세와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비영리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 민간의 공익활동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며 ▲유증 ▲공익신탁 ▲기부자조연구금 세 가지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증은 미국에서 기부의 주요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증에 의한 기부 활성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증은 장래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형태로 한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그 규모 등

구체적인 관련 정보는 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손 위원은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유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유인할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잔여기부신탁으로 대표되는 공익신탁도 있다. 공익잔여기부신탁은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하고 나서 신탁에서 나오는 재원을 통해 생활을 유지한 뒤 남은 재산을 기부하는 제도다. 신탁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번복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손 위원은 “공익잔여기부신탁은 우리의 사회환원기부신탁과 유사한 모델이지만, 한국의 사회환원기부신탁은 2008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모델은 기부자조연구금으로, 가족이나 개인이 민간재단을 설립해 운용하기까지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지만 기부자조연구금은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 쉽고 저렴한 방식으로 재단을 설립해 부동산 등 자산 자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손 위원은 “기부자는 각종 비용 절감과 관리의 편리성 및 조세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순태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세경 연구위원이 각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0-06-10일자〉

##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정부, 탄소세 도입 딜레마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세제 개편 과정에 탄소세 도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탄소세는 각종 석유류를 사용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세금으로 가격을 높여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부과 방식은 현행 유류세 과세 체계에 '탄소세'라는 세목을 추가하고 과세대상에 석탄이나 가스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화석연료를 넣는 방법도 있다.

탄소세는 스웨덴이 1991년 처음 도입한 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탄소세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정할 계획이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연구위원은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어 탄소세 도입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만 남았다"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세제를 환경세로 통합하면서 탄소세 범위와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각종 석유류나 공산품 가격에 탄소세가 포함되면 물가가 올라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 지출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최근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 부문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하면 3년 뒤 제조업 생산량은 전망치 대비 2.5% 감소하고 고용은

1.4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집약적인 국내 산업구조에서 무리하게 탄소세를 도입하면 제조업이 후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도 이 같은 이유로 탄소세 도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세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려면 프랑스도 같은 이유로 도입을 철회한 상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서둘러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연구를 거쳐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0-06-07일자)

## “파생상품·외환거래 稅 부과해야”

### 조세연구 “투기적 거래 예방 가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조세제도 개선 논의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위기 재발을 위한 분담금을 금융사들로부터 거두자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가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금융거래세는 증권거래세가 유일하지만 국제 논의를 고려할 때 정책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과세대상은 파생금융상품과 외환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같은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아직 비과세 대상"이라며 "현물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나 실물거래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투기적 성향이 높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 원인을 제공한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부과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환거래의 경우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항상 문제돼 왔지만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직접 자본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환거래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간접 통제에 나설 경우 자금 유출입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연구위원은 "외환거래세 일종인 토빈세의 경우 G20 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토빈세는 그동안 국제 공조라는 명분 때문에 실현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2009년 브라질이 토빈세를 도입해 외환시장 안정에 효과를 보고 있으며 한국도 외환시장 단기 급변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도입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10-05-25일자)

##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9조9천억원”

2000년 이후 증가율 하락추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가 2007년 기준 9조 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감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증가율은 하락추세를 보였다.

25일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연구위원의 '매입세액 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세 감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995년 3조 2천억원, 2000년 6조 2천억원, 2005년 8조 5천억원에 이어 2007년 9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 부가가치세 면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증가할 세입의 규모를 따지는 방식을 이용해 이러한 추산치를 내놨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감면 규모는 2005년과 2007년 모두 주거서비스, 중앙·지방정부, 교육기관, 의료·보건, 생명보험, 도로여객운송 등의 분야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서비스는 주거서비스로 인한 부가가치(자가임대소득) 면세에 따른 감면 규모가 5조 8천억원, 중앙과 지방정부의 감면 규모가 각각 2조 9천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국공립, 비영리 및 산업 등의 교육기관 총감면 규모는 약 6조 원이었고, 의료·보건 분야는 2조 6천억원으로 나타나 정부부문 등 공공성이 큰 교육·보건 분야의 감면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감면 규모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의료·보건분야였다. 1995년 이 분야의 부가가치세 총감면 규모는 5천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2조 6천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의료·보건 '산업' 분야의 감면 규모가 1995년 3천억원에서 2007년 1조 9천억원으로 5.8배 증가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의료·보건 분야의 세부 항목에 대한 과세 논의가 진행중인데 이러한 감면 규모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 교육기관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995년 7천억원에서 2007년 3조 2천억원으로 4.7배 증가해, 같은 기간 국공립교육기관이 약 3배 증가한 것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면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면 규모도 1995년 6천억원에서 2007년 2조 9천억원으로 4.5배 증가해 같은 기간 중앙정부에 대한 감면 규모(1조원에서 2조 9천억원으로 상승)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감면 규모 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면서 정부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 증가율이 2000년 중반부터 누그러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0-05-25일자〉

# 재정포럼

2010년 6월호 통권 제168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6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6호(통권 제16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